

당연한 이치라. 그러나 지금에 오히려 중앙집권을 계도하기 위하여 이를 내각에 직속하게 하여 제반 경제와 제한을 가함은 조선 자체의 권리를 신장하며,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는 점으로도 환영하기 어려우며, 또 병합의 대의에 비추어 역사적 관계로도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 할 바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조선총독의 지위와 권한은 종전과 같이 내각의 지휘간섭에 초연한 천황의 직례기관으로 회복하는 동시에 조선총독은 반드시 국무대신을 겸대케 하여 조선 통치에 대하여는 그 전적 포부, 경륜을 수행하기에 용이하게 하며, 중앙정계에 대하여는 그 연락과 교섭을 밀접원만(密接圓滿)케 함이 실제와 대의에 적합한 최선의 방법일까 하노라.

3. 중추원

중추원이란 명칭은 고려 성종 때 숙위군기(宿衛軍機)를 출납하는 기관에 명명한 바이니, 그 유래는 당(唐)의 내추밀사, 송(宋)의 추밀원의 관제를 모방함이라. 이조 태조 이후 수대간은 계속해서 고려시대 제도를 계승하여 이를 존치하였다가 세조에 이르러 따로 승정원(承政院)을 신설하여 그 직무의 대부분인 왕명출납의 임무를 여기에 이속시키는 동시에 중추부로 정칭(政稱)하여 원임(原任) 대신이하 무임소 문무당상에 대비하는 무장임(無掌任) 기관으로 변하였으며, 한국시대에 이르러 다시 중추원으로 개칭하였으나, 그 질은 계속하여 목수의관(木手議官)과 이장의관(泥匠議官)을 제조하는 기관에 불과하였도다. 일한병합 후 1910년 9월 칙령 제355호에 의하여 이 기관을 거듭 설치하고, 조선총독의 자문에 응하게 함이 즉 현재의 중추원이니, 그간 1919년 8월에 관제의 일부분을 변개하여 금일에는 칙임의장(親任議長), 부의장 각 1인 및 고문 5인과 칙임참의(勅任叅議) 21인, 주임참의(奏任叅議) 44인(그 중 각 지방을 대표한 자 13인) 외에 고등관 1등 서기 관장 이하 서기관, 통역관, 촉탁 등 이원(吏員) 십여 명을 설치하여 총독의 자문에 응하며, 제반 자문사항에 대한 결의권까지 부여하였으나, 그 일련의 인원과 당당한 진용이 가히 조선총독의 최고 자문 기관에 부끄럽지 않으며, 조선 통치의 최고 권형(權衡)⁸⁷⁾에 족할지로다. 그러나 우리의 과문(寡聞)에는 이 기관이 조선 자문에 충실히 응한 바는 다만 만세소요 이후의 인심 완화책으로 공동묘지제의 철폐를 협찬하며, 안녕유지의 최선 방법으로 구호쾌제도의 부활을 건백(建白)한 것 외에는 하등의 기계묘책(奇計妙策)을 제출함이 없다 함은 무슨 연유인가. 천황씨(天皇氏)의 무위이화(無爲以化)를 모범하여 그러함인가, 초장왕(楚莊王)의 불비불명(不飛不鳴)⁸⁸⁾을 자임하여 그러함인가. 천황씨를 모

87) 저울추와 저울대. 사물의 경중을 재는 척도나 기준을 뜻함.

범하며 초장왕을 자임함도 가능하거니와, 요컨대 그대들은 그대들의 양심에 비추어 하등의 결점이 없도록 그 천직을 다하며, 그 사명을 달성하여 국가가 기대하는 특별한 대우에 보답하는 바가 있지 않으면 안 될지니, 공연히 허명을 탐하며, 허위(虛位)에 집착하여 옛날 촌맹(村氓)⁸⁹⁾이 수백 금, 수천 금으로 차합첩지(借銜牒紙)를 매득하여 그 향당(鄉黨)에 금관옥관(金貫玉貫)을 과장하던 바와 동일한 상태를 연출하고자 함은 그대들을 위하여 차석(嗟惜)⁹⁰⁾할 뿐 아니라 조선 전 사회를 위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바로다.

회고컨대 관제개정 전의 중추원은 그 목적이 그 관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설치되기 보다는 오히려 병합으로 인하여 도태된 구한국관리의 상당한 처치방법을 강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바라 칭함이 옳으니, 가령 그 근본 정신이 결코 여기에 있지 아니함이 명료하다 할지라도 이 기관의 설립 후 78년간에 걸쳐 그 임명된 인물과 활용된 사실에 의한 결과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 하리로다. 지금에야 관제개정에 의하여 그 면목이 일신되는 동시에 활용범위와 권한정도가 또 지난날의 중추원이 아니라 그 활동하는 바의 상태와 그 공헌하는 효과가 당연히 팔목할 바가 있어야 하거늘, 여전히 지난날의 오하아몽(吳下阿蒙)⁹¹⁾을 면치 못함은 그간에 어찌 결점과 구회(疚懷)⁹²⁾가 있음에 의한 바가 아닌가. 무릇 어떠한 사업을 막론하고, 그 조직이 얼마나 교묘하며, 그 제도가 얼마나 적절하다 할지라도 그 국(局)을 맡을 자로서 사람을 얻지 못하며, 그 임무를 수행할 자로서 이를 활용치 못하면, 도저히 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나니, 현하 중추원의 역력한 제위(諸位)는 과연 조선총독의 최고자문에 응할 만한 학식과 품격이 있으며, 또 자문사항에 대하여 그 시비, 적부를 명료하게 계진(啓進)하여 그 수행하는 바의 임무를 완전히 하는가. 공안(公眼)이 있고 공론(公論)이 있으니, 어찌 우리의 지껄임에 비하리오. 다만 우리는 학식과 품격이 있는 자는 결코 조선의 고골(枯骨)⁹³⁾을 매식(賣食)하는 특수계급과 잉여가치로 안일을 도모하는 수전계급(守錢階級)⁹⁴⁾에만 있지 아

88) 큰일을 하기 위해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는 말로『여씨춘추(呂氏春秋)』의 「중언편(重言篇)」에 나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거의 3년 동안 주색에 빠져 여념이 없었는데, 충신이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올지도 않은 새가 무슨 새냐고 묻자 그 뜻을 이해하고 정사를 바로잡았다고 한다.

89) 시골 백성을 뜻함.

90) 애달프고 아까움을 뜻함.

91) 학식이 짧거나 세월이 지나도 학문의 진보가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92)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서운하여 슬퍼하는 회포.

93) 죽은 뒤 살이 썩어 없어지고 남은 뼈라는 뜻. 여기서는 '귀족' 신분을 뜻함.

94) 유산계급(有產階級)을 뜻함.

니하며, 삼천리 강토와 2천만 민중의 영고(榮枯)⁹⁵⁾보다는 자기의 위치와 허명을 보존함에만 급급함이 조선 통치상에는 하등의 공헌하는 바가 없음을 단언할 뿐이로다.

일시동인(一視同仁)은 조선 통치의 근본 방침이요, 추성급중(推誠及衆)⁹⁶⁾은 조선 통치의 근본 정신이라. 그 근본 방침은 반드시 일정불변하며, 그 근본 정신은 반드시 보편무애(普遍無碍)라야 하며 의의가 있으며 생명이 있나니, 만약 그간에 일분(一分)의 간극과 일부의 엉성함이 있을 경우에는 조선 통치상에는 수많은 장해가 발생하며, 국가의 전도에 적지 않은 근심거리를 남기게 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명확한 바라. 그러나 조선 통치의 최고자문기관이라 칭하는 중추원에 엄연히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여 의장 1인 이외에 부의장 이하 고문, 참의 70인 중에 대화인(大和人)⁹⁷⁾이 한 사람도 참가하지 않음은 무슨 연유인가. 조선에 살고 있는 35만의 대화인 중에 한 사람도 중추원 참의가 될 자격자가 없다 함은 결코 용인하기 어려운 바니, 그런즉 그 원인이 조선인에게 특별 은전(恩典)을 주고자 함에 있음인가. 또는 근절하기 어려운 특수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인가. 만약 그 원인이 조선인에게 특별 은전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면, 이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근본 방침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결코 조선인을 사랑하며, 생각하는 조치라고도 말하기 어렵다 하리로다. 대저 인류 된 자는 이 사회에 있어 자기의 능력에 맞는 지위를 점하며, 자기의 경우에 맞는 대우를 받아 일반과 동일한 진로에 대립, 병진함에 처음으로 의의가 있으며, 쾌락이 있으며, 진보가 있다 할지라. 다만 타인의 자비로 그 지위를 얻어, 타인의 동정으로 그 대우를 받아 그 생활 전부가 ‘핸디캡’을 받음에 따라 유지되는 것은 결코 그 생활에 광휘가 있으며 쾌락이 있기 어렵다 할지니, 지금에 중추원 고문, 참의의 임용범위를 일부에 국한함은 즉 일부에 대하여 핸디캡을 부여한 바니, 핸디캡을 받음에 의하여 그 지위를 획득한 하등의 의의와 광영이 있지 못함은 당연한 바이오. 설혹 고문과 참의 된 자가 이에 만족하며, 이에 따라 기뻐한다 할지라도 조선 통치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이 기관의 본래목적은 거의 몰각되고, 다만 일개의 양로원이나 제생원이 됨에 불과하리로다. 그뿐 아니라 조선인에 대하여 특수한 대우를 부여함은 즉 대화인에 대하여도 특수한 대우를 주지 않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르니 이는 결코 조선 통치의 근본 방침에 호영향을 미치기 불가능할 것이오. 반대로 조선인의 진취기상과 신뢰관념을 저해하는 악결과를 초래할 뿐일 터이로다.

만약 그 임용범위에 일정한 국한을 두는 것을 근절하기 어려운 특수한 정실(情實)이

95) 번영과 쇠망을 뜻함.

96) 민중(民衆)들에게 통치의 참뜻을 전하여 믿도록 함을 뜻함.

97) 일본인을 뜻함.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면, 추성급증(推誠及衆)하는 조선 통치의 근본 정신에는 일대 먹구름이 생기리로다. 무릇 정성이 있는 곳에는 허(虛)가 없으며, 신뢰가 있는 곳에는 거짓이 없으니, 정실과 인연에 의하여 무용(無用)의 제도를 설립하며, 일부의 만족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식적 방편을 취함은 도저히 허용치 못할 바이라. 조선위정당국자, 진실로 조선의 현재를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필요한 바를 취하며, 무용한 바를 없애고자 노력하는 그 정성과 신뢰가 철저한 이상에는 일반 민중은 홍하(洪河)가 흐르듯이 먼저 다투어 귀의하며 신뢰할지니, 어찌 인연과 정실을 절단키 어렵다 하여 국가의 공기(公器)로 하여금 그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 효과를 수확함에 저어(齟齬)⁹⁸⁾와 장애가 발생하게까지 하여 일부의 심리에 영합하는 고식(姑息)⁹⁹⁾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리오. 조선총독의 최고자문기관인 중추원으로 그 본래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조선 통치에 상당한 이익을 공헌케 하려면, 허심탄회하게 가장 공정한 견지와 성실한 태도 하에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지 않으며, 문벌의 차이를 막론하고, 만천하의 내선 동포 중에서 그 적합한 인재를 널리 구하여 이에 충족할지어다. 오히려 인연정실에 얹매여, 다만 비원(備員)¹⁰⁰⁾으로 능사를 만드는 현하의 중추원 상태로는 이를 설치한 본래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조선 통치상에 반대로 장애가 될지로다. (계속)

〈이상 (3)〉

〈출전 : 金尙會, 朝鮮統治에 關한 私見(1~3), 『時事評論』 장간호 · 2호 · 3호,
1922년 4월 15일, 5월 15일, 7월 15일〉

98) 틀어져서 어긋남을 뜻함.

99) 당장에 탈이 없는 일시적인 안정을 취함을 뜻함.

100) 일정한 인원을 다 갖춤.

5) 김상회, 문화정치의 근본정신 - 그것이 실제화될 기조는 무엇?

1.

‘문화정치(文化政治)’라 함은 아직 자전(字典) 중에 발견되지 아니한 명사라. 보통 ‘무단통치(武斷統治)’가 아닌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듯하나, 이것으로만은 그 자의해석으로도 충분치 못할지니, 그것은 반드시 ‘가장 진보한 양식으로써 자각한 민중에 임하는 정치’가 아니면 불가할 터이라. 고로 이를 실행함에 있어 결코 다만 ‘비무단정치(非武斷政治)’라는 간단한 방식을 취할 바가 아니요, 반드시 가장 진보한 양식을 구비한 이상(以上)에 문명을 호흡하고 문화를 체험한 자각한 민중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야 할 것이므로, 그것이 과연 문화정치라 칭할 가치의 유무 여부에 관하여는 민중의 비판에 위임할 밖에는 도리가 없을 터이로다. 그러나 민중의 비판은 적다 하여도 이론에 입각하여 이를 아래에 두지 아니치 못할 것이요, 또 한편으로 위정가도 ‘민중은 이와 같이 요구하고 이와 같이 희망함’으로 인정함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더하여 이루지 아니치 못하겠으므로, 결핏하면 실행자나 비판자가 이론에 얹매이는 경향이 있으니, 여기에 있어서 구식정치가는 “오히려 언론에 민첩하고 실행에 어두운 정치라”는 망평을 하게 이르렀도다. 그러나 이는 실로 우려할 만한 착오요, 두려울 만한 오해이니, 대저 문화정치는 교육이 있고, 훈련이 된 민중의 자각에 부합하는 정치이므로, 그것이 이론적으로 승인되는 동시에 실제적 시행에 편리할 것은 물론일 터이라. 만약 이론상으로 정당하고 실시에 불편하거나, 또는 문화주의의 신봉자가 소문에 민첩하고 실행에 어두운 것과 같이 보이는 바 있다 하면, 그는 문화정치 자체의 결점이 아니요, 그 운용상의 결점인 동시에,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불민함에 말미암은 바라 할지로다. 우리의 소견에 의하건대 현 중앙정부는 확실히 문화정치를 행함에 노심초사 중인 듯하나, 그 운용상에는 수긍키 어려운 점이 많으며, 따라서 문화주의를 가장 충실히 실현하고자 하는 조선총독정치도 혹은 이를 위하여 관계되는바, 선소(尠少)¹⁰¹⁾치 아니할까 사료케 하는도다. 우리는 이에 관한 검토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문화정치의 근본정신을 논구(論究)하며, 더불어 그것이 실제화 될 기조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하노라.

101) 몹시 적다는 뜻.

2.

전단에 서술함과 같이 문화정치는 이론에 얹매이기 쉬운 만큼 이론적이나니, 고로 가령 이를 이론정치라 칭한다면 전제정치(專制政治), 또는 무단정치(武斷政治) 등 구식정치는 고찰정치(考察政治)라 불릴 만하리로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고찰로써 정치의 요체를 위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전제정치가나 무단정치가가 모두 민중을 열복(悅服)¹⁰²⁾케 하고자 노력치 아니한 자는 없었으나, 다만 그들은 민중의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살피며, 그 실제에 눈을 가리고 그 편의의 방도만 고려하였나니, 그들의 전 세력은 실로 이 고찰에만 소비하였도다. 고로 혹 위대한 인물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에는 금일의 안목으로도 가히 효칙(效則)¹⁰³⁾함에 족한 선정이 시행되었으며, 또 단순히 청렴한 인사가 정국에 있어도 오히려 현대인을 굴복케 할 만한 시정의 사적(事蹟)을 전하는 바도 있으나, 요컨대 이는 정치사 중의 예외적 사적이요, 일반으로는 고찰정치(考察政治)의 폐해가 역사의 어떠한 대중에도 명기되었도다. 한 사람의 마음으로써 천만인의 마음을 살피며, 한 사람의 지혜로써 천만의 사물을 생각하여 정곡을 얻고자 함은 실로 어려운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일 터이니, 이는 오로지 당연한 귀결일 터이로다. 상대(上代) 세계 각 국민에게 아직 정치적 각성이 없었던 시대에는 전기(前記)와 같이 한 세대 한두 사람의 대인물이 출현하여 선정을 시행하고 기강을 신장하면 극히 국가를 보장하고 사회를 유지하였으므로, 고찰정치도 시대에 상응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부인치 못하는 바라. 그러나 민지(民智)가 열리고 민도(民度)가 발전함을 촉구하여 민중의 생활상 욕구가 증진되는 동시에 민중생활의 대강을 파악하는 정치에 대한 요구도 또한 범위를 확대하기에 이르러, 그 요구의 근거를 이론에서 구하고자 함에 이르러서는 고찰적 정치의 단점과 결점이 특히 현저해졌도다. 문명사를 해석하는 자는 프랑스혁명을 하나의 전기로 세계의 정치사상 내지 사회사상에 일대 변혁을 구획한다고 말하니, 이후에 출현한 결과로 볼 때 이는 물론 사실이요, 또 ‘루소’가 논한 바에 다소의 하자는 있으나, 고찰정치로서 이론정치에 진전하는 새벽종을 친 자는 프랑스인이니, 그는 프랑스 민족에 대해서는 새벽종을 울렸다는 명예 이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득한 행복의 정도는 미루어 생각할 바 없으나, 적어도 그들은 시대적 경이를 연출하였으며, 또 사린(四隣)도 이에 감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론정치에 걸어 들어갔도다. 그러나 순연(純然)한 이론정치는 도저히 인간계에서 실행치 못할 바이니, 위정자가 신이요,

102) 기쁜 마음으로 복종함을 뜻함.

103) 본받아 법으로 삼음.

민중이 그 사도(使徒)라면 몰라도, 인간 그것으로 하여금 심리적이나 생리적으로 그 생활과 이론을 일관되게 조물주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생각되니, 만약 순연한 이론정치를 펼치면 아마도 그곳에서 인간은 살지 못하리로다. 고로 이론정치라 할지라도 고찰을 가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또 예로부터 고찰정치도 완전히 이론을 몰각한 바는 아니었나니, 요컨대 이론을 주(主)로 하고 고찰을 종(從)으로 함과 고찰을 주로 하고 이론을 종으로 함에 의하여 양자는 구별되는 것이로다. 프랑스혁명은 세계로 하여금 이론을 주로 하고 고찰을 종으로 하는 정치, 즉 우리가 말하는 바의 이론정치에 향하게 하는 동기를 세우게 하여 구미 각국은 대개, 혹은 모두, 혹은 조금히, 혹은 자발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각 그 방향에 이전하였으되, 우리 극동 제국은 프랑스인이 새벽종을 울린 아래 근 3세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고찰정치에 기꺼이 머물고 있다. 이는 유학이라는 정치철학이 있고 치자와 피치자가 모두 이에 충분한 훈련을 거친 결과, 그다지 이론정치를 채용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함에 연유한 까닭일까 하노라. 물론 동양 정치철학은 그 이론의 천명(闡明)이 비밀스럽고 심오하고, 또 이 실제적 소화도 양호하였으므로, 이를 학습한 치자와 이에 훈련된 피치자는 특히 이론을 탐구함이 없이 고찰정치가 지극히 이론에 부합하므로 상호가 이해하는 점도 있거니와, 시대의 추이에 반하여 생활의 욕구가 증진되며, 그 양식이 복잡다단한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조선이 정치철학을 시대에 응하여 조술(祖述)¹⁰⁴⁾하는 친절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다시 유학이라는 정치철학을 분석하여 그 조성분자인 이론과 고찰의 분량을 명백히 하여 그 부족한 바를 보완하며, 그 나머지를 제거하여 이론정치로 고쳐서 시대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하게 되었도다.

3.

전제정치, 과두정치 등 범 구시대정치가 소수 위정자의 고찰에 기반하여 행해졌음에 비하여 현대정치는 소위 여론을 듣고 행하는 바니, 여론은 인민의 각개 각양의 주장, 요구가 이론으로써 점철되며, 안배되며, 통일된 것이라. 고로 여론정치는 그 실질이 이론정치의 범주에 속하는 바요, 문화정치 또한 이론정치의 일종이나, 그것은 반드시 여론정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조선에 대하여 이를 보건대, 하나는 무단정치에 대립한 칭호요, 둘은 정치조직에서 여론을 정치상에 실현하는 기관은 아직 정비치 못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의에 바탕하여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이론이 승인하는 바를 따라 정

104) 선인의 도를 본받아서 서술하여 밝힘.

치를 행함으로 실제상 견지(見地)로는 여론정치와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이를 이면(裏面)으로 볼진대 신시대의 교육을 받고 자립 자각함은 물론, 구시대의 장단점을 분별하고 신시대의 시비를 통찰하여 사회의 중견으로, 공정온건한 여론의 지도자로 사회의 의탁을 견디는 자가 희소한 현하에 가령 여론정치를 행한다 할지라도, 과연 진정한 여론을 듣고 얻으리라 함은 몹시 의문이로다. 만일 음모나 선동가로부터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은 주장, 요구로 여론을 오인한다면, 이는 결단코 민생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하여 여론정치의 이름을 피하고 직접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견해로 공정한 판단을 가하여서 정치를 실시함은 그것이 과정정치적 조직하에 시행되는 바이나 틀림없는 이론정치인 동시에, 그 시정방침으로 볼 때 민중의 행복을 생각하고, 민중의 문화를 증진함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정치라 할 것이다. 즉 국가란 추상명사에 대한 일종의 신비적 사실인 ‘민중의 애착심’을 악용하여,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민중에게 필요 이상의 강요, 즉 합리적이지 않은 의무를 부담케 하며 보상 없는 희생을 지불케 하는 구투(舊套)¹⁰⁵⁾를 부정하는 것이로다. 고찰정치에는 위정자의 전단(專斷)에서 나온 불합리한 의무와 무보상인 희생까지도 국가의 이름으로 이를 민중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위정자가 다소 도덕적 책임을 느끼는 바 있으나, 법률상 책임은 항상 유야무야한 상태였다. 그러나 문화정치는 위정당국자가 당면의 시위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질 뿐 아니라, 그 시위한 결과에 대하여도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되나니, 예컨대 정부가 하나의 일을 행하고자 할 시에는 먼저 그것을 이론에 기반하며, 법률에 비추어 합리와 적법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에는 물론 민정에의 적당 여부와 민중의 희망 여부를 고찰해야 하나, 그 고찰은 종이 되고 이 이법은 주가 되어 그 결행 여부가 단정되며, 또 위정당국자는 이 고찰에 대하여는 도덕상 책임을, 이 이법에 대하여는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하는 바로다. 지금까지 이론정치의 실질과 이론정치에 속하는 문화정치의 실질을 서술하였으나, 이하로는 문화정치의 근본정신을 천명코자 하노라.

4.

문화정치의 근본정신은 가장 최근의 정치사상이니, 이를 정치사상이라 칭함보다는 ‘정치에 대한 이해’라 말할지도다. 전제정치의 조악한 바는 지금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는 바니, 이에 대한 것이 의원정치라. 이 의원정치는 종래 이론정치의 최고로 믿는 바이나, 이에도 수많은 결함과 폐해가 있도다. 우리는 본문 제1항 말단에 중앙정부가 문화정

105) 예전의 낡은 양식, 방식을 뜻함.

치를 행하고자 노심초사 중인 듯하나 이 운용상에 수긍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하였나니, 이것은 의원정치의 결함 혹은 그 폐해에서 유래한 것이라. 그 결함과 폐해가 있음을 지각한 세상 사람은 다시 일층 완전한 정치를 요구하여 그 결함을 보충하고 폐해를 바로잡고자 백방 수단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나, 아직 그 어느 나라든 치하의 민중을 만족케 함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니, 그 최대한 결함과 폐해는 특히 민중의 경제생활에 관계된 것에서 가장 심하다 말할지로다. 전제치하에서 관권에 절대 위력이 있음과 동시에 동양에서는 의원정치하에 금권이 거의 절대 위력을 가지나니, 거기에는 관권의 압제와 금권의 횡포가 있도다. 각종 사회주의는 실로 이 양 권력의 압제와 횡포에 대한 반항이 그 주요 목적이라 말하여도 가할지니,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탐구에 이르러서는 본편의 사명이 아니므로, 이를 생략하고 다만 사회주의를 정치적 주장으로 하등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언으로 끝내고자 하나, 의원정치하의 가장 폐해인 금권의 횡포가 민중 가운데 이와 같은 반항적 분자를 육성케 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그 사회생활의 장래에 일종 불안을 품게 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야 세계 각국의 민중은 모두 완전한 정치를 요구하나니, 그 요구의 함성을 검토하면 이론이 간명하고 고찰(考察)도 친절(親切)하여, 치자와 피치자 간의, 정부와 인민 간의 정의(情意)의 소통, 교감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간기관의 개재를 염기(厭忌)하는 바라. 의원은 양자의 중간에 위치를 점한 기관이요, 또 그 폐해와 결함도 인정하는 바이며 양자의 의사를 소통하는 편의가 있으므로 아직 이를 철폐하자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뿐이라. 즉 그 폐해와 결함은 인정하는 바나, 다만 이에 대한 방법을 발견치 못함으로 현금 이를 용인함에 불과한 바라 단언하여도 무방하다 말할지로다. 우리 동지(同志)가 참정권을 요구함도 현 제도하에서 우리 동포의 정의 신창의 기회를 획득을 꾀하고자 그러함에 불과함은 물론이니, 만약 민중이 대표자를 선거하여 정치에 참여케 할 필요가 없고 정부와 민중이 직접 교섭하여 하등의 고장이 없게 상호의 충분한 양해하에 정치가 행하게 된다 하면, 즉 환언하면 민중 각원이 각 정치에 참여하는 상태에 있을진대 의원은 필요가 없을 것이요, 따라서 참정권 요구는 누구의 의의(意識)에도 생길 도리가 없을 터이로다. 그러나 이미 의원을 용인해야만 하는 현하 상태로 의원이 있는 이상, 조선 재주자에 한하여 기(既) 의원에 대표자를 보내지 못함은 조선동포의 권리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막대한 손실인 바라. 뒤집어 생각건대 문화정치의 이상향은 이론정치의 극치를 의미함이니, 그에 정체의 여하와 의원의 유무와 같음은 물을 바 아니라. 정부와 민중은 총유 의미에 직접 관계하여 정기(政機)의 움직이는 바는 항상 민심의 향하는 바가 되며, 민중의 합리적 생활은 상시 위정자의 합리적 행정에 의하여 보장되고, 위정자의 정조(情操)와

민중의 정조가 혼연 융합하여 정치는 민중 생활의 반영이요, 민중 생활은 정치의 생명임을 명확히 나타나는 정치, 그것일까 하노라.

5.

문화정치의 근본정신은 대개 상술한 것과 같으리라 믿나니, 현재 동일한 명칭을 쓰는 조선총독정치의 내용을 보건대 이와는 다소 심한 차이가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현재 세계 각국이 대개 문화정치의 정신을 그대로 실현하기 곤란하여, 아직 의원정치로써 최상의 정치조직으로 견주하는 금일에, 아직 문화의 도정에 있는 조선에 이상적 문화정치의 실현을 희망함은 어쩌면 무모한 바인지도 모르겠는 바라. 하여간 사이토 총독은 시정에 문화정치의 근본정신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까지 실현코자 즉위 초에 그 실제적 방침을 민중에게 선포하였나니, 즉 자전 중에 발견치 못한 문화정치란 명사가 주출(做出)¹⁰⁶⁾된 것이다. 환언하면 사이토 총독의 시정방침이 위정 당국자와 민중 간에 하등의 중개기관이 없는 조선의 현재에서 직접 상호의 정의 소통을 성취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문화의 도정에 전진하는 합리적 생활을 영위케 하고자 하는 신념에 있음을 지칭한 바로다. 아래 3년간에 총독은 그 선포한 바에 따라 거의 인사에 다하고 가능한 것을 다한 듯 하나, 그 수학에 있어서는 심히 보잘 것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겠나니, 이는 사이토 총독도 당초부터 예기한 바인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공평한 안목으로 보건대 그 노력에 대하여 얻은 바가 심히 보잘 것 없음은 사실이로다. 우리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탐구하여 하나의 안(案)을 얻었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조선 사회가 거의 항상(恒常)을 상실(喪失)함’에 있음이로다. 만일 이를 의심하는 자가 있거든 시험컨대 하나의 문제를 우리 부로(父老)와 청년에게 질문하여 볼지어다. 양자의 답변은 반드시 우리의 말을 증명하리로다. 이미 항상을 상실한 사회에서 호흡하는 민중에게 그 수학의 완성을 기함은 굉장히 지난(持難)한 사업이 아닐까. 만약 조선 통치를 현 상태로 진행한다면, 문화정치의 근본 정신은 다만 이상(理想)으로 높은 곳에서 표류함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도다. 그런즉 이를 실제화 함에는 문(文)의 항상(恒常)을 부활함이 가장 긴요한 바가 아닐까. 실로 조선의 문화정치의 근본정신을 실제화 할 기조는 바로 여기에 있도다.

우리가 우리 조선 사회가 항상을 상실하였다 함에 대하여 이를 의심하는 자는 동일한 문제를 부로(父老)와 청년에게 질문하면, 그 답변으로서 능히 이를 증명하리라 하였나니, 이에 대하여는 두렵건대 한 사람도 의심을 품을 자 없으리로다. 어제까지 극단적인

106) 없는 사실을 꾸미어 만든다는 뜻.

계급제도에 속박되었던 사회가 갑자기 해방되므로 금일에는 중심도 없고 표준도 없이 암중에 모색을 반복할 뿐 아니라 그 모색하는 바가 누구에게도 의식되지 못하는 상태이니, 이 사회에 항상이 존재할 도리가 어찌 있으리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사회를 들어 암흑, 퇴화에 빠지게 하려 하나니, 문화정치가 어느 정도 민중생활에 적절한 정치라 할지라도 항상을 잃은 이 사회가 어찌 이를 정확히 수용하리오. 다만 외관의 진보를 보임에 그치는 것은 면치 못할 바로다. 정치에는 이상이 없을 수 없으나, 정치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하는 정치가 진정한 정치이니, 총독정치 …… 문화정치가 단순히 조선 통치의 이상으로, 또는 표준으로 그 이름을 가진 것뿐이거니와 만약 아니라고 할진대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합리적 생활을 영위함에 가장 적절한 문화정치의 정신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소회할 가장 중요 조건인 사회의 항상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불가할 것이다. 항상이 없는 사회에는 변별이 없으며, 이해가 없으며, 생활의 기준이 없고 따라서 무엇이 선정이며, 무엇이 정치(政治), 비정(秕政)¹⁰⁷⁾임을 판단하지 못하는 까닭이로다. 우리는 다시 다음 호에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의 항상을 회복하며 긴장하여 문화정치의 근본정신을 실제화 할 사회상태를 출현시킴에 노력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노라.

〈출전 : 金尙會, 文化政治의 根本精神, 『時事評論』 5호, 1922년 9월 15일〉

6) 김상회, 이와 같이 하여 우리 사회를 부활하라

우리는 전 호에 우리 사회의 기강이 이완됨을 지적하고 이에 관하여는 다시 원고를 새로이 하여 상론하겠음을 기약하였으나, 정치, 경제, 사회 기타 각반 사물에 관하여 우리가 논구(論究)해야 할 문제가 다수 있으므로 오히려 전 호 지상(誌上)의 약속은 후일에 이행하고자 하려 하던 바라. 또한 최근 점점 심해지는 사회 상태의 악변과 이웃나라 중국의 남북에 걸쳐 빈발하는 사건이 어떤 인연이 있는 것과 같은 일종 불가사의(不可思議)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동시에, 이 감상을 일각이라도 속히 서술하여 식자의 판단을 바람이 내게 지워진 급무임을 느꼈다. 이에 영능이 말하는 신비적 계시가 있음을

107) 払政 : 쪽정이 정치, 악한 정치.

느끼는 고로 논하고자 하는 다른 일체를 제쳐두고, 먼저 이에 대하여 독필(禿筆)을 하고자 하노라.

우리 사회에 생명이 있는가

사회를 조성하는 인류는 생물이라. 생명이 있음은 누구라도 부정치 못할 바인 동시에 사회의 각 구성원은 그 생물로서 생리적 생명이 있는 것 외에 사회적 생명이란 것이 있다 함에 대하여도 이존(異存)이 없을 터이니, 사회적 생명은 어디에 연유하여 발생하며, 어디에 의하여 부여되는가. 사회적 생명은 그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사회에 연유하여 생기며, 사회에 의하여 이것이 부여되도다. 그러면 사회 자체는 생명이 있는가. 이에는 ‘사회’란 명칭이 원래 독립한 일개의 인격(법률상으로는 사회의사의 부분적 표시에 대하여 각종 명칭 하에 법적인 인격을 인정함에 불과하나, 국가가 법적인 인격을 가짐과 같이 사회도 역시 전체적으로도 법적인 인격을 인정함이 당연)을 상정케 하는 동시에,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로 그 가진 바의 기능은 생명의 표현이 아니면 아니 될 터이라 할지도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단정한 후, 뒤집어 우리 조선 사회를 관찰할 시 심심한 의혹에 피착됨을 면치 못하나니, 바로 “우리 사회에 생명이 있느냐?”하는 것 때문이라. 만약 생명이 있다 하면 무엇으로써 이를 증명할까. 사회 생명의 표현인 사회 기능은 우리 사회에 과연 얼마나 허용된 작용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일찍이 본지(本誌)에 인문이 발달되면 이에 반하여 사회 기능은 그 작용범위를 확대하고, 정치 기능은 그 작용범위를 축소한다 전한 바도 있거니와, 적어도 사회라 칭하려면 거기에는 사회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열 가구의 읍(邑)이라도 그곳에 사회 기능이 있으면 그곳이 즉 사회요, 백만 인구의 대도회라도 그에 사회 기능이 없으면 그는 사회가 아니니, 만약 강력히 이에 명칭을 부여하면 인류의 집합생활장이라 일컬을지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나타난 모양은 예로부터 유례가 없었던 바라. 즉 인류가 집합하여 생활을 영위함에는 그에 반드시 공통한 이해관계의 신념이 기초가 되어 질서가 세워지며 규율이 정돈되는 것이니, 사회 기능이라 함은 즉 이와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 자체의 활력을 말함이라. 그리하여 사회는 그 활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니, 지금 우리 조선 사회에 과연 그 활력이 있으며, 그 생명이 있다 말할 수 있겠는가.

아! 사회의 항상(恒常)은 실망

사회에는 항상이 없으면 불가할지라. 이에 항상이라 함은 사회의 질서, 규율, 절제 등

과 같은, 즉 사회의 강녕(康寧)을 보유하며,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 사회를 조성한 각 원이 실천할 바의 상기상도(常紀常道)¹⁰⁸⁾를 의미함이니, 현재 우리 조선 사회에 과연 이 항상이 있다 하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것이 거의 없다는 탄성을 지어내지 않을 수 없음이 슬프도다. 현재 우리 조선 사회를 관찰컨대

1) 사회 자체가 그 질서를 유지치 못하니 현재 우리 사회를 일면 보건대 일반은 평온 무사하며, 민중은 그 담장 안에 안주하여 각 사람의 권리는 확실히 보호되며, 각 사람의 의무이행관념도 왕성하여, 사회 자체가 엄연히 그 질서를 보유하는 듯하나, 이는 요컨대 피상의 관찰에 불과한 바라. 시험 삼아 가두에 서서 노상을 왕래하는 기천기만의 남녀를 개개로 잡아, “그대는 그대의 부모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라. 반드시 “물론 그러하다” 답할 것이오. 또 “그대는 그대의 자녀를 사랑하느냐?” 물어라. 또한 “물론 그러하다” 답할 것이다. 또 다시 “그대는 그대의 아내를 사모하느냐?, 그대는 그대의 남편을 사모하느냐?, 그대는 그대의 부로(父老)를 존경하느냐?, 그대는 그대의 후진 자제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역시 일일이 “물론 그러하다” 답하리로다. 이는 한결같이 당연한 바니, 이것이 인정의 자연스러운 이치라. 어찌 그 질문에 사소한 염려가 끼어들 바가 있으리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을 다수 일당(一堂)에 집합시킨 후, 위와 동일한 질문을 해보라. 대개는 “부모를 사랑함은 물론이나 그들은 너무 완고하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들은 너무 방종한다. 아내를 사랑하나 그는 우리에게 몰이해한다. 남편을 사랑하는 바나 그는 우리에게 전횡(專橫)한다. 부로(父老)를 공경함이 당연한 바나 그들은 너무 고루완명(固陋頑暝)하다. 후진자제(後進子弟)를 사랑치 아니하는 바 아니나 그들은 너무 경조부박(輕佻浮薄)하다.” 하여 전자에 개인 대 개인의 응답과는 심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지니, 즉 각 사람이 개개로 발로(發露)하는 진정, 천리인도(天理人道)에 가장 적합한 그 진정을 사람들이 다수 모인 집회석상에서는 솔직히 표백치 못함이 현하 조선 사회의 현상이라. 즉 다수 공중 앞에서는 하늘이 내린 좋은 성품에서 용출(湧出)하는 진정을 토로치 못하고 오히려 의심암귀(疑心暗鬼)¹⁰⁹⁾를 발동하여 지동지서(指東指西)¹¹⁰⁾로 그 태도를 결정치 못함이 현하 우리 조선 사회의 상태라. 대저 사회의 질서라 하는 것은 천리인도를 존중하는 인간의 진정이 공통하여 유지되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에 각 사람이 각자의 진정을 공중

108) 항상 지켜야 할 도리, 법을 뜻함.

109) 의심으로 귀신이 생긴다는 뜻으로, 망상에 의한 공포심을 말함.

110) 동쪽을 가리키기도 하고, 서쪽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뜻으로 근본은 제쳐 놓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논함을 이르는 말.

의 앞에서 은폐한다면 그 사회는 과연 사회 자체의 질서가 보지된다 말할 수 있을까.

2) 이미 사회 자체의 질서가 보지(保持)되지 못한다 하면, 거기에 규율과 절제가 있다 고는 상상기도 어려운 바라. 사실 우리 민중은 한국시대에 극단적인 제도하에 광명도 없으며, 희망도 없이 생존을 계속하였으니, 그 오랜 기간 암흑경에서 경과한 대대로 민 중은 생존의 보장을 계급제도에 의지할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으며, 동시에 위정자는 계급제도를 국가 유지의 유일한 방법으로 믿고 간단히 유학의 형식만 베껴 사회 규율을 만들고, 절제의 표준을 정하였나니, 이런 것들은 모두 계급제도를 유지함에 가장 편의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특권계급 혹은 지배계급은 민중에 대하여 규율, 절제의 존중을 강요하며, 민중은 또 생사여탈권을 가진 이 특권계급의 요구를 위배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그 규율 절제는 비록 그 동기로는 현대인의 사상과 긴밀한 바 있었을지라도, 하여간 사회 기능의 존재를 승인할만한 정도에 대체되었던 바라. 그러나 일한병합으로 인하여 계급제도는 돌연히 철폐되었으니 이는 사회 규율, 절제의 지주가 돌연히 좌절된 것 이라. 민중은 과연 무엇에 의하여 그 쪽을 바를 정하리오. 민중은 다만 법률, 규칙에만 의하여 걷고 지시를 따를 뿐이라. 그 자체의 잠재력을 구함이 도리어 무리한 바가 아닐까.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사회 자체로의 규율, 절제를 보지(保持)치 못하며, 따라서 사회 자체로의 질서를 유지치 못한다면 그 민중이 실천할 항상은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아! 사회적 항상(恒常)을 잃어버렸도다.

가공할 시대적 미신의 횡류

사회적 항상(恒常)은 실망스러우며 사회 기능은 정지되어 우리 사회에 과연 생명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케 되는 상태이나, 하여간 우리 사회가 종래의 습관과 타성(惰性)의 내재적 지지와 현재의 법률, 규칙의 외부적 굴레와 속박에 의하여 근근이 그 형체를 유지함은 사실이니, 이때에 우리는 크게 분기하여 우리 사회의 소생을 계도치 아니치 못할지로다. 우리 사회로 하여금 그 생명의 유무를 의심케 함은 어찌 우리의 치욕이 아니며, 우리의 죄과가 아니리오. 선각한 선비는 반드시 이에 반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믿는 바이나, 우리의 가장 우려하는 바는 요새 발작된 시대적 미신의 횡류(橫流)라 하노라. 세상 사람은 이를 신사조라 부르니, 혹은 사상의 신류라는 의미로 하면 신사조라 말하지 못할 바도 아니나, 소위 신사조라 하는 것은 사상으로 하등 정확한 기원을 관찰할 바탕이 없는, 다만 신기하고 기괴할 뿐인 사상의 흐름에 불과하다 할지니, 우리는

이를 가급적 호의로써 대할지라도, ‘시대적 미신’이라 부를 밖에는 흡당한 명칭을 붙이기 어려운 사상이라 하노라. 단 미신이라 하면 종교심의 미몽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말함이니, 이에 우리가 소위 신사상이라 하는 것을 모방하고자 하는 시대적 미신은 물론, 종교심의 소산은 아니므로 미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타당치 못할 듯하나, 원래 우리 조선 사회의 소위 신사조라 하는 것은 세계적 시대정신에 대한 오해가 심한 것으로부터 생긴 것인바, 세계적 시대정신에는 반드시 종교적 신앙의 섬광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오해로서 발생한 착각성 사상인 이상 이를 미신이라 칭치 못할 이유도 없으리로다. 하여간 조선의 소위 신사조라 하는 것이 시대적 미신이라 부름에 상당히 신기 괴이한 것임은 사실이라.

소위 신사조에서는 구사물이라 하면 그것이 참(正)이며, 직(直)이며, 선(善)이며, 미(美)라 할지라도 이를 모두 배제하는 동시에 신사물이라 하면, 그것이 거짓(邪)이며, 곡(曲)이며, 악(惡)이며, 추(醜)라 할지라도 모두 이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그 결과 마침내 우리 사회로 하여금 전 장(前章)에 우리 사회가 사회 자체의 질서를 보유치 못하는 예증으로 열거한 바와 같이, 각 사람이 그 인간 자연의 진정—종고영원(終古永遠)에 걸쳐 불투(不渝)¹¹¹⁾할 그 진정—의 발로까지 옹색하지 않을 수 없는 기괴 지극한 상태에 빠지게 하였나니, 그는 다만 그것이 ‘구래(舊來)’의 인정(仁情)이란 이유로 소위 신인(新人), 즉 시대적 미신자류는 감히 자기를 속여서라도 이에 영합하는 동시에 구인(舊人)은 이에 대하여 비록 흥중에 만곡(萬斛)¹¹²⁾의 불평을 품는 바나, 그 시대적 미신의 횡류(橫流)에 능히 항거치 못하므로, 도리어 매우 황급하여 이에 추수(追隨)하는 소이라. 어찌 개탄할 현상이 아니며, 가공할 풍조가 아니리오. 대저 세계 일반이 승인하는 시대 정신은 ‘인류의 생활 개선’을 이유로 하며 목표로 하는 것인데, 자유평등의 요구나 세계 평화의 동경이 모두 이를 위함에 불과한 바라. 그러나 자유평등의 사상이 일단 조선에 들어와서는 그 원래의 면목과 성질은 잊고 다만 무절제, 부조리한 자유방랑으로 변하여 그 결과 주위에 심대한 곤혹을 끼치게 함은 물론, 마침내 자기까지 진퇴유곡의 지진두(地盡頭)¹¹³⁾에 빠지게 하는 기괴상태를 노정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 자유란 의미를 오해한 때문이로다. 비유컨대 현재 두 사람이 강둑 한편에서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하자. 이를 건너는 것은 물론 각 사람의 자유라 할지나, 선후를 다투어 서로 내리지 않을 시에는 과연 어떠할까. 두 사람은 상호의 방해로 결국 다리를 자유롭게 건너지 못하는 결과

111) 바뀌거나 변하지 않게 함을 뜻함.

112) 곡(斛)은 열 말의 양을 일컫는 말로, 만곡(萬斛)은 매우 많은 분량을 뜻함.

113) 어찌할 바 없이 된 판국, 시기가 절박하게 된 상태를 뜻함.

에 빠질 것이요, 또 만일 두 사람이 강둑의 양측에서 이를 건너려 할 때에 두 사람이 선두를 다투어 건널 시에는 오히려 그 다리의 중앙에서 충돌하여 역시 두 사람이 모두 이를 건너지 못하는 결과에 빠짐을 면치 못할 것이 아닐까. 또 이를 기회 평등의 필요성에 비유해 보자. 다수자가 외나무다리를 통과하고자 일시에 둑 위에 집합할 때에 각 사람이 자제, 상호 양보를 하지 않으면 다리 건너기는 불가할지니, 각 사람은 반드시 건너는 전후를 서로 양보하는 미덕에 맡기고 다만 다리를 건너고자 하는 의사를 충족하는 자유와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기회 평등에 만족하지 않으면, 도리어 분란을 일으키게 되며, 격투를 연출하여 결국은 한 사람도 이를 건너지 못하고, 구하고자 하는 자유와 평등은 도리어 부자유와 불평등의 결과에 빠질 것이로다.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재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연출되는 사실이니, 어찌 기괴한 현상이라 말하지 아니하리오. 이뿐 아니라 현 우리 사회에는 또 다른 기괴한 현상이 있으니, 그것은 생활의식에 대한 착각이라. 현대세계가 요구하는 바라는 생활개선이 그것이니, 지금 우리 조선의 소위 세계 사조를 이해한다고 자신하는 일부자의 행동은 과연 어떠한가. 그들은 실로 생활개선의 명분 아래 생활 파괴를 감행하는도다. 물론 그것이 개조하기 위함이며, 건설하기 위한 파괴라 하면, 혹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할지나, 그들은 개조의 재료를 파기하며, 건설의 토대를 파멸하고자 하니, 시험 삼아 그 한두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 그들이 유학을 배척하고 동양도덕을 부정코자 하는 것이로다. 사실상 유학이 성행할 시에 세인들은 이에 너무 심취한 결과, 소위 유폐(儒幣)라 하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이것이 결코 유학 자체의 죄는 아니니, 원래 유학은 정치철학이라. 인지(人智)가 발달치 못한 상대(上代)에는 정치가 인사(人事) 일체를 지배하였으므로 인륜 도덕의 표준을 유학에 구하여 그것이 이미 정도(正道)의 빙거(憑據)¹¹⁴⁾요, 도덕의 표준이 된 결과, 유학에 대한 일반 민중의 귀의심은 갈수록 더욱 극심하여 마침내 이를 일종의 종교로 간주하여 현재 이를 유교라 칭하기에 이름은 일반이 주지하는 바라. 유학이 극동 제 민족의 혈액 중에 상하 삼천여 년을 통하여 용입된 바 얼마나 농후하며, 얼마나 심각하리오. 특히 우리 반도의 근세 문명은 오로지 그 근원이 유학에서 발생했음을 그 누구라도 부인치 못할 바이니, 지금에 조선 민족으로 이를 배척코자 하는 자가 있음은 또 어떠한 심리에서 연유함인가. 아! 저들의 혈액에는 유학이 융합, 교착하였나니, 만약 저들이 유학을 배척코자 할지면, 저들은 먼저 그 혈액을 교갈(絞渴)치 아니하면 불가할지로다. 그들의 공사생활에 의리인 정(義理人情)의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준칙을 만드는 바는 모두 유학에서 나온 것이

114)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를 뜻함.

아니며, 그들이 입으로 붓으로 소위 신사상이라고 선전하는 바가 유학으로 교양된 사상의 권외에 일보를 못 나가고 있지 않은가. 때마침 비유학적(非儒學的) 사상이 발표된 것을 보면, 그는 단순히 일본의 신문잡지로서 차용한 바요, 다시 이를 잘 살펴보면 그 일본의 신문, 잡지는 구미의 신문잡지에서 차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니, 이와 같음에 불구하고 하나같이 유학을 배척코자 함은 즉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려 함보다는 내부 생활의 기저를 파괴하고자 함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최근에 청년 중 일부에서는 오히려 연장자에 대하여 반항적인 모멸적 태도를 취하나니, 그들은 말하기를, “부로(父老)가 누구뇨? 나라를 그르친 자 그들이 아니며 민족을 멸한 자 그들이 아닌가? 그들은 다만 굴욕을 우리에게 전한 것 외에는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가졌느뇨?” 혹은 그러한 바 아님도 아니라. 그러나 “그대들이 그 대언(大言)을 토출하는 자격은 또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인가?” 필자도 또한 청년이라. 어찌 청년의 의기를 느끼며 청년의 역량을 믿는 바가 없으리오. 다만 연장자에게 반항하며 연장자를 모멸함에 정당한 이유는 도저히 발견치 못함은 무엇인가. 잘못이라. 우리의 부형은 전일(前日)에 그 최선을 다하였나니, 우리 역시 금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으로 믿음이 타당치 아니할까. 그대들은 조선 민족이 반만년 역사가 있음을 자랑하나니, 그 반만년 역사 중에 효와 제(悌)를 제거하면 과연 어떤 궁지와 영예가 있다 하겠는가. 가공(可恐)할지로다. 시대정신의 오해에 의한 결과여, 그는 우리 사회의 생활기저를 파괴하며, 더불어 개조의 자료를 훼손하며 건설의 토태까지 파멸코자 하는 바 아닌가. 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더욱 가공하며 가증(可憎)할 일대 통한사(痛恨事)가 있나니, 그는 일부 청년이 이 시대적 미신에 빠짐을 기화(奇貨)로 이를 선동격성(煽動激成)하여 사회에 일대 횡류를 주출(做出)¹¹⁵⁾하고자 하는 무리의 존재가 이것이로다. 이천만 민중의 표현기관이라 자임하며 조선 민족의 문화운동의 선구자라 자칭하는 동아일보의 태도를 보라. 그들이 민중을 대표한다 함은 요컨대 이 시대적 미신자에게 영합한다 함에 불과함이오. 그들이 문화운동의 선구자라 함은 결국 민족의 생활 기저를 파괴하여 사회 자체의 질서를 문란케 하며, 민족 자체의 항상(恒常)을 실망케 하는 선동에 불과함이 아닌가. 궤변억설로 인심을 격동하여 가여운 청년의 다수로 하여금 그 전도(前途)를 그르치게 할 뿐 아니라, 드디어 영어(囹圄)의 고초를 겪게 함도 그들이요, 극동민족의 도덕적 신앙의 대상을 치고 때려 민중의 귀추(歸趨)를 미혹케 함도 그들이요, 은언반어(隱言反語)로 사회를 조소하며, 민중을 우롱하여 동일한 동포로 하여금 반목질시하게 함도 그들이요, 마르크스를 역술하며 레닌을 표양(表揚)하

115)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든다는 주작(做作)과 같은 뜻.

여 우리 사회의 조성(組成) 기반을 파괴하는 소비에티즘, 볼셰비즘의 기분을 우리 반도 사회에 산포함도 그들이라. 그들이 우리 조선 문화에 제공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 조선 민족의 생활에 공헌한 것이 무엇이뇨. 그들은 다만 시대적 미신자류의 가장 수용하기 쉬운 신기 괴이한 의론을 주출(做出), 고취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칠전팔도(七轉八倒)¹¹⁶⁾ 하는 고경(苦境)에 빠지게 한 후 의기양양하여 그 계략의 성취에 미소자긍(微笑自矜)할 뿐이 아닌가. 그리하여 그들은 아연히 일대 명사(名士)로 자임하며 천하책사를 자부하여, 민중을 비예(睥睨)¹¹⁷⁾하고 사회를 경시하나니, 그들이 미의경차(美衣輕車)로 장안대로를 활보하는 그 이면에서는 그간 얼마나 많은 민중이 희생되었으며, 현재 사회가 얼마나 큰 곤란을 받고 있는가. 아! 그네들이여, 그들이 만일 진면목으로 조선 민족을 위하고자 할진대 적어도 조선 민족의 실생활을 기초하여 행동할지어다. 오히려 신기 괴이로 시대적 미신의 횡류(橫流)를 만드는 것은实로 우리 조선 민족을 해치는 것이라 할지니, 이가 어찌 그들을 위하여 취할 바리오.

중국을 멸하려 하는 자는 누구?

논의가 여기에 이르자 우리의 의식에 치밀어 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으니, 그것은 중국의 현상이라. 우리 조선 민족이 과거 오랫동안 이상향으로 동경하며 종주국으로 송양하던 나라가 최근 항상 내란이 끊이지 않으며, 특히 금일에 이르러서는 그 도가 점점 심하여 만일 이 추세로 나감이 오래되면 자연 분열이나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될지니, 이것 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단언하나니 그것은 유학이 쇠퇴한 결과로다. 중국 역사를 일독한 자라면 누구라도 깨닫는 바와 같이 중국은 결코 무력으로써 통일하여 그 대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혹은 일시 무력으로써 패권을 중원에서 다투며 변강을 압박하여 복속한 바가 있다 할지나, 소위 만이옹적(蠻夷戎狄)을 신하로 삼아, 6대 민족을 통합하여 저와 같은 대국을 형성함은 기실 유학 문명의 수확에 불과한 바라. 즉 유학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도저히 그 통일을 유지하기 불능하였을 것은 진실로 동양사를 한번 들춰본 자이면 누구라도 궁정치 아니치 못할 바로다. 그러나 나라의 후세 정치가나 학자 등은 오히려 유학의 조박(糟粕)¹¹⁸⁾만 만끽할 뿐이요, 그 심수(心髓)를 영회(領會)¹¹⁹⁾하여 각 시대에 활용하는 주의(注意)를 결여하였으므로 유학은 자연 일종의 장식품으로

116) 일곱 번 구르고 여덟 번 거꾸러진다는 뜻.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거나 매우 심하게 고생함을 뜻함.

117) 결눈질함. 흘겨봄. 위세를 갖춰 낫추어봄.

118) 술 찌꺼기, 즉 양분을 빼고 난 필요 없는 물건을 뜻함.

119) 깨달아 이해함을 뜻함.

변하여 마침내 유학 문명의 쇠퇴를 보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즉 대국가를 조성한 유대(紐帶)의 강인한 성질이 실몰(失沒)됨이라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에 이르러서 소위 혁명파가 대두하여 그 국가의 근본도 깊이 관찰치 아니하고 전연 생경한 서양식 정치를 강용(強用)하고자 하여 실패에 실패를 거듭함은 즉 그 유대를 조각조각 절단하는 바와 같다고 말할지로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정치철학으로의 유학의 진가를 깨닫지 못 하므로 이에 준거치 아니하고 따로 다른 것에 적당한 치술(治術)이 있다고 오신(誤信)하였을 뿐이요, 전연 유학을 저버린 바는 아니라 할지나, 북경대학의 일파에 이르러서는 실로 전연 유학의 진가를 부정하여 유학문명을 저주하는 우를 연출하며, 또 그 나라의 청년 중 이에 뇌동(雷同)하여 따르는 자도 적지 않아서 기필코 그 국가 조성의 유대를 절단치 아니하면 그칠 수 없는 현상이나니, 이에 이르러서는 유학문명의 과칭(誇稱)에 불과한 소위 중화(中華)는 분열이나 멸망의 두 가지에 낙착함은 면치 못할 것이라 할지로다. 아! 우리 조선인 된 자 어찌 이에 경계하여 성찰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 역사로서 유학 문명을 제외하면 과연 세계에 자랑할 무엇이 존재 하는가. 조선인 된 자, 이 점에 대하여는 마땅히 삼사재고(三思再考)를 요하지 아니치 못할 바라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이를 역설함은 결코 시대정신에 몰교섭(沒交涉)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 시대정신은 전부 이미 유학에 합축된 바라. 이가 어찌 우리 사회와 상용치 못한 도리가 있으리오. 시대정신을 철저히 이해하여 우리 생활 개선의 최선 방법을 강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함이 목하 우리의 최선 급경임은 여기서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도다.

신사상에 벽력(羃歷)한 타기(惰氣)와 권태(倦怠)

시대정신을 이해하여 우리 생활개선에 최선 노력을 다할 것은 목하 우리의 급무인바, 다만 이 시대정신을 오해하여 시대적 미신에 빠짐은 크게 주의해야 할 바니,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조선 사회에 이 시대적 미신자류가 적지 않음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바이나, 단 최근에 이르러 우리 민중 심리에 기뻐할 하나의 신경향이 생겼나니, 그것은 신사조—조선에 있어서는 시대적 미신에 떨어진—에 대하여 생긴 타기(惰氣)와 권태(倦怠)로서 추측하여 알 수 있는 바이라.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른 원인을 고찰컨대 시대적 미신자류가 주장하며 요구하는 바는 전 장(前章)에 기술한 바와 같이 구물(舊物)의 부인(否認)이요, 현실의 부정(否定)이라. 그리하여 그것은 마치 생활 개선을 방해하며 회사기능의 소생을 불능케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생함과 같은 태도

이니, 그 자아 일점(一點)인 주장과 지극히 무리한 요구는 심히 기괴하나마 신기한 이유로 일부 인사의 호기심을 끌어 마침내 일시의 유행을 만들기에 이르렀던 바라.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기함으로써 감응하였던 흥미가 퇴거(褪去)¹²⁰⁾하는 동시에 전연 세태인정을 도외시한 자아의 주장과 무리한 요구는 도저히 세상에 수용되지 못함을 깨달았으며, 또 사실 시대적 미신자류의 주장한 바나 요구한 바가 하나라도 기왕에 실현된 예는 절무(絕無)한 대신에 사회 기능은 전연 쉽 없는 상태에 빠져 사회로서의 덕의(德義), 사회로서의 선(善), 사회로서의 미(美)는 모두 우리 사회에서 전퇴(轉退)하는 모습을 노정하기에 이르러 자연 이 신사조에 대한 타기와 권태가 생기게 된 것이로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를 회복시켜라

우리는 본문 벽두에 ‘우리 사회는 과연 생명이 있는가’의 의문을 제기한 후 이에 사회적 항상(恒常)의 실망됨을 지적하고 그 주요 원인이 시대적 미신의 횡류(橫流)에 있음을 논급(論及)였다. 또한 이 시대적 미신이 우리 사회 조성의 기초를 유망(遺忘)¹²¹⁾하며 배척하므로 우리 사회의 항상이 저하되어 사회 자체의 생명의 유무까지 의심하게 된 바와, 또 유학 문명하에 통일된 대국가인 중국은 유학의 쇠퇴, 즉 유학 문명의 쇠퇴로 장차 멸망의 위기에 빠진 목전의 실례(實例)를 들어서 우리 조선 형제의 경계할 바를 간단히 기술한 바이라. 그러나 다행히 황천(皇天)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여 세상 사람이 시대적 미신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미신자류 자신도 다소 타기와 권태를 느끼는 모습을 보이기에 이르렀으니, 때는 오고 기회는 도래하였도다. 우리 조선인 된 자 어찌 이에 맹연각성(猛然覺醒)하며 궐연분기(蹶然奮起)치 않을 수 있으리오. 이에 우리는 감히 이천만 동포에게 고하니, 우리는 협동일치하여 이단사설을 제거하고 우리 반도 반만년 역사를 장식하는 동양문명이 전하는 양풍미속을 진작하며, 더불어 서양문명을 잘 이해하여 그 장점으로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천만 민중의 내부 생활의 항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외부 생활의 개선을 이룩하여 사회 미(美), 사회 선(善), 사회 진(眞)의 시대적 표준을 정하며, 이에 의하여 사회적 항상을 소생하며, 사회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로다. 거듭하여 고하노니, 우리 사회가 네댓 권의 잡지나 한두 종의 신문을 통하여 근근이 규지(窺知)¹²²⁾한 시대정신의 일면을 천고불멸의 진리와 같이 오해하여 소위 시

120) 바래어 사라진다는 뜻.

121) 잊어버림을 뜻함.

122) 엿보아 안다는 뜻.

대적 미신에 빠지는 경술자로 인하여 동요되며 분란되어 마침내 파괴되려 함은 실로 우리 이천만 민중의 심대한 치욕이라 하노라.

〈출전 : 金尙會, 如斯何! へ야 我社會를 復活하라, 『時事評論』 6호, 1922년 11월 15일〉

7) 김환(金丸), 조선시국사관(1, 2, 3, 5, 7, 8)

1. 위정자의 책임

현하의 조선시국을 논하는 자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불문하고 민심이 아직 상궤(常軌)에 놓이지 못하고 의연히 안정을 잃어 내선(內鮮)의 융화를 도모함이 용이한 문제가 아니오. 따라서 조선 통치는 지난(至難)한 중에 지난한 사업이라 하여 비관의 말을 주창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으니, 조선의 민정(民情)은 세상 사람의 말과 같이 과연 낙관을 허용치 못할 상태에 있는가. 이상(理想)으로써 논하면 낙관의 귀결을 얻지 못할 것이 아니라, 현실로써 민심의 추향(趨向)하는 기미를 살피면 결코 낙관치 못할 점이 많다. 만약 현상으로써 만족스럽다 하여 낙관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강작(強作)의 언(言)¹²³⁾이요, 정미(呈媚)의 사(辭)¹²⁴⁾라 할 수밖에 없고, 비관론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겠도다. 그러나 세계대전 후 사조(思潮)의 격변과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 동요를 초래한 영향을 받아 불안을 느끼고 개조를 부르짖는 것은 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반이 모두 그러하니, 이 전환기에 있는 동안에는 동요될 것은 동요될 대로 동요하고 진행될 것은 진행될 대로 진행치 아니하고는 그치지 아니할 것이오. 도저히 현상대로 안정에 귀착할 것이 아니며 조선의 시국 역시 대세의 추이에 의하여 파동을 겪는 바이니, 어느 기간까지는 움직일대로 움직이고 나아갈 대로 나간 후에야 안정에 귀착할 것이요, 결코 대세가 흐르는 바와 배치(背馳)하여 단독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되 조선의 민심이 어느 정도 안정을 잃었다 할지라도 위정자가 능히 대세가 흐르는 바와 민심이 향하는 바를 살펴 선도할 만한 것은 이를 선도하고, 조장할 만한 것은 이를 조장하고,

123) 억지로 하는 말을 뜻함.

124) 생물이 이성을 유인하기 위한 언사를 뜻함.

해방할 만한 것은 이를 해방하고, 방지할 만한 것은 이를 방지하고, 금지할 만한 것은 이를 금지하여 시설이 딱 맞으면 내선융화의 실적을 거두고 공영동창(共榮同昌)의 행복을 향유할 것은 의심할 바 아니오. 세상 사람이 미루어 짐작하는 바와 같이 조선 통치가 지난한 중에 지난한 것이 아니라 하노라. 그러나 현하의 상태로써 추측하면 이 전환기에 있어서 위정자가 한 걸음만 잘못할지라도 다시 만회키 어려운 역경에 빠질 것은 부정키 어려운 사실이니, 금일이 즉 위정자의 방침 여하에 의하여 비관과 낙관의 분기점이 될런지 알지 못하겠도다.

국가의 성쇠홍망이나 인문의 진화와 퇴보를 모두 신비적 운명론에 맡길 것 같으면 위정자에게 책임이 없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또한 책임이 없겠지만은, 국가의 성쇠홍망이나 인문의 진화와 퇴보가 모두 인위적으로써 결행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음을 아는 우리는 그 책임을 신비함에 돌리지 못하는 동시에 스스로 인류 된 책임이 중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정권을 장악한 위정자에게 가일층 중대한 책임이 있다 하노라. 원컨대 일본은 미(米) 제독 ‘베리’의 함대가 내방하였을 때에 흑선(黑船)이 왔다 하여 조야가 경동하고 양이(攘夷)의 논의와 개화(開化)의 논설이 흔쟁(喧爭)¹²⁵⁾을 그치지 않아 당시 위정자의 지위에 있던 덕천막부(徳川幕府)에서도 따를 바를 알지 못하고 놀라 혀둥지 등 하다 잘못 처리하였다. 그러나 다행으로 개화의 주장이 승기를 잡고 구미열국의 제도와 문물을 시찰한 우국의 지사는 대부분 개혁의 급함을 절규하여 왕정복고하고 폐번치현(廢藩置縣)¹²⁶⁾하여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대업을 수행하고 열강의 대오에 수반하여 동양의 패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으니, 만약 당시에 일본의 위정자가 양이의 논의에 기울어 쇄국(鎖國) 자수(自守)의 방책을 취하였던들 어찌 능히 오늘날의 흥륭(興隆)을 이루었으리오. 조선도 병인양요(丙寅洋擾) 이래로 문명의 풍조가 내습(來襲)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그 때 집정자인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함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禦國)”라는 비를 종로에 설립하여 개화론자의 입을 틀어 막고 천주교도의 학살을 자행하여 스스로 문명풍조와 접근할 길을 절단하고 마침내 조선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문화에 낙오자가 되게 함을 면치 못하게 하였다. 만약 당시의 대원군이 개화의 주장을 따라서 구미의 문명을 수입하고 개혁을 단행하였던들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부강국이 되었을런지 알지 못하겠으나, 대원군의 조선 민족에게 부과한 죄가 크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겠도다.

125) 왁자하게 떠들면서 다툼.

126)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때 지방통치를 담당하던 번(藩)을 폐지하고, 지방통치기관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부현제로 일원화한 것을 일컫는 말.

만주와 청(淸)은 어떠하였는가. 아편전쟁에 영불연합군에게 연전연패하여 막대한 배상을 지불하고 화친을 구걸하여 구미열강의 실력이 어떠한지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자존대(妄自尊大)¹²⁷⁾하여 자강의 술책을 강구치 아니하고 오직 만수산(萬壽山) 토목의 역(役)에 국비를 탕진하여 금일의 현상을 순치(馳致)하였으니, 다만 청조에 뿐 아니라 중국(支那)의 사역만 민중에 부과한 서태후의 죄를 어찌 가볍다 하겠는가. 정권을 장악한 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와 같이 국가의 흥망과 민족의 융체(隆替)에 관련이 있으니, 위정자의 책임이 어찌 중하고 크지 않다 하리오. 고로 우리는 민심의 안정을 잊은 조선을 통치하는 임무를 받은 당국자의 책임이 중하고 큰 것을 통감치 않을 수 없는 바로다.

일본이 조선을 경영함이 하루 아침과 저녁의 일이 아니라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정한론(征韓論)이 일어난 때로부터 일한병합에 이르는 반세기간의 일본외교사는 거의 조선 문제로서 머리를 채웠으니, 다행으로 구미의 신공기(新空氣)를 흡수하여 부국강병의 기초를 얻 일본이 국외의 발전을, 불행히도 세계 풍조에서 격리되어 빈약이 극에 달하고 능히 자립할 힘이 없는 인접지인 조선에서 구하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청국이나 러시아는 물론이고, 멀리 영불 등 국가에 대한 외교에도 조선 문제가 내재치 아니한 때가 없었고 마지막에는 일청전쟁, 일러전쟁의 양 대전역(大戰役)까지 일으켜 전승한 결과, 조선은 마침내 일본의 판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니, 일한병합이 어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리오. 일본의 유신은 때마침 19세기의 반열강(半列強)의 제국주의가 극히 팽창하였을 시대라, 민주공화로 건국의 정신을 삼은 북미합중국까지도 제국주의로 변화하여 영토의 확장에 여력을 남기지 않던 때이니, 만사를 구미열강을 모방하여 유신의 사업을 수행한 일본이라, 열강의 제국주의를 모방하여 군비의 충실로 국방의 자위를 도모하고 영토의 확장으로 국력의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 어찌 당연히 취할 경로가 아니리오. 요컨대 일한병합은 시대풍조의 요구로 그렇게 함이니, 환언하면 일한병합은 제국주의의 팽창이 극에 달한 20세기 초두의 시대 산물이라. 일전에 강대국 러시아를 격파하여 동양의 일개 섬나라로서 일약하여 일등국의 지위를 점하고 열강의 대오에 수반한 일본이 조선을 병합함에 있어 영국이 아일랜드(愛蘭)를 대함과 같이, 프랑스(佛國)가 베트남(安南)을 대함과 같이, 또는 미국인(米國人)이 하와이(布哇)를 대함과 같이, 심지어는 아메리카(阿米利加)의 흑인 노예(黑奴)와 아프리카(亞弗利加)의 홍종(紅種)¹²⁸⁾을 대함과 같이 조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토인(土人)으로써 대우하였을지라도 감히 저항할 실력을 가지지 못한 조선인은 무엇이든지 감수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노라. 반드시

127)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잘난 체함.

128) 홍종(紅種)은 인디언을 뜻함. 따라서 아메리카의 홍종(紅種), 아프리카의 흑노(黑奴)가 맞을 듯함.

감수하였으리라고. 작아도 반만년의 역사와 이천만의 민중을 가진 국가를 병합함에 병 불혈도(兵不血刃)하고 병합 후 10년이 하루같이 안온히 경과한 것을 보더라도 이를 증거 함에 충분치 아니한가. 그런데 1919(대정8)년 3월 1일에 발발한 만세소요가 팔역(八域)을 진동케 함은 어찌된 일인가? 구주대전(歐洲大戰)¹²⁹⁾의 결과 격변한 시대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에 연유함은 물론이거니와, 병합 이후 역대 위정자가 그 시설(施設)을 그르쳐 조선의 민심을 이반케 함이 최대의 원인인 것은 가히 부정치 못할 사실이라 하노라.

만약 병합의 본 취지가 단순히 영토를 점령하여 증식하는 인구를 이식하고 공업의 원료를 취하며, 제품의 이출(移出)을 행함에 있다면, 빙궁한 조선인은 토민의 대우를 받고 노예의 종속을 면치 못함이 흑노홍종(黑奴紅種)과 같다 할지라도 하등 항쟁할 힘이 없었을지니, 역대의 위정자가 조선인을 토민으로 대우치 아니하며, 노예로 종속케 하지 아니함뿐 아니라 산업의 개발을 도모하고 교육의 진흥을 계획하여 조선인으로 하여금 미개(未開)에서 벗어나 문화의 생활에 진입케 하고자 한 것을 감사하다고 칭송할지언정, 불평을 주창하고 불만을 토로할 이유가 만무할 것이라. 그러나 병합의 대정신은 병합 당시의 환발(渙發)¹³⁰⁾하신 메이지대제(明治大帝)의 성조(聖詔)¹³¹⁾에 “민중은 직접 짐의 완무(緩撫) 아래 입각하여 그 강복(康福)을 증진할지오. 산업 및 무역은 치평(治平) 아래 현저히 발달하기에 이를 것이라” 하신 구어(句語)에 명시하심과 같이, 조선의 민중은 일본인과 하등의 차별이 없이 폐하의 적자(赤子)로 직접 완무 아래에서 황화(皇化)의 은택(恩澤)을 균접함에 있으니, 위정자가 이 병합의 대정신을 몰각하고 시설의 완급이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하여 주종의 관계와 차별의 대우로써 조선민중의 권리를 유린하고 생존을 협위함이 있음에야 어찌 원망의 탄성이 나오지 아니하리오. 이것이 즉 만세소요의 불상사를 발발케 한 이유이리라. 시험 삼아 기탄없이 역대 위정자의 실정(失政)을 들어 조선의 민심이 상궤(常軌)에 놓이지 못하는 이유를 진술하고자 할진대, 이를 병합 이전에 있는 내선(內鮮)의 관계에 소급하지 아니함이 불가하도다. 이로써 아래에 멀리 독립부식(獨立扶植)의 시대로부터 일본 위정자의 조선에 대한 정책의 착오된 것을 지적하고 이어서 근본 해결의 관견(管見)을 서술하고자 하노라.

129) 제1차 세계대전을 뜻함.

130) 임금의 명령을 세상에 널리 선포함.

131) 성스러운 칙유(勅諭). 천황의 명령을 적은 포고문을 뜻함.

2. 독립 부식(扶植)의 실패

일청전쟁이 개시되기 오래 전부터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진의는 조선의 독립을 부식하고 개혁을 원조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자강자립(自強自立)의 실력을 배양하여 동양의 화원(禍源)이 되지 아니하고 일본의 여국(與國)이 되게 하여 순치보차(脣齒輔車)¹³²⁾의 연결로서 공존공영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고 영토적 야심이 없는 것은 역대 위정자의 조선에 대한 외교방침이 이를 증명하는 바이라. 혹자는 말하되, 구미의 제국주의를 수입하여 개국진취의 국시(國是)를 확립한 일본이 어찌 영토적 야심이 없고 조선의 독립을 부식하고자 하였으리오 하나, 당시 일본의 사위(四圍)의 사정은 조선에 대하여 영토적 야심을 일어나게 함을 허락치 아니하므로 조선의 독립을 부식하여 대륙의 발전을 꾀할 방책을 취하였으니, 이는 1873년에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정한론(征韓論)이 패한 후 역대 위정자가 고집하는 일정의 방침이라. 구미의 문물은 수입한 것이 있으나, 안으로는 정치의 개선이 전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밖으로는 무비(武備)의 실력이 오히려 열강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아는 일본의 위정자는 밖으로 이웃나라의 틈에 끼어들기보다는, 안으로 국력의 충실을 다함이 급무라 하여 조선 문제는 하루도 잊은 때가 없으나, 무력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털끝도 없었으니, 이는 일청전쟁이 개시되기까지 조선과 청국에 대한 교섭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치에 맞는 것이라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노라. 일본의 위정자가 조선에 대하여 영토적 야심이 있었다 함은 일러전역(日露戰役) 이후 군벌 일파에 한할 것이요, 일청전쟁 전후에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여 한 가지 뜻으로 조선의 독립을 부식하고자 하였으니, 우리 조선인 된 자는 이를 망각함이 불가하도다.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부식하고자 한 성의의 유무가 내선융화(內鮮融和)와 지대한 관계가 있다 하노라.

당년에 만약 조선의 독립을 부식코자 하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이 성공을 이뤘으면, 조선은 오늘의 조선이 아닐 것이요, 내선융화 문제와 같은 것은 오늘에 이르러 운위(云爲)할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한데 조선의 독립을 부식하고자 하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이 성공을 이루지 못함에 이른 것은 오로지 조선인의 자작자얼(自作自孽)¹³³⁾이라 하겠지만 일본의 위정자가 취한 방침이 그릇됨에 연유한 것도 아님 이 아니니, 당시 일본의 위정자가 취한 방침이 잘못하였다 함은 조선의 국정에 어두워 왕실 중심주의를 취하고 조선인의 국민성을 무시한 것이 그것이라. 일본의 황실은 건국 이래로 만세일계의 존엄을 보유하였고 德川막부(徳川幕府) 말까지 정권은 항상 신하의

132) 입술과 이와 같이 서로 보완을 이루는 관계를 뜻함.

133) ‘孽’은 ‘孽’의 속자(俗字). 자얼(自孽)은 스스로 무너지다, 스스로 괴롭힌다는 뜻.

손에 있어 실정의 책임은 집정자에게 돌리고 천황은 정권 쟁탈의 권외(圈外)에 있게 하였으므로 인민의 정치에 대한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의 소리는 막부로 향하여 발생하고 정권을 쟁탈하고자 하는 강한 신하라 할지라도 창을 장군에게로 거꾸로 공격함에 불과한지라. 이로써 왕실은 항상 인민의 경애흠모하는 중심이 되고 신료도 역시 갈충봉공(竭忠奉公)의 뜻이 있어 흑선(黑船)이 침입하여 국난이 오게 되었을 때 근왕(勤王)의 소리를 일창(一倡)함에 전국이 향응(響應)하여 막부는 대정(大政)을 봉환(奉還)하고 각 번주(藩主)는 영토를 반납하여 명치유신(明治維新)의 대업을 수행하였으니, 일본의 위정자로 보게 되면 조선에도 왕실 중심주의를 취한 것이 혹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이조의 왕실은 일본의 왕실과 다름에 소양(霄壤)¹³⁴⁾의 판단이 있음에 어찌하리오. 조선은 단군의 조(朝)를 대신함에 기자(箕子)로써 하고 기씨(箕氏)를 대신함에 위만(衛滿)으로써 하였다가, 또다시 유한(劉漢)에게 정복되었고 기씨의 후대가 남으로 옮겨 마한, 변한, 진한의 삼한이 되었다가 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으로 분하고 신라가 통일 후 그 말엽에 이르러 병란이 발생한 결과, 왕업(王業)이 고려로 돌아가고 왕조를 대신함에 이조(李朝)로써 하였도다. 고려의 태조는 궁예의 막료요, 이조의 태조는 고려의 변장(邊將)이라. 이와 같이 조선은 유사 아래로 왕통의 변역(變易)이 무상하고 찬탈이 계속 이어져 인민의 왕실에 대한 관념은 오직 치자(治者), 피치자의 관계를 인식함에 지나지 못하고 신료도 ‘패하면 곧 역적이요 성공하면 곧 군왕이라(敗則逆賊! 成則君王)’,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王侯將相 寧有種乎)’ 등의 말을 믿어 오직 힘이 있는 자이면 왕위를 기유(覬覦)¹³⁵⁾치 아니한 자가 없었으니,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찬탈의 사(事)와 모역(謀逆)의 옥(獄)이 없는 대(代)가 없음은 신료가 왕실에 대한 사상이 어떠했는가를 충분히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인민과 왕실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가히 가늠할 것이라. 일청전쟁을 도발한 동학의 난에 전봉준이 왕호를 참칭하였던 일을 보더라도 당시의 민심이 이조왕실을 원한(怨恨), 이반(離畔)함에 연유함은 어느 누구라도 이를 부인치 못할 사실이 아닌가. 조선인민의 왕실에 대한 사상은 이와 같이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무장(武將)이 각 번(藩)을 할거하여 봉건제도하에서 지방분권주의로써 각각 군비를 고치고 무를 숭상하여 의(義)를 존중하고 사(死)를 가볍게 여기는 무사도는 세계에 새길 만한 좋은 풍속이라 하겠다. 또한 나라의 위치가 바다 가운데 있으므로 상하 이천년간에 한 차례 몽고의 내습을 피하여 이를 섬멸한 것 외에는 외국의 침범을 당한 일이 없어 타국을 보복한 것이 전무하여 타국을 보사(報事)한 일이 절대로 없는 동시에 국난이 있으면

134) 하늘과 땅. 엄청난 차이.

135) 분에 넘치는 일을 바람.

거국일치로써 이에 일어나는 국민성이 있다. 그러나 조선은 그렇지 못하니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정립시대에는 병쟁이 계속 있어 상무(尙武)의 풍이 없지 않았겠으나, 통일 이후로는 내쟁이 끝났으므로 무비(武備)를 닦지 아니하여 점차 풍습이 문약(文弱)에 빠졌다. 나라의 위치가 반도이므로 북은 대륙을 접하여 땅이 중국, 만주와 연결되어 있고 동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이웃하였으므로, 삼국이 상쟁하는 사이에도 필히 외국의 힘을 빌림으로써 적을 막는 유일의 전략을 취하여, 때로는 도움을 일본에 청하며, 때로는 병력을 당태종 이세민(李唐)에게 빌렸다가 마지막에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할 때 당병(唐兵)의 힘으로써 하였다. 그 후 고려로부터 이조에 이르기까지 송(宋), 요(遼), 금(金), 원(元), 명(明), 청(淸)의 6대를 세우는 동안에 침벌을 받지 않거나 복사(服事)¹³⁶⁾치 아니한 나라가 없어, 춘추시대에 진초(晋楚)의 사이에 끼어있는 정국(鄭國)이 진사(晋師)가 이르면 진(晋)에게 굴복하고 초병(楚兵)이 오면 초(楚)에 복종한 것과 같이, 오직 강자를 택하여 정삭(正朔)¹³⁷⁾을 받들고 조공을 성실히 하여 그 노여움을 촉발하지 않고 병화(兵火)의 화가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국시를 삼았다. 이것이 비록 지양(地壤)¹³⁸⁾은 작고 인민은 약한데 강한 나라와 접한 지리의 관계로 사연(使然)함이라 할지나, 그간에 자연히 국민으로 하여금 타국에 번속(藩屬)¹³⁹⁾됨을 치욕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어 소중화(小中華)라고 자칭하여 중국의 속방 됨을 영예로 알고, 동방의 예의의 나라로 자처하여 중국의 문물을 모방하는 것으로써 유일하게 자랑삼는 자료를 만들어 사대사상의 습성을 유전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부유(腐儒)¹⁴⁰⁾ 중에는 오히려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 한학(漢學)을 승상하고 신학문을 배척하는 자가 있으니, 그 고질이 얼마나 심한 것이며, 이것이 일조일석에 고쳐지지 못할 것을 가히 알 수 있겠는가. 조선인의 외국에 대한 국민성은 이와 같이 일본과 특이하였거늘 일본의 위정자는 조선에 대한 방침을 세울 때 일본과 조선이 아주 다른 사정은 연구치 아니하고 자국의 대내 방침과 가깝게 동양의 정책으로써 임하고자 하였으니, 어찌 능히 계불인량(計不人量)됨을 면하리오. 김옥균(金玉均) 일파와 같은 우국지사는 설사 일본의 힘을 빌리더라도 청국의 속박을 벗어나 독립국이 되고 내정을 개혁하여 자강의 기초를 확립한 후 일본과 연맹하여 열강 사이에

136) 복종하여 섭긴다는 뜻.

137) 역법의 하나로 중국 제왕이 새로 나라를 세우고 신력(新曆)을 반포하여 시행했는데, 이를 도입해서 사용한 것을 말함.

138) 땅, 국토를 뜻함.

139) 속국이 된다는 뜻.

140) 생각이 낡고 완고하여 쓸모없는 선비를 뜻함.

쌍마차로 달리면 단순히 동양의 평화를 보호할 뿐 아니라, 영구히 백인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여 이로써 일본의 당국자에게 방책을 주고 조선의 동지자와 계책을 함께 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갑신(甲申)의 사변¹⁴¹⁾은 즉 이 계획에 기인함과 같도다. 그러나 위로는 왕실로부터 아래로는 관료, 군병, 서민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청국의 강대함을 믿고 일본의 약소함을 경모(輕侮)할 뿐 아니라, 자주가 무엇인지 독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청국의 힘에 의뢰하여 현상을 유지함을 상책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는 당시(當時)인지라. 아무리 일본의 원조가 있다 할지라도 가깝게 전국(全國)의 상하가 빙척(擯斥)¹⁴²⁾함에야 어찌 성공을 바라리오. 이것이 즉 김옥균 일파가 일본의 힘을 빌려 조선의 독립을 계획하고자 하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까닭이다. 그 반면에는 도리어 개화당(開化黨)의 근저(根柢)를 전복케 하여 김옥균 이하 동지는 역적의 죄명하에서, 혹은 주찬(誅竄)¹⁴³⁾하거나 망명하였고 따라서 일본의 세력이 쇠퇴하는 동시에 사청파(事清派)의 기세를 더욱 조장하여 원세개(袁世凱)로 하여금 10년간 경성의 무대를 독차지하게 하였으니, 갑신사변은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부식(扶植)하고자 하던 운동의 제일보의 실패라 할 수 있겠다. 갑신사변 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은 위미(萎靡)¹⁴⁴⁾ 부진하고 러시아도 다소 세력을 신장코자 하였으나, 사청파의 세력이 상하에 널리 가득 차서 명실공히 청국의 속방됨을 노정하기에 이르렀도다. 그러하던 차에 동학당(東學黨)이 혁명의 군사를 일으켜 관군을 누파(屢破)함에 사청파의 집정자가 청국에 원병을 요청하여 청국이 조선에 병력을 보낸지라. 일본도 텐진조약(天津條約)에 의하여 역시 조선에 병력을 보내고 조선의 독립을 부식할 것을 청국에 교섭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방패와 창을 교차함에 이르러 일청전쟁(日淸戰爭)이 일어났다. 일청전쟁은 즉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부식하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이다. 조선의 독립을 부식코자 하는 운동의 제일보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부식하기 위하여 전쟁을 불사함에는 만전(萬全)의 성산(成算)¹⁴⁵⁾이 없으면 발생치 않았을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을 허용치 않을 바이라. 그러한대 일본의 묘산(廟算)¹⁴⁶⁾은 다만 전쟁 그 자체일 뿐 필승의 주(籌)를 운(運)하였고 조선 문제에 관하여는 전과 다름없이 유산(遺算)이 없지 않았으니, 갑신사변

141) 1884년 김옥균·박영효 등이 중심이 되어 청국의 속방화정책에 저항하여 조선의 자주 근대화를 추구한 갑신정변을 뜻함.

142) 싫어하여 물리침.

143) 형벌로 죽이는 것과 귀양 보내는 것.

144) 시들어 말라 쓰러짐.

145) 일이 성사될 만한 예산.

146)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과 계략을 뜻함.

의 실패한 원인은 일본의 무력이 청국만 같지 못함에 있으니, 무력으로써 청국의 세력을 일소(一掃)하고 조선 정부로 하여금 내정의 개혁을 단행케 하여 성의로써 조선의 독립을 부식하면 상하를 묻지 아니하고 필히 모두 탄복하리라 한 것이, 생각진대 그때 일본 위정자의 심산인 듯하도다. 이론으로써 추론하면 자국이 사력을 다하여서라도 독립을 구하고자 할 터인데 하물며 타국의 힘으로 청국의 기반을 벗어나 독립국이 되고 어떠한 보수를 요구함도 없이 권고하는 바가 내정의 개혁에 지나지 아니하니, 상하를 통틀어 모두 기뻐할 뿐 아니라, 감사무지(感謝無地)하여야 함이 당연할 것이리라. 그러나 세상일은 이론으로만 추론치 못할 것이다. 찬탈의 음모가 무상한 조선에는 국왕도 그 지위의 불안을 느끼는 일이 없지 않으므로 어떠한 일을 막론하고 결행함에는 반드시 먼저 왕위의 안전을 도모하나니, 만약 조선의 독립이 왕위의 안전에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청국의 예속됨을 감수할지 알지 못할 것이리라. 이조의 태조는 어떤 침벌을 당한 일도 없는데, 그 왕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주명(朱明)의 번속(藩屬) 됨을 구하고 그 책봉(冊封)을 받지 아니하였는가. 그뿐 아니라, 내정도 역시 그러하여 호남과 서북의 인사에게 고관과 요직을 주지 아니한 것은 왕통의 안전을 도모함에 연유한 것이니, 이와 같이 항상 왕위에 대하여 공포심을 유지하는 이조 왕실에서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부식코자 함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니리오. 일본이 청국과 개전하여 아산(牙山)에 주둔한 청병을 구축(驅逐)하고 일본의 군대로 왕궁을 호위한 때에 개혁당에게 옹립되어 집정의 위치에 오른 대원군이 비밀리에 평양에 있는 청군에게 관(款)을 통하여 □심(□心)이 없음을 밝힌 것을 보더라도 그 심중이 어떠한가를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왕실이 일본을 의구함은 이와 같은데 헌법의 전범(典範)이 없어 전제(專制)의 권위가 군주에게 있고 민의를 대표한 의원이 없어 내각은 정치의 책임을 지지 못하였으니, 다만 일본의 제도와 법규를 모방함으로써 어찌 능히 개혁의 성과를 거두겠는가. 또한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정령(政令)이 나오는 방도가 확정치 못하고, 봉당의 쌓인 폐해가 더욱 심하여 배제구함(排擠構陷)¹⁴⁷⁾이 이르지 않은 데가 있는데 고립무원의 소수 개혁당으로 하여금 정권을 오래 파지(把持)¹⁴⁸⁾케 하고자 한들 어찌 가히 이루리오.

이 때문에 일본군은 청병을 연전연파하여 장차 북경을 향하고자 망자존대(妄自尊大)¹⁴⁹⁾하던 청국으로 하여금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구걸케 하고, 일본은 마침내 강화

147) 어려운 지경에 빠뜨린다는 뜻.

148) 꽉 움켜쥐고 있다는 뜻.

149) 함부로 자신만 잘난 체하고 우쭐대며 다른 사람을 무시함.

조약 제1조에 청국으로 하여금 조선의 독립을 승인케 하여 개전(開戰)의 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또 영지(領地)를 할양하고 전비를 배상케 하여 조선은 일본의 세력범위 내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으로 하여금 정무를 섭행(攝行)케 하였다가, 이준용(李浚鎔)의 사건에 실패하고 민비사건에 또 실패하자 관구당(觀口黨)의 세력으로 하여금 하루 저녁에 타진무여(墮盡無餘)케 하여 주륙(誅戮)을 겨우 면한 자는 일본으로 망명케 하였다. 아관파천(俄館播遷)의 사변이 일어난 후로는 일본세력이 점점 쇠잔하여 조선의 독립을 부식할 힘이 없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압박을 느껴 수수방관할 수밖에 다른 방책이 없었으니, 일본의 조선의 독립을 부식코자 하던 계획은 이에 이르러 완전히 실패에 그치고 일청전쟁에 다대한 희생을 치르고 전승한 효과는 얻은 바가 아무것도 없음에 이르렀도다. 그 책임은 오로지 조선이 일본을 신뢰치 아니한 것에 있다 하나, 일본의 당국자인들 어찌 오산의 책임을 면하리오. 당시 일본을 위하여 계획컨대 조선의 독립을 부식함은 두 가지 방책 외에 없었으니, 단연 보호정치를 행하여 외교권을 거두고, 국방의 책임을 담당한 후 내정을 개혁하는 것이 상책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왕위의 폐립을 단행하고 붕당을 이용하여 정권을 일파의 손에 두게 한 후 지도유액(指導誘掖)¹⁵⁰⁾하여 개혁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차선책이라 하노라.

일청전쟁에 일본이 승리를 얻은 후에는 열강이 모두 일본의 강함을 경탄하였고, 조선의 상하에 그 위엄에 굴복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만약 그 때에 일본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와 국방의 위임을 받고 보호정치를 행하여 궁금(宮禁)¹⁵¹⁾을 숙청하고 궁중과 부중의 차이를 엄히 하고 개혁당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실권을 장악케 한 후, 일본인 고문을 두어 일일이 내정 개혁을 지도하고 문화 시설을 차례로 수행하고 조선인의 실력이 능히 자주독립할 만한 때에 이른 후, 고문제도를 철폐하여 내정은 조선인에게 일임하고 공수동맹(攻守同盟)으로써 양국의 이해와 휴戚(休戚)¹⁵²⁾을 함께 하였으면, 조선의 독립을 부식코자 하는 일본의 목적은 난관 없이 달성하였을 것이요, 관리의 탐학(貪虐)에 어육(魚肉)이 되었던 조선민중은 문화의 신정(新政)에 소생하고 개발하고 번영하여 일본의 덕을 칭송하는 탄성이 팔역(八域)에 충만하였을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노라. 혹자는 말하되, “일본이 청병을 격파하고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인들 어찌 조선을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할 욕심이 없었으리오만은, 그때는 아직 실력이 미치지 못하여 열

150) 이끌어 도와준다는 뜻.

151) 궁궐, 궁에 드나드는 것을 단속하는 일을 뜻함. ‘숙청궁금(肅清宮禁)’은 대궐 안에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을 의미함.

152) 편안함과 근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뜻함.

강의 압박을 받는 때이므로 열강의 동정을 구하기 위하여 조선의 독립을 승인함으로써 강화의 제일조건으로 삼아 내외에 성명한 바이지, 실력만 있었으면 이미 오래 전에 병합 하였을지라. 하필 보호정치리오. 할양(割讓)하였던 요동반도를 러시아, 프랑스, 독일 삼국의 간섭으로 환부한 것을 보더라도 가히 알 것이 아닌가.” 하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노라. 원래 삼국이 간섭을 시도한 것은 일본의 강하지 못함을 멸시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독일이 러시아의 극동정책을 원조하여 환심을 사고 프랑스와 손을 잡고 일을 함께 하여 복수심을 완화코자 하는 혼담(魂膽)¹⁵³⁾에서 나온 것이요, 반드시 일본을 억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나온 것은 아니니, 만약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하였으면, 요동반도의 점령은 조선의 독립을 위협케 함이라고 반대할 구실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고 일청전쟁 후에까지 이른 조선에 대한 열강의 외교관계는 극히 적어 조선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열강국이 함께 용인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보호정치를 행함에 반대하였을 나라는 결코 없다 하였을지니, 일본이 행치 못한 것이, 혹은 열강의 간섭을 두려워했다면 그만이지만, 열강의 간섭을 염려한 까닭은 아니라. 일보를 양보하여 간섭이 있었으리라 하면 간섭이 있는 때에 선후책을 강구함이 옳지 아니한가. 하여간 일본이 조선을 세력권 내에 포함하고 완전히 독립을 부식하지 못한 것은 보호정치를 행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 하노라.

일본이 단연히 보호정치로써 내정개혁을 행하지 못하겠으면, 왕위의 폐립(廢立)을 행하여 사대당이 음모를 기도할 근거를 없앤 후 개혁당으로 하여금 중앙과 지방의 정권을 장악케 하고, 일시 사색(四色)의 당쟁을 이용하여 사대당의 뿌리를 박멸한 후에, 점차 개혁의 시설(施設)을 행하여 선정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 다시 개혁당에 속한 민당(독립협회와 같은 것)의 세력을 조장하여 개혁당의 우익(羽翼)을 신장시켰으면,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갈수록 더욱 공고하고 친밀하여 러시아의 조선을 호시(虎視)¹⁵⁴⁾하는 원인을 만들지 않고 국제 관계는 원활함을 유지하며, 민중은 세계문화에 추수(追隨)하여 독립할 실력을 부식하였을 듯하다 하노라. 혹자는 말하되, “만약 일본이 조선 왕위의 폐립을 단행하였으면 국제간의 문제를 야기하여 비위(非違)¹⁵⁵⁾의 책임을 면치 못하였을지니, 민비사건이 물의를 초래함을 보더라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며, 또는 말하되, “궁중에 심거한 국왕이 무슨 일을 알리오. 오직 군소(群小)에게 혼혹되는 바이니, 궁금(宮禁)을 숙청함은 가하거니와, 국왕을 폐립하여 민정을 시끄럽게 함이 어찌 가하리오?”

153) 혼백(魂魄)과 간담(肝膽). 넋과 속마음을 뜻함.

154) 범과 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봄. 큰 뜻을 품고 형세를 살려 기회를 노린다는 의미.

155) 법에 어긋나는 일. 잘못을 뜻함.

하나, 이 또한 그렇지 않으니, 왕위를 폐립함도 내정 간섭의 일부라. 조선의 내정을 간섭 함을 인식한 열국이 특히 왕위 폐립에 한하여 국제 문제를 야기할 이유가 어찌 있으리 오. 일청전쟁 이전부터 외교의 실권은 국왕의 손에 있으니, 군소(群小)를 부렸다 함은 가 하거니와 군소에게 혼혹되었다 함은 불가하니, 외교의 실권을 장악한 국왕을 폐하지 않고 궁금(宮禁)을 숙청한다 함은 더러워진 원인을 막지 않고 흐르는 물을 막게 하고자 함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이노우에(井上) 공사가 일본유신의 원훈(元勳)¹⁵⁶⁾으로 조선에 내임(來任)하여 대결심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단행하고자 하여, 먼저 궁금을 숙청케 하였더니, 하루는 국왕(李太王)¹⁵⁷⁾께 진알(進謁)하였는데, 국왕이 몸소 약기(藥器)를 가져와서 약을 마시는 지라. 무엇 때문에 폐하께서 친히 약기를 가져 오시는가 하고 물었더니, 답하기를 궁금을 숙청하여 시신(侍臣)¹⁵⁸⁾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친히 가져 오노라 하므로, 공관에 돌아가 직접 집정대신을 초대하여 궁금을 숙청케 함은 군소의 출입을 금하라 함이요, 시신까지 감액하라 함은 아니니, 시신은 전과 마찬가지로 거행케 하라 하여 궁금 숙청은 유명무실하였다 하니, 아무리 궁금을 숙청하였던들 시신이 부족할 이유가 있으리오. 고의로 시신을 물리쳐 두고 얇은 꾀를 사용하여 다시 군소를 가깝게 함이니, 이노우에(井上) 공사야 어찌 일국의 군왕으로 이와 같은 소도세공(小刀細工)을 가지고 희롱할 줄 알았으리오. 이는 하나의 사소한 일이거니와 기타 외교의 훌계사모(譎計詐謀)¹⁵⁹⁾로 역대 공사와 통감을 농락한 것은 가히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할지니,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이 여러 번 실패한 것은 이태왕(李太王)의 외교의 훌계(譎計)와 사모(詐謀)에 빠진 것이 최대의 원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그러나 이태왕(李太王)이 외교술책을 희롱함에도 일본의 진의를 믿지 아니함에서 나온 것이니, 믿지 않는 주권자 아래에서 개혁을 도모코자 하면 어찌 가히 이루겠는가. 하물며 전제군권주의(專制君權主義)가 일반을 지배할 때이리오. 왕위의 폐립을 행치 않고는 개혁의 사업을 행치 못 할 것은 많은 말이 필요치 않으니, 연산(燕山)과 광해(光海)의 구사(舊事)도 있거든, 왕대비를 받아들이 발을 내리고 교지를 내리게 하여 실덕(失德)한 왕을 폐하고 종실 중에 현량한 군주를 택하여 세우면 어찌 불가함이 있었으리오. 민비의 사건과 같이 이태왕이 왕위에 있었으므로 다소의 소동을 본 것이니, 만약 폐립을 단행하여 민중이 향배할 길을

156) 나라를 위하여 가장 유품이 되는 공. 또는 그런 일을 하여 임금이 아끼고 믿어 가까이 하는 늙은 신하를 말함.

157) 고종을 뜻함.

158) 임금을 가까이서 섬기는 신하를 뜻함.

159) 남을 속이려는 잔꾀와 모략.

보였다면 차라리 환호하였을지언정, 거역한 자는 없었을 것이라. 하물며 민심이 이반한지 이미 오래니 그렇다면 일본의 힘에 의하여 왕위에 즉위한 왕은 일본을 신뢰하여 다른 생각이 없을 것이오. 따라서 추대한 신료를 신임하여 교체하지 않을 것은 은감(殷鑑)이 멀지 아니하여¹⁶⁰⁾ 중종과 인조의 대에 있도다. 위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는 신료에 이르기까지 함께 일본을 신뢰하고 개혁당이 정권을 잡아 사대당의 혼적을 근절케 하면 자연히 개혁당의 세력이 팽창하고 공고해져 정치의 개혁과 시설은 일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 없었을 것이요, 외국이 가히 엿볼 틈이 없었을 것이라. 어찌 일러(日露)의 개전(開戰)인들 있었겠으며, 또는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의 관계가 어찌 오늘과 같으리오.

그러한대 일본의 담당자는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민심의 이반함이 이미 오래된 국왕을 중심으로 하고 소수의 무세력(無勢力), 무근저(無根柢)한 개혁당으로 하여금 폐해가 쌓이고 문란이 극한 정국을 요리케 하고자 하였으니, 어찌 능히 실패함을 면하겠는가. 하물며 충용한 일본 군대로 하여금 인민의 원부(怨府)¹⁶¹⁾인 귀족계급의 응견(鷹犬)¹⁶²⁾이 되게 하여 관리의 탐학을 불감(不堪)하여 봉기한 동학당을 토벌하는 데 충당하여 무고한 민중을 살육하였으니, 어찌 죄악이 충만한 귀족계급을 대신하여 일반 민중이 증오, 저주하는 적(的)이 되지 아니하며, 살육된 민중의 자손에게 원수(怨讐)로 보임을 피하겠는가. 이 때문에 일본이 조선의 내정개혁을 조력한 것이 몇 해를 지나지 못하여 지방에는 의병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어, 일반 민중이 일본을 적시하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중앙에는 개혁당이 쇠잔해 버려 한때 친일파로 지목되는 사람으면 역적의 누명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없었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하여 신설한 제도는 매관매직의 기구에는 우스운 일도 연출하였으니, 매일 관(官)에 수십 명씩 임면을 발표한 중추원 의관과 같은 것이 즉 그 일례라. 이와 같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은 완전히 실패에 이르러 조선의 독립을 부식코자 하던 일본의 성의(聖意)는 알지 못할지라. 천지신명이나 알지 조선인은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거액의 군비와 수만의 생명을 희생하고 청국과 전쟁을 하여 조선의 독립을 부식코자 하던 일본의 미의(美意)로 하여금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성취케 한 것이 어찌 천추의 한스러운 일이 아니리오. 당시 일본의 위정자는 구천(九泉) 아래에서도 오히려 그 책임을 느끼리라 하노라.

〈이상 (1)〉

160) 은감불원(殷鑑不遠). 은나라 왕이 겨울삼을 만한 것은 먼 데 있지 않다는 뜻으로, 본받을 만한 전례(前例)가 가까이 있음을 의미함.

161) 대중 원한의 대상이 되는 단체, 기관을 뜻함.

162) 사냥 때 부리는 매와 개, 주구(走狗)와 같은 뜻.

3. 10년 독립의 조선

일본의 조선 독립을 부식하고자 하던 사업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하여간 조선은 일본의 덕으로, 허명(虛名)을 지키는 데 지나지 못하였지만은, 10년간을 독립국으로 국제적 지위를 점함에 이르렀다. 시모노세키조약(馬關條約)을 체결하기 전까지 독립의 명실을 갖추지 못하였던 조선은 어제까지 신하로 불리고 복종하던 청국에 대하여 대등한 교제로 서로 공사(公使)를 주차(駐劄)한 것을 위시하여 일본 및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열강에도 상호 공사를 주차하여 외교 관계를 개시하고 다수의 조약을 체결하여 엄연히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와 동시에, 비록 부패한 내정은 개혁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구미의 문물과 사조(思潮)를 수입하여 조선 민족으로 하여금 정신과 물질의 양 방면에 걸쳐 막대한 자극과 충동을 받게 하여, 세계의 대세를 조금 이해하기에 이름과 함께, 자국의 쇠약함을 우려하는 염려가 일반에 충일하여 애국사상이 거의 보편적으로 고취되고 주입되었고, 격변한 조선 민족의 사조는 어제의 완고(頑固)가 아니었도다. 물질적 방면으로는 큰 것은 전신, 전화, 우편을 사용하게 되었고 기선, 기차, 전차, 자전차를 타게 되었고, 작은 것은 성냥, 석유 등으로부터 면포, 도기 등에 이르기까지 일용의 물품, 기구를 각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는 것이 없어, 일상생활에 변화를 불러오게 하였다. 정신적 방면으로는 천주교와 예수교를 자유로 신앙하게 된 것이 유교를 국교와 같이 승상하여 유교 특히 정주(程朱)의 학(學)이 아니면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이단이라 하여 배척, 금압(禁壓)하던 악풍을 타파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신자는 귀로는 선교사가 말하는 구미의 사물에 관한 담화를 듣고, 눈으로는 선교사가 번역한 구미의 역사자리, 기타 제반 문화에 관한 서적을 열람할 수 있어 미개몽昧(未開蒙昧)로부터 문명진화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일본인으로서 내왕하는 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조선인으로서 일본을 관광, 유학하는 자 또한 많아져 직접 일본의 유신(維新)한 제도, 문물을 첨도(瞻睹), 학습하였으므로 쇄국수구(鎖國守舊)의 주장을 배제하고 개국진취의 방책을 취함이 아니면 능히 열강의 틈에 끼어들어 자존(自存)을 도모치 못하겠다는 관념이 상하를 풍미함에 이르렀으니, 일청전쟁의 후로부터 일러전쟁의 전에 이르는 10년 동안 조선 민족의 생활과 사상 방면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것은 실로 상상 외였도다.

갑오경장(甲午更張)에 의하여 창설되었던 독립협회(獨立協會)는 즉 조선에 있는 자유 민권을 부르짖는 제일성(第一聲)이라. 일본의 조선 독립을 부식하고자 하던 정책이 실패에 귀착함에 따라 이조(李朝)의 왕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관료 약당은 이 조선 민족을

소생시킬 짜을 티우는 독립협회를 박멸하기 위하여 소위 황국협회(皇國協會)라는 명칭 하에서 보부상의 무뢰배를 모집하여 곤봉의 난타 아래 우국지사의 피를 흘리게 하고 기어이 독립협회로 하여금 해산하지 않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나 독립협회라는 단체는 표면으로 그 형식을 잃었을 뿐이요, 독립이라는 사상은 내용이 견고하여 뿌리를 뽑아낼 수 없어서 고취되고 전파되었으니, 서재필(徐載弼) 씨가 창간하였던 『독립신문(獨立新聞)』의 뒤를 이어 발간된 『제국신문(帝國新聞)』, 『황성신문(皇城新聞)』과 같은 것은, 즉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선전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겠도다. 그 때에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을 주재하고 또 집필하는 자는 대개 신공기를 흡수하고 진보의 사상을 가진 민간유지이므로, 한편으로는 자유민권을 고조하여 관료의 횡포를 공격하고 내정의 개혁을 역설하는 동시에, 독립불기(獨立不羈)¹⁶³⁾의 정신으로써 자강자립을 도모치 아니함이 불가함을 통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열국의 신구(新舊) 사정을 빠지지 않고 번역 계재하여 세계의 대세를 보도하는 동시에 폴란드(波蘭), 이집트(埃及)와 같은 국가가 쇠망한 연유와 인도, 베트남(安南)과 같은 민족이 패잔한 관계를 서술하여 그 복철(覆轍)을 밟지 않음이 옳음을 경고함에 게으르지 않았으니, 조선 민족으로 하여금 국가가 무엇이며 민족이 무엇인지, 문명이 무엇이며 야만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이며 법률이 무엇인지, 군주가 무엇이며 민주가 무엇인지, 전제정치가 무엇이며 입헌정치가 무엇인지, 군주입헌이 무엇이며 공화입헌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한 것은 신문지의 힘을 빌지 아니함이 없도다. 신교육을 받지 못한 조선인으로 하여금 세계사조에 접근케 하고 문명풍조에 감염케 함에는 사회교육의 일종인 신문지와 함께 잡지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제국신문』, 『황성신문』과 함께 일본인이 경영하던 『한성신보(漢城新報)』가 우리 조선 민족의 향상과 진보에 공헌한 것이 다대한 것을 추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도다. 따라서 구미 선교사의 종교적 방면으로 문화의 선전을 행함과 민간 유지(有志)의 베트남망국사(安南亡國史), 폴란드망국사(波蘭亡國史), 메이지유신사(明治維新史), 중동전기(中東戰紀), 무술정변기(戊戌政變記),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 등 다수의 서적을 저술하거나 번역하여 국가가 장차 망할 것과 민족이 점차 쇠할 것을 상하에 각성시키고 거의 기울어진 대하(大廈)를 나무 하나로써 지탱하고자 한 것이 얼마나 사상계에 이익을 준 것인지를 잊음 또한 옳지 않도다.

그리고 유지의 청년이 동(東)으로 일본에 건너가거나 멀리 구미로 가서 신교육을 받으며 신공기를 흡입하여 유학의 목적을 달성하고, 귀국하여 정치의 개혁과 인문의 진운

163) 독립하여 남에게 속박되지 아니함.

에 힘을 다한 공(功)도 또한 몰각(沒却)지 못하겠도다.

그리므로 민간의 유지는 그와 같이 국가가 장차 망함을 우려하고 민족이 점차 쇠퇴함을 걱정하여 자강의 방책을 강구치 아니하고 자진(自振)의 도(道)를 연구치 않으면 안된다고 절규하며, 외교의 쇄신과 내정의 개혁이 급무 중의 급무임을 질호(疾呼)¹⁶⁴⁾함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는 의연히 혼몽(昏夢) 중에서 일신의 안전과 지위의 공고를 도모함에 급급할 뿐이오. 안중에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어 매관매직과 가렴주구가 날로 더욱 심해지고 오직 오랑캐(夷)로써 오랑캐를 제압하며, 대(大)를 택하여 복사(服事)¹⁶⁵⁾하는 술수로써 외교의 진체(眞諦)¹⁶⁶⁾로 하여 내정의 문란은 극에 달하고 외모(外侮)가 날로 극에 이름을 방어할 책(策)이 없어 마침내 퇴세(頽勢)를 만회치 못하고 마지막에 이집트(埃及)와 폴란드(波蘭)의 복철(覆轍)을 다시 밟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그 죄가 위정자에게 있지 않다 하면 과연 누구에게 있겠는가. 10년의 세월은 짧은 것이 아니라 10년 생취(生聚)¹⁶⁷⁾하고 10년 교훈하면 패망한 월국(越國)도 부흥하는데, 하물며 10년 만방리의 강토와 1천 7백만 인구의 민중을 가진 국가로 10년간 불휴불식(不休不息)¹⁶⁸⁾하고 혁구정신(革舊鼎新)¹⁶⁹⁾하였으면, 어찌 면목을 일신함을 얻지 못하며 자강자존의 기초를 열지 못하였으리오. 예를 들어 메이지유신사(明治維新史)를 볼지어다. 10년간에 유신의 기초를 확립지 아니하였는가. 메이지대제(明治大帝)의 5개조의 서문(誓文)에 무궁의 비기(丕基)¹⁷⁰⁾를 열지 아니하였는가. 10년간 독립의 미명을 보존하면서 능히 자립의 책을 수립치 못하고 쇠망을 면치 못한 이조정부의 말로(末路)는 군주전제정치의 국가와 민족에 끼치는 해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일대 표본이 되겠도다.

혹자는 말하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은 메이지대제의 성단(聖斷)과 어마어마한 계획에 연유함은 물론이지만은 위정 당국에 임한 신료의 보익(補翼)¹⁷¹⁾과 일반 민중의 협력에 의하지 않음이 아니니, 덕천막부(徳川幕府)로 하여금 대정(大政)을 봉환케 하고 각 번주(藩主)로 하여금 영지(領地)를 반납케 함을 위시하여 내정의 개혁을 단행함과 입헌정체의 대책을 수립한 것이 당국 신료의 대국(大局)을 달관함과 일반 민중의 자유민권을

164) 소리 질러 급히 부른다는 뜻으로 질타와 같은 말.

165) 복종하여 섬김을 뜻함.

166) 변치 않는 진리라는 뜻.

167) 백성을 길러 군대를 들통히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함.

168) 조금도 쉬지 않음을 뜻함.

169) 낡은 것을 혁신하고 새로 고침을 뜻함.

170) 제왕의 기초적 업적을 뜻함.

171) 도와서 좋은 데로 인도함을 뜻함.

창도함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다. 조선으로 말할지라도 독립의 명(名)을 얻은 10년간에 일반 민중이 사력을 다하여 내정의 개혁을 도모하였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 아니니, 쇠망한 책임은 단순히 위정자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일반 민중이 그 책임을 분담함이 옳다” 하나, 이는 그 때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말이라 족히 취할 것이 없도다. 조선민중의 개혁을 갈망함이야 어찌 일본 민중에 뒤떨어지리오. 일청전쟁을 도발한 동학당의 난은 이를 동학당의 난이라 칭함이 불가하고 조선 민중의 혁명운동이라 함이 가할 것이라. 정치를 개혁할 목적으로 일어났던 민중운동이었으니, 만약 그 운동이 공을 이뤘을 것 같으면 조선은 개혁의 실적을 거둠이 이미 오래되어 독립의 허명을 지킨 10년간에는 국면을 일전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라. 그러한데 이 민중운동은 일청 양국의 쟁단(爭端)에 희생이 되어, 다만 열혈이 들끓어 맨손으로 일어났던 민중은 정예가 비할 데 없이 뛰어난 일본군대에 토벌을 당하여 모조리 섬멸되고 말았다. 그 후에도 명칭을 의병으로 바꾸고 일어난 하다한 운동이 개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나, 이들 운동도 역시 일본의 군대와 정부의 군대의 토벌에 패산한 바 되어 큰 뜻이 있고, 용기가 있고, 결심이 있고, 성의가 있는 민간의 지사는 모두 칼날 아래 원혼(冤魂)이 되지 않으면 옥중에서 나귀(厲鬼)가 되었고 근근이 생명을 보존한 자는 해외에 도피하여 겨우 목숨을 보존함에 이르렀다. 자국 정부의 힘에 의하지 않고 외국군대의 손을 빌어 민중운동을 박멸한 것은 조선 이외에는 다시 없을 것이로다. 같은 민족 간의 쟁투는 비록 서로 피를 흘릴지라도 원망을 풀기 쉽고 또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측은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으나, 이민족의 손을 빌림에는 후고(後顧)¹⁷²⁾가 없이 잔학함이 극에 달함은 역사가 이를 증명하는 바이라. 그러므로 어떠한 민중운동을 불문하고 외국의 군대를 빌어 이를 토벌함에는 능히 저항하여 성공한 자가 없으니, 본보기가 폴란드(波蘭)에 있지 않은가. 하물며 극히 가난하고 나약한 조선의 민중운동이 극히 강하고 용감한 일본군대의 토벌을 피함이리오. 이와 같이 조선에서 일어난 민중운동은 일어날 때마다 의외의 박멸을 당하여 재기할 힘이 없는 치명상을 입고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 조선의 민중이 어찌 국가의 장망(將亡)과 민족의 점쇠(漸衰)함을 좌시한 자이리오. 민중운동은 비록 실패를 중복하였으나 잔존한 민간의 지사는 오히려 자유가 없는 언론기관과 저작사업에 의하여 상하를 각성케 하고자 하였으니, 조선민중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심하고 노력한 것은 적다고 말하지 못하겠도다.

그러한데 일국의 주권자는 오직 일신과 제위의 안전을 꾀할 뿐이요, 텔끝만큼도 국가

172) 이미 지난 일을 못 잊고 그 뒤를 돌아보거나 살핌.

와 민족에 생각이 미치지 않아 쇠망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도다. 대원군과 민비가 봉조(崩殂)한 후로 대소의 정권을 장악한 주권자는 밖으로 일본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 뿐 아니라, 안으로 신료에 대하여도 신임치 않고 다만 권모(權謀)를 외교와 어하(御下)¹⁷³⁾의 중요한 방도로 인식하여 대소의 정권을 신료에게 맡기지 않고 독단전행(獨斷專行)하여, 의(意)를 따르지 않고 뜻을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기숙(耆宿)¹⁷⁴⁾과 원로(元老)라도 멀리하고 임용치 않았다. 친근 중용하는 자는 오직 미천(微賤)한 출신으로 경력과 학식이 없는 무리들이었으니, 이는 구차히 독립의 이름을 지킨 10년간에 있는 궁정(宮廷)의 사(事)를 아는 자면 역력히 기억할 바이라 더 말할 필요가 없도다. 그러나 의정대신 이하로 각 부의 속료와 지방의 관리까지 임면 출척(黜陟)¹⁷⁵⁾을 하나도 간섭치 않은 것이 없어 소위 위정 당국을 담당했다는 대신 이하가 모두 시위소찬(尸位素餐)¹⁷⁶⁾에 불과하고 행정과 사법, 외교와 내치를 불문하고 하나라도 주권자의 뜻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한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심지어 차합참봉(借銜參奉)과 차합주사(借銜主事) 까지라도 서하(書下)¹⁷⁷⁾치 않은 것이 없는 것은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리오 하는 의문을 품는 자도 있을 터이나, 그것이 사실임에 어찌하리오. 그뿐 아니라 백동화(白銅貨)의 남발과 사주(私鑄) 백동화가 아무 장애 없이 통용되므로 인하여 재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고 국고가 고갈되어 군경과 관리의 봉급을 지불치 못하는 궁경(窮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중에서는 날로 유희연악을 베풀었다. 멀리 평양, 진주, 선천 등 지방으로부터 관기를 불러 올린 것이 그 수가 백여 명에 달하고, 평양병대라 칭하는 군병의 중에서 속요와 잡가에 능한 자를 선발하여 이름을 가무하사(歌舞下士)라 명하였다. 기타 영남의 배우 등을 불러 올려 사죽(糸竹)¹⁷⁸⁾의 음과 갈고(鞨鼓)¹⁷⁹⁾의 소리에 정위(鄭衛)의 음풍¹⁸⁰⁾보다 더 심한 음란 추악한 가곡을 창화(唱和)¹⁸¹⁾하여 장(答)으로 고(膏)를 계(繼)¹⁸²⁾하고, 상사(賞賜)¹⁸³⁾가 무한하여 이에 드는 금전의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 또는

173) 아래 사람을 다름.

174) 덕망과 경험이 많은 나이 든 사람.

175) 등용과 추출을 말함.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옮겨서 씀.

176) 공적도 없이 높은 자리에 앉아 녹만 받는다는 뜻으로, 자기 직책을 다하지 않음을 일컬음.

177) 임금이 벼슬시킬 사람 명단을 친히 적어 내리는 일을 뜻함.

178) 관현(管絃)과 같은 뜻.

179) 장구를 뜻함.

180) 중국 춘추시대 때 정(鄭)나라와 위(衛)나라를 말하는데, 그 나라의 음악이 음란하여 인심을 어지럽게 한 것에서 유래한 말. 음란하여 나라를 망치는 음악이라는 의미이다.

181)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름.

182) 분고계고(焚膏繼咎)의 고사성어를 비유한 말. 기름을 태워 밤을 새고 낮까지 몰두하여 해아릴

무격(巫覡)¹⁸⁴⁾ · 점쟁이 등의 말을 미신(迷信)하여 기도축귀(祈禱逐鬼)에 드는 금전도 역시 그 액수가 적지 않으니, 평양에 이궁(離宮)을 조성하여 양서(兩西) 인민의 고혈을 짜내게 한 것도 점쟁이 말을 믿고 무익한 토목의 역(役)을 행한 것이라. 이러한 세세한 것 이야 어찌 일일이 거론할 겨를이 있으리오. 오직 황음(荒淫)¹⁸⁵⁾의 용도에 쓰이는 금전은 다수가 매관매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차함참봉과 차함주사의 한 자리라도 이와 관련하여 알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바로다. 그런 사이에도 일신의 평안과 태평을 도모하는 생각은 단절한 때가 없어 가까운 자를 시켜 독일의 조차지(租借地)인 청도(青島)에 가옥을 매입하고 만일에 큰 일이 있는 때면 몸을 숨길 방책을 꾀한 일도 있으니, 이를 보면 모두 종사(宗社)를 보존치 못할 자각에서 만사의 출발점을 생각하였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도다. 위에서 호(好)하는 자가 있으면 아래에는 반드시 심(甚)한 자가 있음은 고금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정권을 총람한 궁중이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부중도 역시 그러하여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관아는 공개된 도박장이 되지 않은 곳이 없으며, 금(金)을 헌납하고 방백과 수령이 된 자는 현납한 바의 금액을 인민에게 주구(誅求)함에 그 배로써 하고자 하므로 정령사송(政令詞訟)이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치 않은 것이 없었으니, 유사 아래로 내정의 부패문란은 독립 10년간의 조선보다 심할 것이 없을 것이로다.

조선의 내정이 이와 같이 부패문란한 것이 극에 달하여 독립의 이름을 얻지 못하였을 때보다도 더욱 심한 것은 오로지 조선의 주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은, 조선으로 하여금 독립의 이름을 얻게 하고 독립을 부식코자 하던 사업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한 일본의 위정자에게도 역시 책임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도다. 아관파천(俄館播遷) 사변이 일어난 아래 조선의 독립을 부식코자 하던 사업이 모두 실패의 마지막을 고한 후, 조선에 주창한 일본의 대표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내치외교에 대하여 전혀 수수방관할 뿐 아니라 러시아를 위시하여 기타 열강의 이권획득과 조약체결이 일본에 불이익한 영향을 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임하지 않을 수 없어 세력의 실추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다만 그 사이에서 이익의 균점을 도모함에 급급한 데 지나지 않았으니, 한러협약과 한미협약이 체결된 것과 경성의 전차 및 수도의 부설권과 장백산 삼림채벌권 등의 이권을 미국인과 러시아인에게 양도하게 된 것과 운산금광(雲山金礦)과 수

줄 몰라 망측한 지경에 이르고도 뉘우침이 없는 상태를 뜻함.

183) 칭찬하고 상품을 준다는 뜻.

184) 무당(여자무당)과 박수(남자무당)를 말함.

185) 함부로 음탕한 짓을 함.

안금광(遂安金鑛) 등을 외인의 손에 맡기게 된 것 등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하물며 당당한 일본제국의 대표자로서 한 여자인 배정자(裴貞子)의 괴이한 수완에 의하여 한국 궁정과의 연락을 보위했던 일을 회고할지면 그 곤궁한 상태가 어떠한가를 엿보는 데 충분치 아니한가. 정치상 방면으로는 일본의 세력이 이와 같이 위미(萎靡) 부진하였으나 조선에 재류한 일본인은 전승(戰勝)의 남은 위세를 타고 조선인을 경멸할 뿐 아니라 조선의 내정이 부패하고 조선인의 민도가 유치함을 기화로 하여 불법부정의 수단으로 사리사익을 도모함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일본의 관현도 이를 비호 조장하여 일반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인을 측목질시(側目嫉視)¹⁸⁶⁾하는 원인을 만들었으니, 10년간에 있는 일본인의 비행과 불법을 지적코자 할진대 이를 다 기록치 못할지라. 지금 필자의 벗인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군이 저술한 『선만(鮮滿)의 경영(經營)』에 「일한협약 전에 있던 우리 동포의 태도」란 제목의 글 아래의 일절을 번역 게재하여 그 일단을 제시하고자 하노라.

일청전역 전에 조선 내에 재주하는 우리 동포는 왜노(倭奴)라고 불림을 받아 청인에게 경멸을 당했을 뿐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또한 능멸을 받았고 조약상에 명기된 바와 같이 거류지 삼리 외에는 전토를 소유하기 불가능하고 거주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사위의 압박을 받고 무세무력한 경우에 처하였도다. 이로써 우리 동포의 은인(隱忍)¹⁸⁷⁾적 울굴(鬱屈)¹⁸⁸⁾은 청국에 대한 우리군의 승리에 의하여 일시에 발발하여 혹 어떤 부류의 동포는 조선인에게 불손한 언어로 희롱하고 횡포한 태도를 보여 마치 정복자의 행함과 같은지라. 선주자(先住者)가 그러하므로 새로 온 동포는 하나도 조선어를 해석치 못하고 하나도 조선인의 풍속, 습관을 알지 못하여 모두 한 모양의 흰 옷 입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선주자의 하는 바를 배워 귀천을 논하지 않고 노유(老幼)를 불문하고 남녀의 유별함을 생각지 않으니, 부모가 하는 바를 아이가 또한 모방하여 우리 정책상의 방해가 되고 번거로운 근심이 된 것을 일일이 들기 어렵도다. 모두 전승(戰勝)의 여위(餘威)를 가지고 그 국민이 왕왕 교만 불손한 태도를 보임은 고래(古來) 전승국민의 통폐(通弊)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드시 관용하기 어려운 바는 아니라. 이런 까닭으로 우리는 우리 일부의 동포에 의하여 행한 과거의 죄악을 지적하고 서술하여 기억을 새롭게 함은 덕의(德義)가 아님을 관념치 아니함이 아니나, 과거를 알지 못하면 현재를 자세히 알기 어렵고 현재를 자세히 알기 어려우면 장래를 점치기 어려운지라. 이에 있어서 국가를 위하여

186) 결눈질하고 흘겨봄.

187)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감추어 참고 견딤.

188) 가슴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울적함을 뜻함.

참기 어려움을 참고 두세 가지의 사실을 아래에 제시하노라.

저명한 개성인삼은 국금물(國禁物)이라 하여 민간에서 매매함을 허락치 아니하는 것이라. 그런데 해당 삼포(蔴圃)의 주인 조선인이 청상(淸商)과 밀매를 행함에 그 이익이 막대함을 보고 탐이 나서 조치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일청전역 후 청상이 물러나자 무력무세(無力無勢)케 된 것을 기화로 삼아 목마른 자가 물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 동포 중에 거처를 개성에 짓는 자도 있고 사람을 보내는 자도 있고 혹은 몸소 출동하는 자도 있어, 불량선인을 사용하여 삼포주(蔴圃主)를 유혹하였다. 이들은 계약상 명의(名義)를 다른 조선인으로 하였다가 일이 발각됨에 이르면 책임을 계약상 서명인에게 전가함이 좋지 않느냐는 일본인의 거짓말을 신용하여 생삼의 매매와 삼포의 매매를 약속하였다. 이때 근소한 약간의 금을 교부하고 대가의 전부는 지불치 아니하고도, 사단(事端)을 우려하여 다수의 장정을 보내 야밤을 틈타 비수(匕首)를 들이대면서 강탈적으로 목적물인 인삼을 채취하여 몰래 일본인 거류 경내로 운반하였다. 이 인삼을 홍삼으로 제조하고 다른 화물과 같이 포장하여 밀수출을 행하여 일획에 기만금의 이익을 쟁기는 일이 성취되면 삼포주의 미혹(迷惑)과 같은 것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 되고 통양상관(痛痒相關)¹⁸⁹⁾하지 아니하였다. 소자본자에 이르러서는 소자본자의 계(計)가 자유하여 불량선인(不良鮮人)에게 약간의 식대를 급여하고 각 삼포에 왕래하며 몰래 채취를 자행케 하여 취집(聚集)한 인삼을 일괄해 홍삼의 제조를 몸소 행하거나 바로 이를 매각하여 큰 이익을 취하였다. 또한 전혀 자본이 없는 자는 노상의 조선인을 납치하여 누구의 삼포임을 불문하고 매매증서를 작성케 한 후 해당 삼포에 출장하여 그 소유자가 캐물으면 우리가 이를 샀다고 하고 혹은 완력(腕力)을 발휘하여 격투를 도발하고 그들의 혼잡과 낭패를 틈타 끌고 간 공모자로 하여금 가장 신속히 해당 인삼을 채취케 한 후 허총(虛銃)을 발사하면서 유연히 퇴각하여 그 소재를 숨기기도 하였다. 혹은 조선인 경관에게 다소 뇌물을 주고 미리 공모하여 밀매자로 하여금 다수의 인삼을 가져 오게 하고 현품 인도 시에 경관으로 하여금 불의에 현장에 잠입케 하여 그 매주를 도주케 한 후 경관에게는 약간의 보수금을 주고 대부분은 자기의 이익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부정횡포의 실상은 필지(筆紙)로 능히 다 쓰지 못할 바이라. 우리 동포 가운데서도 특히 경성, 인천에 있는 재주자의 어떤 계급은 인삼시기라 칭하여 가을로부터 다음해 1, 2월에 이르기까지 이 불량부정의 행위를 일종의 사업으로 사유하였고, 조선 정부가 우리 해당 관헌에게 알려 주기 위해 조회하여 단속을 요구하여 우리 관헌이 매년 이 시기에 이르면 경찰관을 증파

189) 아픔과 가려움도 서로 관계한다는 뜻으로, 자신에게 바로 관계되는 이해를 가진다는 비유로 쓰임.

(增派)하였다. 그러나 완전하게 취체의 성과를 거두기는 불가능하였으며, 도리어 거류민은 인삼취체의 장려는 거류지의 번영을 적막(寂寢)케 하고 재주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끝내 군대를 배치하고 도채자(盜採者)에게 발포, 위협하여 우리 동포와의 사이에 유혈의 참사를 연출함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였다.

금전의 대차(貸借)와 토지가옥의 매매에 대하여는 어떠하였는가. 외면을 치장하고 형식을 중히 여기는 조선인은 당초에 금전의 대차를 조선인 간에서 행함을 치욕이라 하여 많은 청인에게 모의하거나, 혹은 일본인에게 의뢰함이 예이라. 이에 대하여 혹 어떤 부류의 현주자(在住者)는 법외의 금리 외에 따로 수수료를 탐하여 증서면(證書面)의 금액은 거액이지만은, 현금의 수수는 차주(借主)가 근근이 10분의 6을 수령함에 불과하고 심하면 5분의 5분이 되며 그 이하의 것도 있으며, 기일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증서의 개표수수료로 또는 이자로 그 금액을 증액케 하였다. 채무자가 쉽게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면 대주(貸主)는 미리 소송이 자기에게 이롭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혹은 채무자를 초치(招致)하여 감금하듯이 억류하며, 혹은 완력이 있고 언변이 좋은 대리인을 채무자의 집으로 보내 대금의 변제를 받아내기까지 날짜를 세지 않고 체류하면서 강박 재촉하여 무한히 폭언과 능멸과 위압을 자행하였다. 그래도 남자의 출입이 불가한 내방에 돌입하여 부녀를 공포케 함을 관용(慣用)수단으로 하여 조선인의 약점을 틈타 금전 대차상에 부정한 행위를 자행하였도다.

또는 대주가 금전 대차상 저당으로 제공케 한 가옥이 유리하겠다고 판단하면, 다시 가경할 수단을 사용함이 일반이었으니, 쌍방 간에 기일을 약속한 후 채무자가 금전을 휴대하고 변상하기 위하여 약속한 기일에 대주를 방문하면 부재하다 칭하여 면회를 사절하고, 그 익일에 방문하면 그 대주는 말하되 기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니, 당신의 가옥은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하고 그 저당한 가옥에 방을 부치되, ‘일본인 모(某) 소유’라 하는지라. 차주는 악연(愕然)하여 재삼교섭하면 대주는 말하되, 당신의 가옥은 우리의 소유가 되었으니 당신의 소유가 아니며 우리에게 명증이 있으니 당신이 만약 그 집에 살고자 할지면 우리가 상당한 가격으로 당신에게 매각하겠다 하고 그 가격을 물으면 당시 가격에 10배를 부르고 만약 매각치 아니하면 가옥의 명도(明渡)¹⁹¹⁾를 강요하였다. 만약 명도를 이행치 아니하면 문 안에는 현 소유주가 주거하는데 문 밖을 못으로 봉쇄하여 출입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욕과 위협을 자행하여 내방에 돌입하며 부녀를 공포케 하는 등 그 행위의 신송(辛竦)¹⁹²⁾함이 한심하기 짝이 없도다. 당시

190) 악연(愕然)도 몹시 놀라는 모양을 뜻하고, 꾹경(喫驚)도 몹시 놀람을 뜻함.

191) 집을 비워 남에게 넘겨줄을 뜻함.

조선에는 가옥매매는 가권(家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가권을 가진 자는 가옥의 소유자가 되고 불완전한 사증서(私證書)로써 소유권을 이전하여 문기(文記)의 소유자는 전지(田地)의 소유자가 되었도다.

그러나 가권은 간수(間數)를 표시하고 그 면적은 사표(四標)라 칭하여, 예컨대 동은 모(某)의 집, 서는 모(某)의 밭, 남은 도로, 북은 하천이라 기재하고, 대지의 적획한 평수를 명시치 아니하여 극히 두찬(杜撰)¹⁹³⁾을 면치 못하므로 재류 일본인은 협약한 가옥을 매수하고 광대한 사면(四面)의 공지(空地)를 점유하여, 이는 예로부터 이 가옥에 부착한 기지(基地)라고 주장하며, 혹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요 그 소유자의 친족 되는 불량한 무리와 위조가권으로써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종종 악책(惡策) 간계(奸計)를 사용하여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는 자, 혹은 미리 일종의 계획(計劃)을 세워 모 지점에 일 가옥을 매수하고 부근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교통을 차단하거나, 혹은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행위를 자행하거나, 혹은 악수(惡水)를 흐르게 하거나, 혹은 엄중히 청결법을 운위하여 마침내 조선인으로 하여금 생활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그런 연후에 타인의 손을 빌어 이를 자기의 소유에 돌리게 하는 등 천차만별은 거의 일일이 지적치 못하겠도다.

부호의 자제를 유리(遊里)로 유인하여 환락에 도취하게끔 하고는 필요한 금액은 기만금이라도 대여하겠다 하고 감언으로써 그 자제로 하여금 부형(父兄)의 인장을 몰래 날인케 하여 토지가옥을 저당으로 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소계(少計)의 금액을 대부하였다. 허위인 증서면의 대금액을 부형에게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제를 증서위조범이라 하고 사기취재범이라 하여 위협함에 고소함으로써 하고, 금전을 수령치 못하면 토지가옥을 끊겨 자기의 소유로 함과 같은 일과 토지의 위조문기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수기(秋收期)에 이르러 관계한 조선인 불량배를 이끌고 현장에 출장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추수를 횡탈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격을 협정하여 토지의 매매를 계약하고 약간의 금액을 지불한 후, 금액은 교부치 아니하고 협잡불량한 조선인과 대동하여 말하되, 우리가 이 전토를 매입함은 일정한 수확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본년은 그 금액에 도달치 못하였다 하며, 혹은 말하되 우리가 처음에 이 토지를 매입할 때에 수해를 입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니 본년은 재해를 입어 예기(豫期)의 추수를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혹은 말하되 우리가 처음에 이 토지를 매입할 때에 관개(灌漑)의 결핍함을 알지 못하였더니 본년은 한발(旱魃)을 조우(遭遇)하여 예기의 추수를 보지 못하였다 하여 이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 하고 잔금 교부의 의무를 행치 아니할 뿐

192) 독하고 두려움을 뜻함.

193) 저술에 전거나 출처가 확실하지 않아 틀린 곳이 많음을 뜻함.

아니라 도리어 손해를 입었다 칭하고 증인이라고 대동한 조선인을 원용(援用)하여 사실을 미리 빈틈없이 자세하게 준비하고 광대한 토지를 자기의 소유로 돌리게 함과 같은 유출유추(愈出愈醜)¹⁹⁴⁾ 치 아니한가.

전계한 것 외에 고려자기의 가격이 귀중함을 생각하고는 그 절품(絕品)이 왕릉과 귀현(貴顯)의 묘에 많다 하여, 개성 방면의 왕릉을 발굴하고 묘혈을 파괴함과 같은 일과, 고화(古畫), 고불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산록에 있는 사찰에 들어가 승려를 속이고 약탈함과 같은 일과, 궁궐과 관아와 기타 문루(門樓) 위에 걸린 현판의 아치가 있는 편액을 약탈함과 같은 일과, 혹은 양반을 유인하여 몰래 도박을 개장하여 거대의 이익을 점함과 같은 일과, 혹은 위조 백동화를 사주 수입한 일과 같음과, 혹은 점토를 환약이라고 속이고 행상함과 같은 일은 그 행위가 방약무인(傍若無人)¹⁹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이하 생략)

상술한 바의 사실은 일본인으로서 가히 인정치 못할 것을 인정하고 적기(摘記)한 것이라. 진실로 한두 가지의 사실을 적발함에 지나지 못한 것이요, 조선 전도에 걸쳐 일본인의 능모협박(凌侮脅迫)과 사위기편(詐僞欺騙)¹⁹⁶⁾으로써 조선인의 재산을 탈취하여 부를 취한 자는 실로 천과 만으로도 능히 다 해아리지 못할지니, 현하 각 도회지에서 재계의 중심인물로 일반의 추앙을 받아 은행, 회사의 중역의 지위를 차지하고 또는 명예가 있는 공직을 차지한 일본인도 태반은 조선에 와서 졸부 된 사람이 아닌가. 구미인도 조선의 독립의 헌명을 지킨 10년간에 조선에서 부를 취한 자가 적지 아니하나, 구미인은 정부에 향하여 광업, 삼림, 전차부설권 등 이권을 획득하여 이익을 점하였고 일본인과 같이 능모협박(凌侮脅迫)과 사위기편(詐僞欺騙)의 부정수단으로 개인의 재산을 탈취치 아니하였다. 또한 포교하기 위하여 온 선교사와 같이 도리어 자국의 자금을 투자하여 의료기관인 병원을 설립하고 교육기관인 학교를 세우고 조선인의 질병을 구치하고 조선인의 자제를 훈도하였으니, 조선인의 일본인 보기를 원수와 같이 하고 구미인 보기를 활불(活佛)¹⁹⁷⁾과 같이 함이 어찌 인정의 도리가 아니리오. 일본인이 조선인 개인의 재산을 탈취한 것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구미인의 이권을 획득하여 큰 이익을 얻은 것에 비하면 구우일모(九牛一毛)¹⁹⁸⁾와 같을지니 똑같이 조선에서 재산을 취하고도 원망을 심고

194) 갈수록 더욱 과상해짐.

195)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196) 남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음을 뜻함.

197) 살아있는 부처라는 뜻.

은혜를 베풀에 소양(霄壤)¹⁹⁹⁾의 판단이 있음은 또 무엇 때문인가. 조선에 대한 정책에 오산이 많은 당시 일본 위정자의 책임이 큰 것을 느끼는 동시에 일본 민족의 금도(襟度)²⁰⁰⁾가 넓고 크지 못하고 오직 승두(蟬頭)의 이익을 죄움에 매두몰신(埋頭沒身)함을 한탄할 뿐이로다. 필자의 과문으로 일본인이 조선에 문명 사업을 행한 것이 별무함이 한스럽거니와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의 사업으로 평양과 기타에 일어학교를 설립하고 조선인의 자제에게 신교육을 교수한 일에 대하여는 특필대서하여 그 공적을 찬양코자 하노라. 그러나 평양일어학교와 같은 제1회의 졸업생이 세 명의 소수였으니 이를 보더라도 일본의 세력이 얼마나 부진한가와 조선인의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어떠한가를 가히 알아챌 수 있지 아니하겠는가.

요컨대 독립의 허명을 지킨 10년간의 조선은 내정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문란할 대로 문란하여 전제정치의 총유(總有)의 폐해와 죄악이 극단으로 파탄하고 철저히 밟아졌으니, 두렵건대 전 세계에서 구축되어 패멸의 운명에 빠진 전제정치의 말로인 도미(掉尾)²⁰¹⁾의 극(劇), 최종의 막을 조선에서 폐함과 같다. 그러나 시대라는 위대한 힘에 의하여 조선 민족도 세계문화에 추수(追隨)코자 하는 신정신이 발생되었으니, 10년간에 신학문을 수득(修得)하고 신지식을 흡수하고 신사상을 함양한 조선인은 어제의 오하아몽(吳下阿蒙)이 아니며 비록 구(舊)를 제거하고 신(新)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적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모두 영매한 기질과 초군(超群)의 정력과 비범한 재지(才智)를 구비한 인물이었으므로 자연히 조선 민족의 중심이 되어 지도하고 사배(司配)할 힘을 가지고 있었도다. 헌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여 악정의 억압을 받을 뿐이요, 아무런 자유를 갖지 못하고 아무런 권리를 향유치 못한 조선 민족이 문화의 향상을 구하고 생활의 진보를 도모함에 이름은 필연 시대의 사물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소수 선각자의 각성을 촉구한 힘이 많다 하겠도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어 일본의 대한정책은 근본적으로 실패로 그치어 정치적 세력은 실추무여(失墜無余)한 동시에 조선에 재주하는 일본인은 정치적 세력의 실추한 감정을 조선인에게 보복하고자 함과 같이 제반의 악행을 저질러 민족 간 구거(溝渠)²⁰²⁾를 구축할 원인을 만들었으니, 조선 민족이 일본을 신뢰코자 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찌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사연한 일이리오.

198) 아홉 마리 소 가운데 하나의 털이란 뜻으로,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뜻함.

199) 높은 하늘과 넓은 땅, 천지를 달리 이르는 말.

200)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을 뜻함.

201) 마지막, 끝판을 뜻함.

202) 도량이라는 뜻.

만약 일본의 위정자로 하여금 조선의 독립을 부식하고자 하던 정책이 실패한 것에 대하여 그 허물을 조선이 일본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돌리지 말고 반성한 바가 있어 비록 정치적으로는 세력이 실추하였다 할지라도 일본 민족 간의 실업가, 종교가와 기타 유지로 하여금 자본을 투자하여 조선의 민간 실업가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밀접할 방도를 강구하고, 혹은 교육, 의료, 자선 등 사업을 행하여 조선 민족의 호감을 얻게 하고, 또는 민간유지끼리 손을 잡고 도모를 같이하게 해서 만일의 경우 큰일이 있는 때에 양 민족으로 하여금 마음을 협력하고 힘을 쏟을 기반을 마련하였으면 전회(前回)에 실패한 것을 만회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그런데 이에 반하여 관민이 모두 전회의 실패한 과오를 조선에 돌려 조선인을 증오하고 능모(凌侮)함으로써 능사를 삼았으니, 일본인과 조선인 간에 날로 융화를 결여함이 어찌 당연한 결과가 아니리오. 그래서 다만 일본의 조선에 있는 세력이 날로 추락할 뿐 아니라 이미 만주에 군사상 근거지를 점거한 러시아의 손이 점차 노골적으로 조선에 뻗어와 일본 본국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므로 러시아에 대하여 교섭에 교섭을 거듭하였으나, 부조(不調)에 그치고 부득이하여 해결을 병력에 호소함에 이르렀으니 불식(不識)커니와, 러시아의 제국주의의 야심이 아무리 발발(勃勃)하다²⁰³⁾ 할지라도 일본 위정자의 취한 수단과 방침이 선하였으면 국가의 흥망을 거는 위험을 감행하는 일러전쟁을 개전치 아니하고서도 상당히 해결할 방책이 없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노라. 하물며 일러전쟁의 과거 참화를 추억하고 다시 이번 세계대전란을 도발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적화(赤化)하게 한 원인이 일러전쟁에 있음에 지금에 이르자 모골이 송연함을 스스로 금치 못하겠고, 따라서 전화의 참혹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가공한 것임을 놀라 각성치 아니치 못하겠도다.

〈이상 (2)〉

4. 일영동맹과 일러전쟁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책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일청전쟁에서 전승한 결과로 다소 부식(扶植)하였던 세력이 날로 쇠퇴함에 반하여 침략주의의 야심을 극동에 굳히고자 하는 러시아의 세력은 날로 증장(增長)하였다. 청국에 대하여는 영(英)·불(佛)과 강화(아편전쟁의 강화)에 알선한 보수로 흑룡강안(黑龍江岸)의 2천 7백리의 땅을 획득함을

203) 기운이나 기세가 끓어오를 듯이 성하다는 뜻.

위시하여 요동반도(遼東半島)의 할양에 간섭하여 환부케 한 보수로 이를 조차(租借)하였다. 그리하여 연래(年來의 숙원인 부동항(不凍港)을 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여 여순항(旅順港)을 해군의 근거로 삼고 동청철도(東清鐵道)의 부설권을 획득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聖彼得堡)와 교통할 도로를 열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극동도독부(極東都督府)를 설치하여 영구적 군사상 설비를 행하고 만주에 주둔한 군대(의화단사변(義和團事變)²⁰⁴⁾에 출병했던 것)의 철병할 기한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말(言)을 좌우에 탁(托)하여 이를 실행치 아니하고 점차 그 침략의 손을 조선에 뻗어 무산(茂山), 울릉도(鬱陵島) 및 장백산(長白山)의 삼림 채벌권을 획득하고 경성(京城)과 원산(元山) 간의 전신선을 서백리선(西伯利線)과 접속케 하여 이권과 통신의 편익을 점하였다. 또한 아관파천(俄館播遷)의 사변이 있는 아래로는 조선의 내정까지 간섭하여 군비외교와 같이 거의 그 뜻을 내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일본 군대의 복장을 모방하고 일본식의 교련을 행하던 것을 폐하여 러시아군대의 복장을 모방하고 러시아식의 교련을 행한 것과 같은 것은 즉 그 일례에 그친 것이라.

러시아는 피터(彼得, 표트르) 대제의 유훈을 지켜 세계를 정복코자 하는 야심을 굳히고자 함을 하루도 망각한 때가 없었으나 터키(土耳其)를 석권하여 파키스탄(波射)과 인도(印度)를 공격코자 하던 웅대한 계획은 영국이 터키에 재력과 무력의 원조를 아끼지 아니한 것에 의하여 수포로 돌아가고 발칸(巴爾幹) 반도를 다스려 중구(中歐)에 옹시(雄視)²⁰⁵⁾코자 하는 기획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삼국동맹²⁰⁶⁾의 체주(掣肘)²⁰⁷⁾를 받아 역시 여의치 못하였으니 그 세력이 자연히 극동으로 향하여 침략의 칼날을 노출할 수밖에 없도다. 이것은 즉 러시아가 만주와 조선을 세력범위 내로 인입하고 육해군의 근거지를 쌓아 중국, 인도 및 일본을 좌우로 주시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 영토적 야심을 굳히고자 한 때문이라. 러시아의 만주와 조선에 있는 세력이 날로 신장함에 대하여 자국의 존립이 협위(脅威)를 받는 것은 날로 커지는 일본이므로 일본은, 능히 러시아의 영토적 야심을 굳히고자 함을 무시하지 못하여 조선의 독립을 부식코자 하는 사업이 실패로 끝난 후로는 순전히 대 러시아 정책에 부심(腐心)하였다.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대사로 특파하여 일러협상을 체결하여 상반되는 양국의 이해충돌을 완화코자 한

204) 청나라 말기 ‘의화단’이라는 비밀결사가 벌인 배외운동.

205) 위세를 가지고 내려다봄을 뜻함.

206) 1882년부터 1915년까지 독일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삼국 간에 체결된 비밀동맹. 동맹국이 다른 열강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군사원조하기로 하였다.

207) 곁에서 간섭하여 마음대로 못하게 막음. 제약이라는 뜻.

일과 그 후에 조심스럽게 제2의 일러협상을 동경에서 체결한 일과 또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노도(露都)에 가서 일러협상을 계획했던 일과 일영동맹의 체결을 보기에도 이는 것이 모두 일본의 러시아대책의 고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국가의 흥망을 거는 전쟁으로써 해결을 구함에 이르렀으니 그 때 일본 위정자의 외교가 출렬한 것은 여러 말 할 것이 아니로다. 다행히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러시아 함대를 분쇄하여 전승의 영관을 머리위에 올려놓아 국운의 융성을 보았지만 만약 불행히 전쟁에 패하였던들 어찌 안여무사(晏如無事)함을 얻을 수 있었으리오. 국가 백년의 대계를 수립함에 만전의 방책을 취하지 아니하고 모험의 길을 행함은 정치가의 취할 도리가 아님이 아닌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큰 육군을 보유한 러시아의 침략적 야심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큰 해군을 소유한 영국도 그 위협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으니 영국이 일본에 접근하게 된 것은 대세에 의한 것이나 일본이 영국의 힘을 의지하고자 함에 대하여는 당시에 있는 사위(四圍)의 사정을 고찰하면 필요한 세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도다. 일영동맹의 성립을 본 것은 물론 일본이 러시아의 압박을 받고 영국이 또한 러시아의 위협을 느낀 것에 연유한 것이나 당시 일본의 국력이라든지 국제의 관계라든지 러시아와 대항코자 함보다는 차라리 협조의 정책을 강구함이 옳았으니 만약 그때에 일본이 일영동맹을 체결치 않고 러시아와 협조를 도모하였으면 혹은 일영동맹을 체결한 후 러시아에 대하여 담판을 열었던 조건 즉 만주와 조선의 우월권을 교환코자 하는 조건으로써 만족한 해결을 획득하였으면 나아가 일러동맹을 체결함에 이르렀을지는 알지 못할 것이라 하노라. 만약 일러가 동맹함에 이르면 영국의 세력이 독일에 접근하여 러시아가 인도를 탐하는 위협을 견제함을 도모하였을 것이요, 일본은 북으로 대륙경영의 범위를 확장한 후 남으로 태평양 연안과 인도 방면으로 발전할 침로(針路)를 취하였을 것이니 즉 말한바 북수남진(北守南進)의 국책을 정하였을 것이라. 만약 그랬으면 영국은 일러 양국의 위협에 공포하여 어떠한 술책을 부려서라도 독일로 하여금 러시아를 견제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화(兵火)를 주고받는 사단(事端)이 일어나도록 노력하였을지도 알지 못할 것이오. 만약 영국의 노력으로 동구에 풍운(風雲)이 급하여 개전(開戰)의 화(禍)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일본은 전쟁의 권외에 서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라. 어찌 자국의 흥망이 걸린 승패를 알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모험의 거행이 있는 것을 알았으리오.

예컨대 당시의 국제관계를 소고(湖考)²⁰⁸⁾하건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삼국동맹에 대하여 러시아, 프랑스 양국의 동맹으로써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프랑

스(佛蘭西)는 항상 전승 신흥한 독일의 압박을 받아 모로코(摩洛哥) 문제 등에는 위협통갈(威嚇恫喝)의 모욕을 참아내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있고 영국은 프랑스에 대하여 비록 숙원(宿怨)이 있으나 독일의 강성함을 경계하는 반면에 프랑스의 미약함을 동정하여 프랑스의 대 모로코(摩洛哥) 정책에 대해서는 방해를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주 만족의 뜻을 표하여 양국의 국교를 친밀케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동맹국인 러시아는 영국을 경계하고 탄식함이 독일 이상이었으므로 영불협상의 실천에는 자연히 주저하는 기세였도다. 그러므로 러시아, 프랑스 동맹의 힘은 능히 독(獨), 오(奧), 이(伊) 삼국동맹과 길항²⁰⁹⁾함을 얻지 못하여 당시의 국제무대는 독일로 하여금 우이(牛耳)²¹⁰⁾를 고집케 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여 영국은 한편으로는 일본파(日本派)의 손을 잡아 러시아의 침략을 방어하고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환심을 사서 독일의 세력을 저항하는 책략을 취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이니, 영국과 프랑스의 접근이 점점 농후함을 본 독일이 어찌 또한 이를 좌시하고 그 대책을 강구치 아니하리오. 이제야 독일은 프랑스의 동맹국인 러시아에 추파를 보내고 극력으로 러시아의 극동경영을 원조할 뿐 아니라 백방의 수단을 부려 종용하고 유혹하여 마침내 러시아로 하여금 방약무인한 태도로써 극동의 점령을 단행케 하여 일러 전역의 참극을 빚게 하였다. 당시의 러시아가 독일의 후원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어찌 이와 같이 무모한 거사를 벌이는 일이 있었으리오. 그러므로 나는 말하되 일영동맹과 영불협상이 없었으면 일러전쟁은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바로다.

일영동맹이 체결된 것은 일본이 러시아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전쟁이라도 사양치 아니할 결심이 굳음을 러시아가 간파하고 극동에 있는 최후의 해결은 병력에 호소치 아니치 못할 각오로써 전비(戰備)를 갖추기에 분주했던 것이오. 영불협상이 성립된 것은 독일로 하여금 수적(歸敵)인 프랑스의 국제 간의 세력이 점익팽창(漸益膨脹)하고 러불동맹과 상사(相俟)²¹¹⁾하여 삼국동맹과의 균형을 얻고 이미 삼국동맹의 힘으로 환연하면 독일의 독력으로써 구주의 평화를 강요치 못할 것을 간취하여 러시아로 하여금 일본과 개전케 하여 영국을 견제하고 프랑스를 고립케 하고자 하는 주(籌)를 돌리게 한 것 이니 이것이 즉 일러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한 이유로다. 당시의 일본을 위하여 계획 친대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 협조를 도모하고 나아가 일러 동맹을 체결하였으면 영

208) 옛일을 거슬러 올라가 자세히 고찰함.

209) 서로 벼티어 대항함.

210) 우두머리라는 뜻.

211) 서로 기다린다는 뜻.

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독일에 접근함을 강구하였을 것이요, 프랑스와 협상을 약속하지 아니하였을지니 그리하여 독일의 프랑스에 대한 야심을 굳히게 하고 러시아는 프랑스를 힘써 원조치 아니하지 못하도록 하여 호전국의 독일로 하여금 전단(戰端)을 도발하는 일이 없지 아니하게 한 후 만약 구주의 전란이 발발하면 일본은 왼쪽에서 어부(漁人)의 공(功)을 받고 동양의 패권을 쥐는 것이 최상의 양책(良策)이라 하는 까닭이로다. 영국이 만약 프랑스에 접근치 아니하고 독일과 친밀을 도모하였으면 독일도 러시아를 농락하여 전력을 극동에 전부 쏟아붓게 하고 프랑스를 원조하는 힘을 적게 하고자 하는 책략을 부리지 아니하였을 것은 당시의 구주 외교사를 돌아보면 족히 알 수 있지 아니한가.

일영동맹의 협약이 런던에서 발표되기 전에 이토 히로부미가 노도(露都)에 있어 당시 러시아의 집정자와 더불어 일러협상에 관한 담판을 진행하다가 일영동맹이 체결된 일이 돌연히 발표되자 이토 공은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포두서찬(抱頭鼠竄)²¹²⁾하여 베를린(伯林)으로 향하여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는 일이 있도다. 이에 대하여는 이설이 있으니 혹자는 말하되 “이토 공이 노도에서 일러협상을 제의한 것은 런던에서 진행하던 일영동맹의 교섭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한 일시적 권모(權謀)이니 이토 공의 정치적 세력으로써 어찌 일영동맹이 체결될 것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일러협상을 교섭하는 중임을 맡았겠는가” 하였다. 혹자는 말하되 “이토 공이 노도에서 일러협상의 교섭을 개시한 것은 일영동맹의 문제가 점차 무르익은 것을 알고 가쓰라(桂) 내각으로 하여금 런던에서 일영동맹의 교섭을 행하게 하고 자기는 노도로 가서 일러협상의 제의를 제출하여 만약 일영동맹이 마음먹은 대로 성립치 못하면 일러협상으로써 대신코자 한 것이니 즉 런던에서 진행되는 일영동맹의 교섭으로는 영국에 대한 교섭을 이롭게 하여 양자 중의 하나를 취하고자 하는 양전(兩全)²¹³⁾의 책략을 취한 것이니 이는 즉 이토 공의 심모원려(深謀遠慮)²¹⁴⁾에서 나온 것이라” 하나니 이설이 서로 일리가 있는 듯하도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설이 모두 궁계(肯綮)²¹⁵⁾에 맞지 못한다 하노라.

이토 내각의 뒤를 이어 성립된 가쓰라 내각에 대하여 정우회(政友會)에서 호감으로써 환영치 아니함은 물론이고, 이토 공 개인으로도 군벌의 제2류인 가쓰라 타로(桂太郎)에

212) 무서워서 머리를 싸쥐고 얼른 숨는다는 뜻.

213) 두 가지가 다 온전함을 뜻함.

214) 먼 장래까지 생각하여 깊이 도모함을 뜻함.

215) 일의 급소(急所), 또는 사리에 합당한 것을 뜻함.

게 제국재상의 인수를 양여함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은 서로의 사정이 원래 그러한 바이니 정당원(政黨員)으로 초연(超然) 내각을 구가치 아니할 것과 평화적 정치가가 침략적 정치가를 환희치 아니할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가. 하물며 가쓰라 타로는 비록 이토 내각의 육군대신이 된 일이 있으나 가쓰라는 대야심가인지라. 이토의 하풍(下風)에 거주함을 달가워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위공을 세워 이토뿐만 아니라 야마가타(山縣)까지라도 능가함을 스스로 기대하였으므로 중요한 국정에 대하여 원로인 이토에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지라도 필히 그 심간(心肝)을 피력하여 지도를 받고자 하지 아니하였을 것은 자명의 이치니라. 그러므로 일영동맹과 같음도 대체적인 이해에 관해서는 혹은 이토에게 논의한 바가 있을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결코 그 내용의 상세까지는 언급치 아니하였을 것이라. 극비극밀하에 교섭을 진행하였을 것이니 이토의 일러 협상안에 대해서는 표면으로 찬의를 표하여 일영동맹을 촉진하는 재료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는지도 또한 가히 알지 못할 것이라. 이토는 평화적 정치가이므로 침략주의와 같음을 가장 혐기(嫌忌)하는 바요, 러시아의 사정을 정통하는 자이므로 러시아와 교전함과 같은 일은 절대로 이를 피하고자 하는 의견을 유지하였고 또 일러양국의 이해는 반드시 절대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 여하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알리지 못할 것이 아니므로 러시아의 당국자와 면접하여 쌍방의 오해를 풀고 공평히 이해를 균분하여 일러협상의 기회를 포착할 저의로써 노도로 몸소 갔던 것이 어김없는 사실일 것이다. 비록 집정의 지위에는 있지 아니할지라도 이토의 정계에 있는 막강한 세력으로써 일러협상의 기운만 무르익으면 이를 실현케 할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이 쉬우니 이토의 노도에 있어 일영동맹의 성립된 비보를 접할 순간까지 일러협상을 실현할 획책과 실현한 후에 행할 수속까지 어떻게 하여야겠다는 심산이 뇌리에 왕래하였을 것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일영동맹의 비보를 접한 후는 실망낙담하여 노도를 탈출하는 여장을 신속히 정리하였을 것도 미루어 헤아림에 어려움이 없도다. 요컨대 이토의 평화 수단으로써 극동에 있는 일러 양국의 이해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일러협상을 체결코자 하는 계획이 가쓰라의 무단주의로써 러시아의 횡포를 응징하고 국력의 신장을 도모함에는 간과(干戈)에 호소함을 불사하겠다는 정책에 패한 바 되어 마침내 일영동맹의 성취를 보고 일러전쟁을 가히 피하지 못하게 한 바로다.

혹은 말하되 일영동맹의 성립은 독일 외교의 성공이라 하나니 그 설명은 당시 독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가 영국과 러시아의 협상에 있었으니 영국과 러시아가 일치되면 독일은 차마 할 여지가 없겠으므로 국동에서 영국과 러시아 양국을 서로 지지 않고 대항하게 하지 아니함이 불가하겠고, 극동에서 영국과 러시아 양국을 서로 지지 않고 대항하

게 함에는 일본으로써 그 설자(楔子)²¹⁶⁾를 삼지 아니함이 불가한지라. 그러므로 이에 착안한 독일의 외교가는 암중비약을 시도하여 일영교섭에 소개하는 수고를 고집하였다 하니 이 해설도 혹 그러한지 알지 못하겠도다. 독일의 외교정략은 항상 영국과 러시아를 이간하여 혹은 러시아를 원조함과 같이 하며 혹은 영국과 친함과 같이 하여 양국 간에 개재(介在)하여 어부(漁人)의 이익을 점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일영동맹으로써 영국과 러시아를 괴리케 한 외교정략의 성공이라 함도 이를 부정치 못하겠도다. 그러나 일영동맹이 일러전쟁을 도발하고 일러전쟁이 세계대전란의 원인이 되고 세계대전란이 독일을 파멸케 한 직접 원인이 됨에 생각이 미치면 일영동맹이 독일 외교의 성공이라고 말하기보다 일영동맹은 독일을 파멸케 하는 종자를 심었다 함이 가하니, 말한바 자작(自作)한 얼(孽)은 가히 환(道)치 못한다²¹⁷⁾ 함이 이와 같음이 아닌가. 만약 독일이 일영동맹의 교섭을 소개(紹介)하여 이를 성립케 하였다 하면 이는 스스로 파멸할 사람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국가 백년의 대계는 일시의 이해문제와 같이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개인의 공(功)을 이를 욕망으로써 권모와 술수를 부림이리오. 일영동맹이 아니면 일러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일러전쟁에 러시아가 패하지 아니하였으면 오스트리아(奧地利)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양주의 병합단행을 보지 않았을 것이요, 오스트리아의 양주병합이 없었으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하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사건이 없었으면 세계 대전란이 도발치 않았을 것이요, 세계 대전란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독일은 파멸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물며 영국과 러시아가 서로 접근하여 영(英), 프(佛), 러(露)의 삼국협상으로 독(獨), 오(奧), 이(伊) 삼국동맹을 대치케 한 것이 러시아의 일러전쟁에서 패함에 있으리오. 이로써 보면 영국과 러시아를 괴리케 하고자 한 일영동맹이 실은 영국과 러시아 접근의 여계(厲階)²¹⁸⁾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부연설명이나 전쟁을 좋아하는 군국주의로써 침략적 야심을 품고자 하는 독일은 어떠한 기회에라도 개전할 혼단(釁端)²¹⁹⁾을 포착하였을 것이다, 일영동맹이 아니라도 여하간 전쟁이 있었을 것은 또한 이를 수긍할 바로다. 그러나 일영동맹이 아니면 일본은 러시아와 개전함을 피하고자 함이 가득(可得)하였을 것이요, 만약 일러협상이 성립되었으면 구주 열강 간에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일본은 전쟁의

216) 두 개의 물체를 겹쳐 대고 서로 벌어지지 않게 하는 데 쓰는 꺾쇠를 말함.

217) 《서경》 태갑 중(太甲中)에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天作孽猶可違 自作孽不可逭)”고 하였다.

218) 재앙의 빌미를 뜻함.

219) 불화의 단서, 싸움의 시초를 뜻함.

와중에 개입하지 아니하여 이익은 점하였을지언정 위해를 입는 일은 절무(絕無)하였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도다. 하물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영동맹이 편무적(片務的)²²⁰⁾인 점이 없지 아니하고 다행으로 일러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많은 생명과 막대한 군비를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비의 배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얻은 바가 겨우 남만주의 조차권과 조선에 있는 우월권과 사할린(樺太)의 반부할권(半部割權)을 넘지 못하여 득불보실(得不補失)²²¹⁾한 협의가 있음이리오. 우리는 일영동맹이 성립되어 일러협상을 불가능케 한 무단정치가 가쓰라 타로(桂太郎)의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친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다.

1902년 1월 31일에 체결된 일영동맹 협약은 “양 체맹국(締盟國)의 일방이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전단(戰端)을 시작함에 이르면 다른 일방은 엄정중립을 고수하고 아울러 타국이 그 체맹국에 대하여 교전에 참가함을 방해하며 혹은 재차 다른 일국 또는 여러 나라가 교전에 참가할 때는 체맹국의 일방은 협동전투에 참가하고 강화도 역시 합의상 이를 결정한다” 한 것이니 만약 일본이 러시아와 개전할지면 다른 일국 또는 여러 나라가 교전에 참가하지 않을 때는 이 동맹으로 일본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시의 국제 관계로써 고찰할지면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도 병력을 동양에 이동시켜 러시아에 가담(加擔)치 못할 것은 물론이요, 청국은 러시아를 의구(疑惧)함이 일본보다 심하니 일러가 교전할지라도 참전할 다른 나라가 없는 것은 자명의 이치라. 그러면 일영동맹이 정한 바는 가공의 계약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이와 반대로 만약 영국이 러시아와 분쟁을 시작하고 인도에 반란이 일어나면 일본은 동맹의 약문에 의하여 협동전투를 사양치 못할 것이니 이가 편무적(片務的) 협약이 아니라 하면 무엇을 편무적 협약이라 하리오. 하물며 러시아를 위협하여 ‘포츠머스’ 강화조약의 성립을 신속하게 하였다고 하는 1905(명치 38)년 8월 13일에 개정한 일영 공수(日英攻守)동맹은 일러전쟁에 관해서는 제삼국이 일본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취하지 아니함에 한해서는 영국은 중립을 고수할 것을 약속하고 일본은 영국령 인도의 안전을 보증하였으니 이것이 일본의 영국에 대한 편무적 협약임을 더한층 명료케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리오.

일러전쟁의 승리가 일본에 돌아간 것은 그 공을 군벌에게 돌리지 아니치 못할 바라. 일본의 제의에 대하여 모두 망설임 없이 해륙전을 준비하여 동기(冬期)가 지나고 블라디보스토크 군항의 해빙을 기다리는 러시아의 간계를 간파하고 선발제인(先發制人)의 책

220) 어느 한쪽에서만 지는 의무를 뜻함.

221) 얻는 것으로 잃은 것을 메우지 못한다는 뜻.

략으로 기습하여 여순항과 인천충(仁川沖)에서 러시아함(露艦)을 격파함을 위시하여 러시아의 전비가 아직 완료되기 전에 대병으로써 압박을 가하고 연전연승한 위공은 군벌에 이를 양보치 아니하지 못할 바로다. 그러나 기습의 여행을 바라고 모험책에 의하여 전쟁을 도모함이 어찌 만전의 계획이리오. 하물며 교전한 지 2년이 채 못 되어 병력은 기진하고 국고가 고갈되어 만약 러시아가 내고(內顧)의 근심이 없어 다시 1년만 오래 끌었다면 불공자파(不攻自破) 될 염려가 없지 아니하였으리오. 이에 이르러서는 북미합중국이 중재를 제의한 것이 천우(天佑)라 할 수 밖에 없도다. 어찌 일시의 전공으로써 능히 백년의 국계를 그르친 죄를 속죄하리오.

그런데 일러전쟁이 개시됨에 대하여 조선의 상하는 어떠한 태도로써 이를 환영하였던가.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하여 러시아가 조선에 있는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할지면 일본도 만주에 있는 러시아의 우월권을 인정함을 욕심내지 아니하고자 한 소위 만한(滿韓) 교환의 의제를 제출하여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 민간에서는 조선에 관한 문제를 교섭하는 데 조선 정부를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일러(日露) 양국에 항의서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등 아무런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체면을 유지하고자 크게 노력한 바가 있었다. 또한 극동의 풍운이 급박함을 고하여 인천충에서 한 함대가 먼저 러시아 함(露艦)을 격파함으로써 전단(戰端)이 개시하자 이조(李朝) 정부는 바로 엄정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의 육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러시아 공사관의 사신이 철퇴함에 이르러서는 주권자는 친러파의 이용익(李容翊), 현상건(玄尙健), 길영수(吉永洙) 등의 헌책(獻策)으로 프랑스(佛國) 공사관에 파천할 계획을 정하였다. 이는 일러(日露)가 교전하면 약소한 일본이 능히 강대한 러시아를 대적치 못할 것이요 수개월에 못 미쳐 일본이 패배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니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 공관에 피하여 일시 어려움을 모면하였다가 러시아가 전승한 후에 환궁하여 러시아의 비호를 받을 수 있다 함이라. 그러나 러시아공사가 철퇴한 후 일본 군대가 바로 경성으로 들어와 불관파천(佛館播遷)의 음모가 실현되기 전에 이용익, 길영수 등은 일본 현병대에 구금한 바 되고 현상건 등은 도망하여 한국정치의 형세는 갑자기 일변하였다. 드디어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와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李址鎔) 간에 일한의정서를 체약하여 소위 엄정중립은 2주일도 고수치 못하고 한러협약을 폐기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하여 적대행동을 취함에 이르렀으니, 과연 한국의 주권자와 위정자가 일본을 신뢰하여 러시아를 방어코자 하는 진심으로 일한의정서를 약정한 것인가. 아니라, 일본의 병력에 위압됨에 연유함이요 진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니 이는 일한의정서에 조인한 후 오래지 않아 밀사를 파견하여 일러 양군의 실정을 정탐케 한 일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로다. 그러

나 진의의 유무를 막론하고 일단 의정서에 조인한 이상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바인즉, 의정서의 조문에 의하여 일본이 조선의 시정개선을 유액(誘脅)²²²⁾할 권리는 확보한 것이라. 그런데 시정개선을 유액한 일은 별로 없고 군용지(軍用地)의 수용은 적당한 가액을 지불치 않았으므로 민원을 초래하였음은 그 때 일본의 당국자가 또한 조선에 대한 정책을 그르친 비웃음을 면치 못하겠도다. 일한의정서에 시정개선을 유액할 조문이 있거든 무엇을 염려하여 내정간섭을 단행하여 친일당의 수중에 정권을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벼젓이 궁중에 있게 하였는지 이는 실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바로다. 고로 일본 공사가 모 일본인이 이권획득을 알선하는 것을 보고 궁중으로부터 운동비(運動費)를 지출하고 민간의 인사를 사주(使嗾)하여 보안회(保安會)라는 단체를 조직케 하고 이에 반대하는 기세를 불러일으켜 부조(不調)하게 한 적도 있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나 일반 인민 중에 일러전쟁에 대하여 일본의 전승을 축하하고 일본을 배척코자 하는 마음을 품은 자는 없으니, 이는 일러전쟁이 종결을 고하는 날에 일본이 이기면 선전조칙(宣戰詔勅)에 명시한 바와 같이 조선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은 보장된 것이요 만약 러시아가 승리하면 조선은 러시아의 호구(虎口)에 병탄됨을 면치 못할 것임에서 나온 것이라. 그리하여 조선의 유일무이의 비밀결사요 대단체인 동학당(東學黨)의 수령은 그 교도를 발동하여 일본군의 군수품 수송의 노역에 종사케 하여 그 성의의 있는 바를 표하였고 그뿐 아니라 기타 일반 인민도 군량의 운반과 마초(馬草)의 공급을 행하고 또 러시아군의 행동을 탐고(探告)하는 등 일본 군대에 대하여는 편의를 도모치 아니한 것이 없어, 궁중에서는 러시아의 전승을 기대함과 정반대로 민간 측에서는 일본의 전승함을 원치 아니한 자가 없었도다. 그리하여 다행으로 일본군은 조선인이 축원하는 바와 같이 해륙전에서 함께 연전연승하여 첨보가 일치함에 환호의 소리가 팔역에 널리 퍼졌으나, 오직 궁중에서만 일본 측에서 발표하는 첨보인즉 그 허실을 알기 어렵다 하여 반신반의 하며 우려와 두려움으로써 하루를 보내었도다. 일본의 승리로 전국에 종전을 고할 것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나는 형세임을 간취한 민간의 지사(志士)는 이 기회에 일본의 힘을 빌어 궁중부중의 부패하고 문란한 정치를 개혁하여 유신의 기초를 정함이 가하다 하여 먼저 정치적 결사로써 민권의 신장을 도모하고 정계의 곽정(廓情)을 기하고자 하였으니, 독립협회의 회원이던 윤시병(尹始炳), 유학주(俞鶴柱), 한석진(韓錫振) 등 여러 사람들이 조직한 유신회(維新會) 즉 머지않아 일진회(一進會)라고 회명을 개정한 단체가 이것이라. 일진회가 민권신장의 소리를 들어 일어나게 하고 정부의 비정(秕政)을

222) 이끌어 도와준다는 뜻.

공격함에 팔을 걷어붙이고 일진회가 취하는 방침이 완만하다 하여 직접 행동을 취하여 궁중의 총명을 옹폐(壅閉)하는 잡배를 먼저 제거함이 옳다는 단체가 또 발생하였으니 이준(李儁), 김명준(金明濬) 등 여러 사람이 설립한 공진회(共進會)가 이것이라. 공진회가 취한 행동은 급격에 가까웠음으로 해산의 불행을 면치 못하였으나 궁중에 대한 국민의 울분이 어느 정도인가는 이로써 그 일단을 폭로하였다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백만의 교도를 결속하여 시기의 도래함을 엿보던 동학당의 수령 이용구(李容九)는 이때가 바로 궐기할 때라 하여 비밀리에 교도에게 격문을 보내 진보회(進步會)라는 명칭하에 십삼도에서 일제히 궐기하여 집회를 열고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주장한파(周章狠狽)하여 이를 금압(禁壓)하려고 무력까지 사용하여 평북지방에서는 유혈의 참상을 본 일도 있었으나 결속이 공고한 동학당이므로 쉽게 해산치 아니하고 사력으로써 항거하였다. 또한 이용구는 일진회의 수령 송병준(宋秉畯)과 밀의하여 일진회로 하여금 정부에게 진보회를 압박함이 불가함을 헐책하고 무고한 양민을 참살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케 하여 정부에서도 진보회의 집회, 결사를 묵인치 않을 수 없었으니, 대개 일진회의 배후에는 조선에 주차(駐劄)한 일본군사령부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도다. 머지않아 진보회는 일진회와 합하여 이용구(李容九)가 지방총장의 지위에 올랐고, 각 도(道)와 각 군(郡)에 지부와 지회를 설치하여 일진회의 지회가 없는 군이 거의 없고 회원의 수가 백만을 호령하여 일대 정치적 단체가 되었다. 일면으로는 회세를 확장하며 일면으로는 지방의 관리의 행동을 감시하여 때로는 경향(京鄉)을 막론하고 일진회와 관리가 대치하는 장면을 드러냈도다. 그런데 일진회는 친일 색채가 농후하고 또 동학당의 집단인 혐의가 있는 고로 이에 겸연(慊然)한 인사는 따로 일당을 조직한 일이 있었으니 윤효정(尹孝定) 등이 조직한 자강회(自強會)가 이것이라. 자강회는 그 이름과 같이 독립 불기하여 조선 민족의 자강자립을 도모코자 함이 그 주의이나 내정을 개혁치 않고는 능히 자강자립을 도모치 못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현 정부를 타파코자 함에는 일진회와 다를 것이 없었도다. 그러나 자강회는 일진회와 같이 일본군사령부의 비호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궁중에서는 이 단체의 힘으로써 일진회를 대항케 하고자 하여 내밀히 원조한 일이 있었음은 또한 가히 무시치 못할 사실이도다.

일러전쟁의 종국을 고하기 전후까지는 자강회에서도 일본에 대하여 아무런 반감을 품은 일이 없었고, 오직 대내의 관계로써 일진회와 대립함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니 요컨대 정부 대 일진회, 일진회 대 자강회의 삼파가 정립, 대치하여 정부는 정권을 잃지 아니함에 전력을 다하고 일진회와 자강회는 정권을 취할 날의 도래함을 갈망함으로써 날을 보내었도다. 만약 그 때에 일본의 위정자가 시정개선을 이끌고 도와주는 권리를 행사하여

일진회로 하여금 정권을 획득케 하였으면 혹은 정치개혁에 가관(可觀)할 자가 있었을 런지도 가히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 그러한대 일진회를 원호하였다 함은 단순히 군사령부 측에 그쳤고 외교의 중심에 항상 있던 자는 도리어 이에 찬의를 표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궁중의 환심을 사는 것에 급급하여 다른 것을 돌아보게 할 겨를이 없었으니, 일진회와 같은 대단체가 성의로써 일본에 대하여 친선을 표하고 일반 민심이 일본의 전승을 축하하는 그때에, 1천 7백만의 민심을 수락(收攬)할 방책을 강구치 아니하고 이중의 외교로 일정한 방침을 수립치 못하여 은혜를 후일에 남기게 한 것은 일본의 위정자에게 있어서 애석한 바로다.

〈이상 (3), 이하 (4)는 누락됨〉

6. 보호정치의 차질(하)

보호조약에 의하여 제1대 한국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통감부를 개설하고 한국의 시정개선(施政改善)을 이끌어 돋고자 함에 있어 국민성이 어떠한지와 민의가 어떠한지는 털끝만큼도 관찰치 아니하고 오직 한국 황실(韓皇)의 환심만 사고자 하여 인물과 계통의 여하를 불문하고 한국 황실(韓皇)의 친신(親信)하는 사람에게 위정의 책임을 맡겨 고문정치의 실적을 거두고자 하였으니 이가 어찌 실정의 근본이리오. 사청파(事情派)의 박제순(朴齊純)을 참정대신(叅政大臣)으로 하여 정부의 수반에 앉히고 친러파의 이완용(李完用)과 친불파의 이하영(李夏榮)과 도박(賭博) 이외 아무 능력도 없는 이지용(李址鎔)과 그의 간신배라고 온 세상이 지탄하는 이근택(李根澤)을 각부의 대신으로 하여 국무를 행하는 중임을 맡긴 것을 보면 한국의 시정 개선을 유액(誘腋)한다는 이토(伊藤) 통감의 진의를 의심치 아니치 못하겠도다. 생각건대 정도가 유치한 민의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한국 황실의 명령을 빌어 전제로써 위압하고 권요(權要)의 지위에는 고문을 설치하여 제반 행정에 필히 고문의 승인을 경유케 할지면 어떠한 인물이 대신의 지위에 있어 우려할 것이 없이 시정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고문정치를 시행한 후 내정의 개혁과 재정의 정리를 단행하여 다소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니, 특히 백동화의 남발과 사주(私鑄) 백동화의 무애통용(無碍通用)으로 문란이 극도에 달한 재정을 정리하고 파산의 비경에서 구출하여 점차 순경(順境)²²³⁾으로 향하

223) 뜻한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 가는 경우 또는 순조로운 환경을 뜻함.

게 한 것과 같은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의 고심노력한 공로의 결과라 할 수밖에 없고, 지방관제를 개혁하여 경찰제도의 완성을 도모하고 민형소송의 분리를 기획한 것과, 궁중부종의 구별을 엄격히 하여 궁금(宮禁)을 숙청하고 잡배의 출입을 금한 것과, 관기의 진숙(振肅)을 도모하여 매관매직의 폐풍(弊風)을 제거하고 뇌물공여의 악습을 멸절케 한 것은 이토 통감이 한국을 위하여 지도, 유액한 노고를 감사치 아니하지 못할 것이라 하겠도다.

그러나 위로는 주권자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보호정치에 대한 의심의 생각은 날로 증장될 뿐이요 신뢰하는 마음은 조금도 생겨나지 아니하여 지방에는 폭도의 출몰이 무상하고 도회에는 배일(排日)의 기세가 충만하여 관리에 봉직하는 사람이라도 그 지위를 잃을까 염려하여 면유구용(面諛求容)²²⁴⁾할 뿐이요 성의(誠意)로써 신수(新收)²²⁵⁾를 익찬(翼贊)²²⁶⁾코자 하는 자는 없으니, 말하자면 물질적 방면에는 다소 가관할 성적이 있다 하나 정신적 방면에는 전혀 실패한 감이 없지 아니하도다. 그 때의 정치적 취지로서 조직된 단체로 말하면, 일진회는 비록 친일을 표방하고 보호정치를 시인하는 태도에서 출발하였으나 일진회의 설립이 군사령부의 원호하에 있었으므로 군벌(軍閥)을 혐오하는 이토(伊藤)의 중심에는 일진회와 제휴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로 보였으므로 능히 세력을 확장치 못하고 비밀결사시대의 훈련을 거친 동학당의 결속력에 의하여 겨우 현상을 유지할 뿐이요, 백만의 회원을 가진 대단체로서 시국에 대하여 아무런 공헌이 없었음은 유감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또한 자강회(自強會)의 후신인 대한협회(大韓協會)는 배일(排日)의 가치를 세워 고문정치에 반항하는 동시에 조선인의 자각을 촉구하는 것을 주의로 삼았기 때문에 지식계급에 속한다 할 만한 인사로서 거의 대한협회에 적을 두지 아니한 자가 없어 회원의 수는 비록 일진회보다 적으나 군중의 환영을 받는 점은 두루 일진회를 능가하여 그 세력은 가히 무시치 못할 바가 있었으니, 보호정치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자 할진대 당파를 이용하여 사상을 선도하는 외에 타책이 없는 것은 이미 그 조짐을 보였던 바다. 그러나 이토 통감과 그 부하는 단순히 제도의 개폐와 형식의 장찬(粧撰)²²⁷⁾에만 비중을 두고 정신적 방면으로써 민심이 추향하는 바는 전혀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실패를 초래하지 않으리오.

재정의 문란이 극도에 달한 한국 정부의 실정은 일본의 차관이 아니면 정리할 기대가

224) 바로 눈앞에서 아첨하여 용납되기를 구한다는 뜻.

225) 새로 들어온 수입, 새로 받아들인 것을 뜻함.

226) 받들어 도운다는 뜻.

227) 허물을 숨기고 꾸민다는 뜻.

없었음에 불구하고 일본에 차관함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화근이라 하여 국채보상과 단연동맹(斷煙同盟)²²⁸⁾의 운동이 일어남에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찬성치 아니하는 자가 없었다. 각 신문지에는 국채보상의 의손자(義損者) 이름으로써 대부분을 점하는 면이 있었으며 안창호(安昌浩)와 같이 평양에서 그 동지를 향하여 “관세를 담보로 하고 일본에 차관을 얻었으니 진남포 항구에서 백 명이 투신자살하여 차관에 반대하는 뜻을 표하면 열국이 간섭하여 차관을 중지케 할지니 비로소 결사대를 모집함이 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일도 있으니, 조선인이 일본을 의심하고 꺼려함이 얼마나 심하고 큰가를 가히 추측할 바가 아닌가. 다만 표면에 국채보상, 단연동맹과 같은 배일의 운동이 있을 뿐 아니라 이면에도 여러 음모가 복재(伏在)하여 러시아가 일본에 대하여 복수전을 펼칠 것이라 예측하고 러시아와 결탁하여 일본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러시아로 잠입하는 자가 계속 끊이지 않았으니 이승만(李承晚), 이상설(李相嵩), 이준(李準), 이범윤(李範允), 김인수(金仁洙) 등이 모두 이들이라. 경성에도 공기(空氣)가 험악하여 미국에서 외교 고문으로 있는 스티븐슨(須知分)을 암살함²²⁹⁾과 함께 요로대관(要路大官)의 암살 음모가 성행하여 시종원경(侍從院卿) 박용화(朴鏞和)를 암살한 일과 군부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을 자상(刺傷)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정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도저히 박제순 내각의 힘으로는 능히 시국을 수습치 못할 형세에 이른지라. 이제야 이토 통감은 민심이 추향(趨向)하는 바를 전혀 무시치 못할 것을 간파하고 박제순 내각의 경질을 단행하는 동시에 일진회를 이용코자 하여 이완용으로 하여금 내각을 조직하게 하되 특히 송병준을 입각시켜, 이·송 연립 내각을 조직케 하였다. 송병준은 비록 일진회의 영수(領袖)이나 위세와 명망을 볼 때 능히 단독으로 내각을 조직하지 못하겠고 관료파 중에는 이완용이 식견이 탁월하고 사려가 치밀하여 이에 맞설 자가 없으므로, 이완용으로 하여금 내각을 조직케 하고 송병준을 입각시켜 일진회를 여당으로 하여 정부를 옹호케 하고 보호정치의 실적을 거두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송 연립내각이라는 것이 근본부터 오산이니 한 세대의 효웅(梟雄)²³⁰⁾으로 자타가 모두 인정하고 다른 사람 아래에 있음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는 오만한 근성을 가진 송병준을 관료 중의 최하위인 농상공부대신의 자리에 앉혔으니 어찌 내각의 통일을 파괴할 원인을 만든 것이 아니리오.

이·송 연립내각이 조직된 일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228)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담배를 끊고 그 대금을 모아 국채를 갚자는 운동이다.

229) 1908년 미국 내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미주 독립운동을 저지, 방해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스티븐슨은 전명운, 장인환 의사에 의해 사살당했다.

230) 사납과 용맹스러운 인물을 뜻함.

있으니 바로 송병준의 의옥사건(疑獄事件)이라. 의옥사건의 내용은 극비에 부쳤으므로 외간에서는 이를 알기가 불가능하나 정치적 야심이 발발(勃勃)²³¹⁾한 송병준이 돌연 의정부 참찬 이상재(李商在) 및 그 동지 윤갑병(尹甲炳)과 더불어 경무청의 구인(拘引)을 피하여 엄중한 신문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정치적 방면의 사건인 것은 그 누구라도 모두 추측하여 생각할 수 있는 바이로다. 일진회에서는 영수 송병준이 갑자기 구수(拘囚)되자 황망하여 조치할 바를 알지 못하여 동회(同會)의 상담역(相談役) 격으로 있는 모치즈키(望月龍太郎)로 하여금 각 방면에 탐문케 하였으나 절망이라는 회보(回報)를 가져온 고로 더욱 우려가 극심하던 중에 일진회로서는 일대 치명상이라 할 만한 사건이 또다시 돌발하였다. 천도교주 손병희(孫秉熙)가 이용구(李容九), 송병준 이하 천도교 신도에게 정당에 참가하지 말고 교문(敎門)으로 돌아가 단순히 종교사업에 종사하라는 종령(宗令)을 내리고 계속 종령을 위반한다 하여 이용구, 송병준 이하 일진회의 중요 간부를 한꺼번에 출교(黜敎)하는 종령을 발휘하였다. 일진회 내의 경향(京鄉)은 물론 인심이 동요하여 일진회를 탈퇴하여 천도교로 돌아가는 자도 있고 혹은 천도교의 출교를 당하여 일진회에 머물게 되는 자도 있어 일대 분열이 발생하였다. 이용구, 송병준이 비록 동일한 손병희의 문도(門徒)로서 대한협회의 중요 간부인 오세창(吳世昌), 권동진(權東鎮) 등과 빙탄불상용(冰炭不相容)²³²⁾의 간극이 있다 할지라도 생사를 함께 하는 이용구 등을 출교하는 극형에 처하는 종령을 내려 일진회에 치명상을 주고자 하지 못할 것은 손병희와 이용구의 종래의 관계를 아는 자는 부정치 못할 바이거늘, 송병준이 옥에 들어가는 것을 일대 기회로 하여 이와 같은 폭거를 일으킨 것이다. 이는 일진회가 십만의 회원을 징발하여 일러전쟁 당시에 북진군(北進軍)의 군수품 운반에 종사함을 시작으로 하여 매사에 일본을 신뢰코자 하고 일반 조선인이 대부분 반대하는 보호조약의 성립에 대하여도 홀로 찬의를 표하여 일본을 위해서는 견마(犬馬)의 수고를 사양치 않는 성의를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정치를 실시한 아래로 텔끝만큼의 원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수령된 자가 옥에 투옥되는 바 비참한 경지에 빠지는 것을 보면 친일을 표방하고 일본을 신뢰하여 조선의 부강을 도모함은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안으로는 일반의 손가락질을 피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일본의 원호도 받지 못하여 사면초가의 안에서 고립자멸의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간파하였다. 일반 교도는 정당정파에 참가함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단호한 조치를 행하여 전 교도로 하여금 일진회를 해산하고 천도교로 복귀케 하고자 함이 즉 손병희의 진의인 듯하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용구, 송병준 등

231) 사물이 한창 일어나는 현상, 왕성(旺盛)한 정도를 뜻함.

232) 얼음과 숯불이 서로 어울릴 수 없다는 뜻.

이 일진회에 있음이 옳지 아니하다 할진대 오세창, 권동진 등이 대한협회에 있음도 옳지 아니할 것이 아닌가.

손병희의 심중에는 반드시 스스로 헤아리되 대도주(大道主)의 위망(威望)으로써 한번 종령을 내리면 일반 신도가 이를 존봉(尊奉)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용구와 같은 인물도 능히 거역치 못하리라 하여 청천벽력으로 송병준의 입옥을 기회로 하여 이러한 종령을 내린 듯하다. 그러나 손병희가 스스로 헤아린 바에 반하여 천도교로 복귀한 자는 십분의 삼에 지나지 않고 십분의 칠은 여전히 일진회에 머물렀으므로 천도교에서도 역시 일진회 이상의 타격을 받아 일시 경비(經費)의 궁핍으로 막대한 곤란을 느낀 일도 있었으며 송병준의 출옥과 함께 이용구, 송병준 일파는 별도로 시천교(侍天敎)라는 교문을 창설하여 마침내 천도교와 분립하기에 이르렀으니 손병희가 이와 같이 고압수단을 쓴 것은 반대로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송병준의 입옥을 기회로 하여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것이 민심의 추향을 살피고자 하는 위정자에게는 참고의 호재료가 되었을 것은 두말할 바가 아니로다.

송병준이 입옥한 사이에 천도교로부터 출교의 극형을 당한 일진회 본부에는 비운이 돌고 있어 참담함이 극심하였으나 우치다(内田良平)와 동회 간부 사이에 묵계가 성립하여 한 가지 활로가 열렸으니 우치다가 송병준이 무사히 출옥될 것을 예고하는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이라. 비록 극비에 불인 의혹사건이지만 누문(漏聞)²³³⁾한 바에 의하면 당시 경무고문 환산중준(丸山重俊)과 통감부 경무총장 오카 키시지로(岡喜七郎)는 송병준을 정부 전복 음모의 죄로 처단하여 사형에 처함은 물론이라 하였고, 농상무총장 기우치(木内重四郎)는 비록 이러한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유일한 친일당의 영수를 극형에 처함은 민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하여 그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통감부 최고간부회의에서 이토가 기우치의 주장을 따라 방면하였다 하는 설이 있도록. 그러한즉 송병준이 방면된지 오래되지 않아 참정대신 박제순 이하가 총사직을 행하고 이완용이 신관제에 의하여 내각총리대신이 됨에 이르러 송병준에게 농상공부대신의 자리를 주었음은 생각진 대 의혹사건(疑獄事件)으로 인하여 도리어 그 인물의 어떠한 바가 이토 통감이 인정한 바로 말미암은 것이니 새옹실마(塞翁失馬)의 깨달음이 즉 이와 같음을 지적한 것이로다.

이·송 연립 내각이 성립된 후 수개월이 지나지 못하여 청천벽력과 같은 헤이그밀사(海牙密使) 사건이 돌연히 발생하였으니 이는 이준(李雋), 이상설(李相禹)이 한국 황실의 밀사라 칭하고 헤이그에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요구하고 일한신협약(日韓新協

233)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새어나오는 말을 얻어 들음.

約)의 무효를 열국 위원에게 소청한 일이라. 헤이그에 한국 황실이 밀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보호를 탈출코자 하였다는 보도가 훤전(喧傳)되자 일본의 상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여론은 격앙하고 일본 정부에서도 강경하게 보호권을 확장할 기세를 보였는지라. 한국 조정에서는 이의 선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누차 어전회의를 열고 회의를 하였는데 한국 황실은 비록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 하여 밀사를 파견한 것을 부인코자 하나 이준 등이 한국 황실의 신임장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 아무리 책임을 면하고자 한들 어찌 그럴 수 있으리오. 고로 한국 황실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계책은 마침내 일본 정부의 분노를 풀지 못하고 당시 외무대신 임동(林董)이 특사로 경성에 온다는 보도가 도달하니 한국 내각에서는 더욱 주장(周章)²³⁴⁾ 낭패하여 드디어 각의(閣議)에서 양위(讓位)를 주청하기로 결정하고 어전회의를 열어 양위치 아니하고는 일본 정부의 분노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을 상주(上奏)하였다. 특히 송병준이 기탄없이 시국의 중대함을 역설하여 특사 임동(林董)이 입경하는 날 밤에 양위를 단행함에 이르렀으니 이는 1907(명치 40)년 7월 18일 일이라. 양위의 조칙이 발표됨에 원로중신 중에 반대하는 자가 많아 박영효(朴泳孝)와 같은 이는 제주도로 유찬(流竄)하는 형을 받았으며 경성 시내에는 폭동이 발발하여 수상 이완용의 저택을 불태우는 등의 소란으로 살기가 안팎에 충일하고 인심이 흥흉하였다. 그러나 일본 군경의 진압에 의하여 바로 진정되고 특사 임동이 와서 일본 정부의 요구 안건을 심의할 새 내각회의를 파성관(巴城館)에서 열고 이를 부의(附議)하였으니 소요 때 각 대신이 자기집에 있음에 위험을 느껴 파성관으로 피난하였음으로 인한 것이리라. 내각회의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마침내 일한신협약을 다시 체결함에 이르렀으니 소위 7조약(七條約)이 그것이라.

7조약에 의하여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직접 임용하게 되어 각 부 차관 이하 중요 관리에는 모두 일본인을 임명하고,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분리시켜 친히 각지에 재판소를 설치하고 대심원장 이하로 각 재판소장에까지 모두 일본인을 임용하고, 고등 관리의 임면은 반드시 통감의 동의를 거치게 하였다. 이는 고문정치를 고쳐 차관정치로 하고 일본인으로 하여금 대소의 실권을 장악케 함이니 즉 사명취실(捨命取實)의 정신으로 보호권의 대화장을 행함이로다. 각 부 차관 임명에 대하여 삽화가 하나 있으니 송병준은 특히 농상공부 차관으로 오카 키시지로(岡喜七郎)를 임명할 것을 이토 통감에게 간청하여 경무총장인 관계로 내부차관이 될 오카 키시지로(岡喜七郎)가 농상공차관이 되고 농상무총장이 반대로 기우치(木内中四郎)가 내무차관이 되었다는 설이 그것이라. 자기

234)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함.

를 죽음에 이르게 한 오카 키시지로에게 친밀을 구하고 자기를 살게 기우치를 소외한 것은 송병준의 뜻이 그 어디에 있었는지 이는 실로 알아내기 어려우나 오카 키시지로와 기우치 두 사람이 항상 반목질시하여 매사에 원활함이 결핍된 것이 혹은 이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에 연유함이 아닌지 알지 못하겠도다.

헤이그밀사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위의 사변이 발생하고 보호권을 확대하여 고문 제도를 차관정치로 고친 것은 어떠한 응변으로써 변호하고자 할지라도 이토 통감이 한국 황실의 신임을 얻어 보호정치의 양적을 거두고자 하던 계획이 전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겠도다. 입으로만 신뢰하고 속으로는 의심하고 배제하는 심리를 살피지 못한 이토 통감을 위하여 추민(追憫)함을 능히 금치 못하겠으니 어찌 유독 헤이그밀사사건이리오. 보호조약에 의하여 각국에 주차하였던 공사를 모두 소환할 때에 독일과 프랑스에 주재하던 민영찬(閔泳贊)에게 귀국치 말고 상하이(上海)에 체류하며 형세를 관망하라 하고, 체류 비용은 예기치 않은 우환이 있으면 봉진(蒙塵)²³⁵⁾하기 위해 사두었던 칭따오(青島)에 있는 가옥을 팔아서 쓰라고 그 가권을 손택양(孫澤壤)으로 하여금 귀국하는 길에 상하이에서 민영찬에게 교부케 한 일이 있음을 볼지라도 그 의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아니한가. 만약 이토가 이들의 일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면 또한 불명(不明)의 원망은 이를 면치 못할 것이 아닌가.

이토 통감은 한국 황실의 위령(威令)을 빌어 민심을 안정케 하고자 함이 오산인 것을 양위사변에 비추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실의 은위(恩威)로써 인민에게 임하고자 하던 정책을 버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더한층 노골적으로 이를 실행코자 하였다. 먼저 일본 황태자를 한국에 행계(行啓)하게 하여 양국 황실의 친선교환을 일반에게 보여준 후, 한국 황태자의 태자태사(太子太師)가 되어 특히 전하의 존칭을 누리고, 한국 황실의 자손을 일본에 유학케 하여 일본 각지를 배순(陪巡)²³⁶⁾하게 함으로써 한국 황실이 일본을 신뢰하는 것을 일반에게 주지케 하여 의심의 생각을 거두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반 인민의 오해는 추호도 의심함이 없고 이들 전에 없던 성거(盛舉)는 도리어 통감의 압박에서 나온 것이요 한국 황실의 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여 배일의 감정은 날로 격렬한 도를 더할 뿐이었으니 과격한 자는 의병을 일으켜 치안을 방해하고 다소 온건하다 하는 자는 실력을 양성하여 알맞은 때를 기다리고자 하였도다. 즉 당시 각지에 교육열이 발기하여 사립학교의 유흥임립(蔚興林立)²³⁷⁾한 일이 배일의 반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리오. 그런데 이토 통감은 다시

235) 임금이 난리를 피하기 위한 안전한 곳으로 떠남.

236) 모시고 순행함을 뜻함.

한국 황실에게 남선(南鮮)과 서선(西鮮)에 순행할 것을 권하고 몸소 배호(陪扈)²³⁸⁾하여 황실과 인민의 접근을 도모함으로써 인심의 일신(一新)을 구하고자 하여 도처에 민간유력자를 많이 알현(謁見)할 기회를 주고 연회를 베풀어 황恩(皇恩)에 감읍(感泣)케 할 뿐 아니라 도처에 연설을 하여 일본과 한국 양국이 가히 합하고 나누지 못할 것을 순순히 설명하여 일반에게 보호정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였으니 그 성의는 실로 감탄치 않을 수 없도다. 그러나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평양에서 기행렬(旗行列)을 행할 때 대성학교(大成學校) 생도가 일본 국기를 훼기(毀棄)한 등의 일이 있어 도리어 통감의 위신에 상처를 냈으니 시대가 같지 아니하고 경우가 다르고 국민성이 특수한 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왕정복고에 일본 황실과 국민의 접근으로써 대업을 수행한 옛 지혜를 한국에 사용하고자 함이 어찌 실책(失策)이 아니리오.

남선과 서선에 순행하기 전에 조기 내각의 파탄이 발생하고자 하였으니 직정(直情)²³⁹⁾ 강행코자 하는 송병준의 의견과 침착 치밀한 이완용의 성격은 항상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송(宋)은 걸핏하면 이(李)를 능모(凌侮)하여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이(李)는 암암리에 송(宋)을 배제하여 마침내 1908(명치 41)년 6월에 이르러 내각의 소경질(小更迭)을 행하게 되었으니 농상공부대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케 한 일이 그것이라.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케 한 것은 송병준이 지방행정에 대하여 불평을 주창하므로 그 의견을 수행케 하기 위함이니, 말하자면 송(宋)의 의견이 수용된 바 같으나 이토 통감의 진의는 송(宋)을 위무(慰撫)하여 내각의 파탄을 방지코자 함에 있을 뿐이요, 반드시 송(宋)의 의견을 용인하여 그러한 것은 아니라. 그런데 송(宋)은 내부대신의 지위를 점한 후 각도 관찰사를 모두 일본에 망명하였던 사람으로 임명하고 각 지방의 군수 추천의 권리를 관찰사에게 주는 등 지방 분권의 제도를 설립하고 지방행정을 크게 개혁하고자 하였으니, 그 계획이 선하지 아니함은 아니나 송(宋)으로서는 일대 실책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바이라. 송병준이 당초 이완용 내각에 입각한 것은 개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진회의 수령임에 연유한 것이니 일진회의 당세의 성함과 쇠함이 즉 송(宋)의 성공과 패배에 직접 관계가 있다 할 것인즉 내부대신의 지위를 점한 이상에는 일진회의 당세 확장에 대하여 숙고치 아니함이 불가할 것이거늘 송(宋)은 반대로 일진회의 출신인 3, 4인의 관찰사의 꼵수(馘首)²⁴⁰⁾를 단행하고 군수도 거의 전부를 반대파에서 선임케 하

237) 율홍(蔚興)은 성하게 부쩍 일어남을 뜻하고, 임립(林立)은 숲의 나무처럼 빽빽하게 늘어섬을 뜻함.

238) 임금이나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가는 일.

239) 자신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드려냄.

여 가졌던 지반과 세력까지 상실케 하였으니 타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했으면 혹 가능하였을지 모르겠으나 송(宋)이 직접 일진회에 타격을 주는 수단을 취한 것은 자승자박하는 무모한 거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밖에 없도다. 그리하여 이(李) 내각 대 일진회의 관계는 점차 소원(疏遠)해지고 이완용 일파가 송(宋)을 배제하는 운동은 격렬함이 날로 심화되어 서순시차(西巡時車) 중에서 송(宋)이 시종 무관 어담(魚潭)으로부터 일부러 언쟁하다가 칼을 뽑아 든 일이 있었음을 기회로 하여 반대당으로 하여금 성토의 운동을 시작하게 하고 내외로 압박을 가하여 드디어 송(宋)으로 하여금 부득이 사직하게 하였으니 송(宋)이 그 뜻을 행치 못하고 분만(憤懣)하여 재야로 내려가게 된 것은 그 탓이 오로지 송(宋)의 무모함에 있는 것이라 다시 누구를 원망하리오.

7조약에 의하여 보호권을 확장한 이토 통감은 통감부의 관계를 개정하고 친히 부통감을 설치케 하고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를 부통감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통감 부재중에는 군사령관이 통감대리로 직무를 행하는 사이에 다소 불변이 있음을 염려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하겠으나 예의(銳意)²⁴¹⁾로 한국의 시정개선을 지도유액(指導誘腋)함에는 보좌역이 필요할 것을 느낀 것이요, 더욱이 한국을 보호, 계발하고자 하는 평소에 품고 있던 뜻을 관철할 결심을 보인 것이라 하겠도다. 그러나 소네 부통감의 내임으로 특별히 신국면을 전개한 것도 없고 상술한 바와 같이 내각은 점차 불통일을 폭로하고 의구심은 날로 증장하는 동시에 군대 해산으로 인하여 시위일대(侍衛一隊)와 친위이대(親衛二隊)의 병변(兵變)은 서부(西部) 경성(京城) 일대를 수라장으로 변하게 하고 해산된 사졸(士卒)은 태반이 폭도로 변하여 지방의 양민은 그 치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성의(誠意)로 한국을 지도, 계발하고자 하는 이토 통감의 안(案)으로 보면 폭도의 봉기와 같은 것은 혹 불가사의(不可思議)라 할지 모르겠으나 군대를 해산함과 같은 것은 득책(得策)이 아니었으니 한국의 군대는 용병(傭兵)이라 국가를 위하여 충의를 다하려고 군대에 응모한 것이 아니요, 다만 구복(口腹)을 충족하기 위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자이거늘 일시에 수만의 군대를 해산하여 생활 방도를 잃게 하였으니 생계를 잃은 그들이 의병에 가담하는 것 외에 호구책이 어찌 있으리오. 우리는 군대를 해산하여 일반 인민의 의구심을 증장케 하고 해산한 병사로 하여금 폭도로 변화케 함보다는 오히려 군대의 힘을 폭도 토벌과 치안 유지의 방면에 유효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 하는 바이로다.

안으로는 이·송의 암투로 내각의 불통일을 폭로하여 송병준의 사직으로 일시 미봉하

240) 참수(斬首) 혹은 관직에서 파면함을 뜻함.

241) 어떤 일을 잘 하려고 단단히 차린 마음을 뜻함.

고자 하였으나 이미 위신이 추락한 이(李) 내각은 사면의 공격을 받아 고립무원의 곤경에 빠지고 밖으로는 폭도가 각처에 창궐하여 혹은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하며 혹은 불궤(不軌)²⁴²⁾를 모색하고 소요가 일어나게 하는 자가 있어 국경 밖에 있는 불령배(不逞輩)와 더불어 서로 호응하여 치안을 문란케 하였다. 이로써 삼년 반의 세월에 걸쳐 심력을 비진(備盡)²⁴³⁾한 서정(庶政)의 개혁은 볼 만한 것이 있으나 위구심은 갈수로 더욱 국내에 충일(充溢)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안녕, 질서를 보전함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토 통감의 한국에 대한 보호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그러므로 다만 일반 한국민이 이토 통감의 보호정책을 신뢰치 아니할 뿐 아니라 일본의 여론도 이토 통감의 대한정책이 완만, 불철저함을 공격함에 이르러 처음 한국통감으로 내임할 시에는 대경륜을 행할 대포부로써 한국을 지도, 계발하여 최고의 원훈(元勳)²⁴⁴⁾이 될 야심으로써 득의만면하였던 이토 통감은 단순히 군복을 모방한 제모와 대검으로써 군인을 선망하던 허영심을 갖춘 것밖에는 아무 얻은 바가 없이 실의양양(失意怏怏)²⁴⁵⁾한 속에서 부득이 해골(骸骨)을 구걸하여 통감의 임무를 사퇴하였다. 세 계적 위인이라는 승배를 받고 동양에 둘도 없는 대정치가라는 정평이 있는 이토 통감이 이와 같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국체의 다름과 국민성이 같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에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도다.

이토의 뒤를 이어 받아 통감의 임무를 맡은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는 스스로 칭하되 불언실행(不言實行)의 사람이라 하나 원래 무위무능의 사람이라. 조참(曹參)이 소하(蕭何)의 법을 어기지 아니함²⁴⁶⁾과 같이 이토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 외에 신제도를 행한 것이 아무석도 없고 민심의 의구심은 반대로 이토의 통감시대보다 증장할 따름이었으니 소네 아라스케 시대에 특히 기록할 만한 사업은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에 위탁한 일 이외에 없도다. 요컨대 이토가 비록 한국통감의 직은 사임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본 정계의 중심 인물인 고로 정부에서도 갑자기 이토의 대한정책에 변경을 가지 못할 지어다. 소네 아라스케 역시 이토의 하료(下僚)인 관계로 자가(自家)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경솔히 실행치 못할 사정이 면전(綿纏)함은 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바

242)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도리에서 어긋남, 반역을 꾀함을 뜻함.

243) 몸과 마음을 있는 대로 모두 씀.

244) 나라를 위한 가장 큰 공훈, 또는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하여 임금이 아껴 가끼이하는 늙은 신하를 뜻함.

245) 실망하여 앙심을 품은 모양을 뜻함.

246) 소규조수(蕭規曹隨). 소하가 만든 법규나 제도를 그 뒤를 이은 조참이 그대로 답습하여 소하가 정해놓은 것을 따랐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라 하겠도다. 그러나 이토가 통감의 직을 사임한 후로부터 급작스럽게 군벌이 활기를 띠고 대두하였음은 가히 속이지 못할 사실이니 현병대에서 현병보조원을 모집하고 군사 경찰로부터 점차 보통경찰로 손을 넓혀 한국의 치안을 완전히 현병경찰의 힘으로써 유지코자 한 일 등이 그 일례라 하겠도다. 내각의 수반에 군벌의 거두인 가쓰라 타로(桂太郎)를 앉힌 육군에서 궁경에 빠진 대한정책의 신국면을 전개코자 함에 육군의 힘으로써 하고자 함이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니리오.

일본의 정부당국자가 대한정책의 신국면을 전개코자 하는 동시에 추밀원(樞密院)의 장의 한직에 있는 한국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도 역시 자기의 대한정책이 실패한 일을 잠시도 망각치 못하여 신국면을 전개코자 하는 일이 뇌리에 왕래치 아니하는 때가 없도다. 그리하여 한국에 대하여 근본적 선결책을 강구코자 할진대 ‘포츠머스’ 조약 관계도 있을 뿐 아니라 패전 후 복수심이 없지 아니할 러시아에 향하여 먼저 타협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몸소 노도(露都)를 방문하여 이 대사명을 수행하려고 노도방문의 계획을 정하고 도쿄를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향하는 길에 경성에서 서북학회(西北學會)의 수령 이갑(李甲), 정운복(鄭雲復) 등을 접견하고 한국의 정국문제는 반드시 군(君)들의 희망에 버금케 할 터이니 내가 러시아로부터 귀래하는 날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하여 은밀히 이·정 등의 일파로 하여금 정국을 수습케 하고자 하는 뜻을 드러낸 일이 있었다. 이토의 심중에 한국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지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나 생각건대 통치권을 위임케 하여 연방의 기초를 확립케 함과 의연(依然)히 차관제도의 보호정치를 행하되 온건하고 또 유력한 민간의 인사로 하여금 내각을 조직케 하여 민심의 일신을 도모코자 하는 두 개의 안(案)이 있었을 듯하도다. 그런데 항상 평화수단을 취하는 이토의 성격과 또는 황실과 관료를 중심으로 하다 실패를 초래한 경험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흥중에는 필히 후안(後案)을 택하였을 듯하니 이갑, 정운복 등에게 말한 바로써 보더라도 그 뜻은 후안(後案)에 있었음을 가히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문제를 선결하기 위하여 노도로 몸소 향하던 이토는 뜻밖에 하얼빈(哈爾濱) 정거장에서 한국인 안중근(安重根)의 독탄(毒彈)에 명중되어 불귀의 객이 된지라. 이토가 암살당한 흥보가 전해지니 안밖에서 경황실색(驚惶失色)하는 동시에 그 범인이 한인이라는 보도에 한국 조정에서는 더욱이 깜짝 놀라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현병대에서는 바로 활동을 개시하여 혹시 연루자가 한국 내에 있지 아니한가 하고 배일의 지목을 받아 온 서북학회의 수령 이갑, 안창호, 김명준(金明濬), 이종호(李鐘浩) 등을 인치 구수(引致拘囚)하는 등 경계가 엄중하여 인심은 자연히 흥흉하고 일반이 일본의 대한정책에 급전직하하는 것이 필유(必有)할 것을 예상함에 이른지라. 그리하여 한성정계는 갑

자기 산우욕래풍만루(山雨欲來風滿樓)²⁴⁷⁾의 관(觀)을 보였도다. 그러한대 이보다 앞서 주의(主義)와 정강(政綱)이 상반한 일진회와 대한협회가 한 차례 악수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석하(崔錫夏)가 일본으로부터 귀국하여 서북학회의 이갑과 친밀해지자 이번에는 면식이 있는 일진회장 이용구에게 접근하여 국사 다난(多難)한 때를 맞아 이완용 내각을 타파하고 신국면의 전개를 도모함에는 먼저 재야당이 일치한 행동을 취하여 공격의 세력을 증대케 함이 가하다 하는 의견으로써 이용구에게 대한협회와 악수함을 권하고 대한협회의 간부 윤효정(尹孝定) 등에게도 역시 상술한 의견으로써 일진회와 제휴함을 종용하여, 먼저 양회의 간부로 하여금 일당(一堂)에 회합하여 의사의 소통을 도모케 한 후 양회에서 따로 정견위원(政見委員)을 선거하여 시국에 관한 의견을 교환케 하는 정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최석하의 알선으로 양회의 제휴가 성립되었으므로 서북학회도 이에 참가할 것이지만은 서북학회는 정당이 아니므로 표명(表明)으로는 참가치 아니하였으나 내용은 서북학회의 간부도 거세(巨細)²⁴⁸⁾를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여 삼파의 합력으로써 이(李) 내각을 봉괴시키려는 모의가 점차 성숙하여 가므로 이완용 일파도 이에 대항책을 강구함에 고심하더니 돌연 이토의 조난사건이 발생하여 경성의 정계는 풍운이 급박함을 고하게 되니 오랫동안 도쿄에서 이(李) 내각 파괴운동에 부심(腐心) 집중하던 일진회 총재 송병준은 시기가 도래하였다 하고 그 동지와 더불어 모의를 모아 정합방선언서(政合邦宣言書)를 발표하고 이용구로 하여금 정합방의 상주문을 한국 황실(韓皇)에게 봉정케 하는 동시에 소네 통감에게도 정합방의 장서(長書)를 제정(提呈)하여 일본의 대한정책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였으니 일진회에서 정합방을 제창한 것은 동경에 있는 송병준이 이토의 조난 후 일본 조야의 여론과 태도가 강경하여 현 상태로는 도저히 수습할 전망이 없음을 간파하고 먼저 정합방을 주창하여 이(李) 내각으로 하여금 진퇴유곡의 궁경에 빠뜨리고자 함이라. 일진회에서 정합방선언서를 발표한 일은 정견위원회를 그 때 종로에 있던 상업회의소 누상(樓上)에서 열고 이토의 조난에 관하여 양회 위원이 의견을 교환하던 그 날이니 일진회에서 지중지 대한 정합방선언서를 발표함에 이르러 이미 제휴한 대한협회에 일차 상의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비밀리 돌연 발표한 것은 그때에 정정(政情)이 비밀을 지킬 수 없음에 연유한 것과 같다. 그리하여 대한협회에서는 그 다음날에 바로 일진회와 제휴를 단절함을 성명하고 정합방 반대의 성명을 내어 다시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가 되었고 다만 대한협회에서 반대할 뿐 아니라 일진회 자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자가 많아 전회장 윤시병(尹

247) 산에 비가 오려니 바람이 누각에 가득하다는 뜻으로, 어떤 일의 징후를 뜻함.

248) 크고 작음.

始炳)을 위시하여 현 부회장 홍긍섭(洪肯燮), 전 부회장 유학주(俞鶴柱), 총무 한석진(韓錫振) 등 동학당 출신이 아닌 중요 간부는 모두 손잡고 탈퇴하였으나 동 회 회원은 대부분이 종교적 훈련을 쌓은 동학당이므로 별로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결속이 여전히 공고하여 중요 간부의 반대 탈퇴도 큰 영향은 주지 못하였다.

일진회에서 정합방의 의(議)를 제창함에 있어 본디 말수가 적기로 이름 난 소네 통감은 일언을 발표함이 없이 오직 형세를 관망하는 태도를 취함에 소네 통감이 형세를 관망하는 태도로 나옴을 간파한 이완용 내각 일파는 고희준(高義駿), 예종석(芮宗錫) 등으로 하여금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이라는 신단체를 조직케 하여 무수히 정합방 반대의 연설을 행하여 일진회 공격의 여론을 고취하고 경성에 있는 일본인 기자단에서는 합방 촉진의 선언서를 발표하고 일진회의 별동대인 국민동지찬성회(國民同志贊成會)에서는 정합방 결정의 건의서를 통감에게 제정하여 자못 한국의 산하에 오직 정합방 찬부(贊否)의 소리로서 충만할 뿐 아니라 일본의 상하도 대한문제(對韓問題)로 논의가 분분하여 의회에서는 대한 방침의 확립을 육박하고 대한동지회(對韓同志會)와 같은 것은 일본 정부의 후경(後勁)²⁴⁹⁾이 되어 속히 근본적 해결을 단행함을 촉구하여 대세는 일한 양국을 합하여 일가가 되게 하지 않고서는 가라앉지 않을 기운을 점차 농후(濃厚)하게 하였도다. 그런데 이토의 장례에는 한국 황실을 위시하여 각 계급을 통하여 모두 대표자를 파송하여 애도의 성의를 표하고 한인의 손에 조난(遭難)함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는 배일의 소요가 더욱 심해졌다. 폭도 삼백여 명이 경부선(京釜線) 이원역(伊院驛)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순천군(順天郡)에서도 폭도가 일본인 십여 명을 참살하고 단양군(丹陽郡)에서도 폭도 육백여 명이 내습하고 개성(開城) 부근에서도 폭도가 철도를 파괴하는 등 많은 사건이 발생하여 치안의 문란이 무정부상태에 근접하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지라. 그러한데 연곡(釐轂)의 아래²⁵⁰⁾에서 일대 흥변이 또 일어났으니 이재명(李在明)이 총리대신 이완용을 백주대로에서 찌른 사건이라. 이완용은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으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외(中外)의 이목을 요동케 하여 물정이 뒤숭숭하고 민심이 불온한 동시에 현 상태로는 도저히 치안을 유지할 전망이 없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였노라.

안중근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진의(眞義)를 오해하여 영토적 야심으로 한반도를 병합하고 조선 민족을 노예로 부리고자 하는 줄로 확신하고 러시아의 힘을 의뢰하여 다시 한국의 국권을 회복코자 하던 일파라. 만약 이토가 노도(露都)에 들어가 러시아의 집정

249) 뒤를 방비하는 병정(兵丁)을 뜻함.

250) 연곡지하(釐轂の下)는 대궐이 있는 곳, 수도를 뜻함.

자와 더불어 충분한 타협을 이루면 러시아를 의뢰코자 하는 한 올의 바람까지 단절함에 이를까 근심하여 감히 대담부적(大膽不適)할 암살을 음모하여 흉행(兇行)을 저지른 데 이른 것이다. 만약 안중근이 과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토를 암살한 결과로 한국이 일본에 병합함을 초래할 것을 알았다면 어찌 이와 같은 무모한 폭거를 하였으리오. 하물며 이토가 노도로 갔던 사명이 우리가 추측한 바와 같이 전술한 대병정책(大併政策)을 다시 확립할 두 개의 안(案) 중에 후안(後案)을 취하고자 함에 있었다면 이 안을 실현치 못하고 마침내 급전직하(急轉直下)하여 병합의 단행을 보게 한 것은 그 원인이 오로지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함에 있다 할 수밖에 없으니 안중근 한 사람의 오해에서 나온 흉행이 원인이 되어 이천만 조선 민족이 똑같이 그 악과(惡果)의 보응을 받음이 아니고 무엇이리오. 세상일은 모두 육안으로써 능히 관찰치 못할 것이니 과거와 역사를 살펴볼 지라도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찌 다 인력으로써 능히 한 것이리오. 생각이 이에 이르러 오직 운과 명이라는 것을 모두 신비함에 돌릴 수밖에 없도다. 이토 및 그 수원(隨員)으로 말할지라도 노령 방면에 배일하는 조선인이 다수 재류함을 알면서 이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침내 흉변을 야기하였으니 명(命)이라 할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이재명은 일진회에서 제창한 정합방론에 반대의 뜻을 품고 이용구를 암살할 목적으로 경성에 들어왔다가 이완용의 밀사 고영희(高永喜)로 하여금 일본 정부에 향하여 한국 황실은 도왕(島王)으로 봉하고 병합을 단행하자는 의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이에 흥분하여 마침내 이용구 암살의 뜻을 뒤집어 이완용을 짜르기에 이르렀으니 이 역시 명(命)이라 함이 가(可)하지 아니한가. 이완용이 병합단행의 의(議)를 제출하였다 한 보도에 대하여는 송병준 일파의 중상(中傷)에 출발한 것이라 하는 설도 있었으니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이는 상세히 알지 못할 것이나 하여간 이·송의 알력이 점차 상호 구무중상(構謠中傷)²⁵¹⁾함에까지 이른 것은 사실이었도다.

일진회에서 정합방론(政合邦論)을 제창한 후 방관의 태도로 대세의 추향하는 바를 관망하던 일본 정부에서 사위(四圍)에 사정이 고식적이어서 도저히 미봉책의 수단으로는 한국의 치안을 유지하고 보호정치의 실적을 거두지 못할 것을 간취하고 단연히 근본적 해결을 행하고자 뜻을 결정하는 것 같았으나 한국의 민심이 어떻게 동요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민간의 유력자를 회유하여 그들에게 정권을 주고 시국 해결을 맡겨 민심을 완화코자 하는 계획을 세웠으니 서북학회의 일파를 회유하여 일진회와 제휴케 하고 이(李) 내각을 대신하여 서북학회와 일진회로 하여금 연립내각을 조직케 하라는 계획이

251)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 모함하여 남의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 중상모략과 같은 뜻.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라. 일진회는 그 수가 백만이라 칭하나 전부가 무직계급에 속한 향맹(鄉氓)²⁵²⁾이요 지식계급이라고 칭할 만한 사람이 드물었으므로 원래 혼자 힘으로써 능히 내각을 조직할 실력이 없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하물며 정합방문제로 중요 간부 5, 6명을 잃었으므로 더욱 실력이 박약하였다. 서북학회의 일파는 비록 배일(排日)의 태도를 취하였으나 보호정치의 시설이 민의를 무시하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함에 만족치 못한 것을 반대함이요 동양의 대세가 일본과 한국의 분리를 허락치 아니함을 잘 알며 또 해외에 유학한 사람이 다수이므로 당시 각 단체 중에 지식계급을 망라한 측면이 있었다. 대한협회와 같은 단체는 서북 출신의 간부 및 회원을 빼면 노후한 관리의 퇴물밖에 인물이 없다 하여도 무방하겠으므로 일본의 당국자도 잠재세력이 가장 크고 신진예기(新進銳氣)의 선비가 많은 서북학회를 향하여 특히 회유의 방책을 사용코자 함이라.

당시에 민당(民黨)을 조직할 비밀의 임무를 맡은 사람은 현병대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였으니 군벌의 총아요 수상 가쓰라 타로(桂太郎) 및 육군대신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현병대사령관으로 한국에 내임함은 모두 일본 정부의 대한정책의 확립에 지밀지대한 관계가 있는 것은 물론이라. 그리하여 아카시(明石)는 이토 암살사건에 혐의로 피수(被囚)하였던 이갑, 안창호, 이종호, 김명준 등 서북학회의 수령을 방환(放還)함에 대하여 일진회장 이용구로 하여금 종중알선(從中斡旋)의 노고를 수행케 하여 더욱이 양자의 관계를 친밀케 하고 이갑 등으로 하여 친히 정당을 조직케 하여 민심 완화의 임무를 맡기고자 하였으니 이를 보더라도 당시까지는 병합을 단행할 방책은 정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도다. 그러한 대 서북학회 일파의 신정당을 조직할 계획에 대해서는 누차 비밀회의를 열게 하고 이를 협의하였으나 찬부(贊否)가 상반(相半)하여 쉽게 결정됨을 보지 못하였으니, 안창호와 최린(崔麟)은 이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고 정운복, 김명준, 최석하는 찬의(贊意)를 표하였다. 그런데 은연 중 수령의 지위에 있어 이에 재결(裁決)을 줄 만한 이갑은 우유부단하고 시일이 경과하는 사이에 회의석상에서 간신히 반대의 뜻을 비춤에 지나지 않아 안창호는 주야를 불구하고 비밀리에 이갑에게 정당조직이 불가한 것을 역설하되 “일진회와 제휴하여 일본의 대한정책을 옹호하는 여당이 되면 지금까지 일반이 송양하는 것은 땅에 떨어져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오. 지난날에 친근하던 부하까지 반항공격의 기세로 나올 것이니 누구와 더불어 일을 함께 하겠는가” 하여 이갑으로 하여금 호의(狐疑)²⁵³⁾의 마음을 품게 하여 자금(資金)이 조달되지 못함에 핑계를 대고 일을 지체하는

252) 시골 백성을 뜻함.

253) 매사에 지나치게 의심함을 이르는 말.

데 반하여 최석하 등은 속히 결행할 것을 촉구하여 이갑은 양 손에 떡을 든 모양으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고민하는 중에 어언 수개월이 지났다. 여기에 서북학회 일파가 신정당을 조직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대한협회와 이완용 일파에서는 신정당 조직 방해 음모를 하여 마침내 신정당 조직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저들의 음모가 성공하여 이갑으로 하여금 해외로 망명케 한 일이 그것이로다.

만일 서북학회 일파로 하여금 신정당을 조직하면 서북5도에 있는 대한협회의 회원은 대부분 탈회하여 신정당으로 돌아갈 터요, 그 지부는 바로 신정당의 지부로 환서(換書) 될 것이니 대한협회에서 저사위한(抵死爲限)²⁵⁴⁾하고 신정당의 조직을 방해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 말할 수밖에 없고 이완용 일파로 말하더라도 신정당이 조직되는 일으면 정권을 피탈(被奪)하여 정적인 송병준에게 세력이 돌아갈 것이 명백하므로 역시 방해를 시도 코자 함은 자명한 형세라 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이갑과 가장 친밀하고 이갑이 가장 존경하는 유길준(兪吉濬)으로 하여금 이갑을 설득하여 신정당조직의 계획을 파괴케 하였으니 어느 밤에 유길준이 이갑과 밀회하여 이갑의 원수를 파악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이조(李朝)가 망할 것은 천운(天運)이라. 어떻게 하기 불가능한 것은 나도 충분히 아는 바이지만 지금 그대가 신정당을 조직하고 내각에 들어가게 되면 그대의 손으로써 이조(李朝)를 망하게 할지니 이것이 어찌 사람이 차마 할 만한 일이리오. 청컨대 그대는 깊게 생각하라. 한때의 정권을 탐하여 청사(青史)에 오명을 남김이 만년에 이르도록 그침이 없게 함은 그대를 위하여 취하지 않는 바이니 그대가 만약 나의 말을 용인치 않을지면 원컨대 오늘 저녁부터 나와 교류를 끊어라” 하여 원래 의심하던 마음이 있는 이갑으로 하여금 단연히 신정당조직의 계획을 내던지게 한 것이 즉 신정당조직 계획을 파괴코자 한 대한협회 및 이완용 일파의 음모의 성공이라 하는 바이로다. 유길준의 말에 감동한 바 되어 신정당조직의 계획을 포기할 뜻을 결정한 이갑은 사위(四圍)의 사정이 신정당을 조직치 않고는 한국 내에 안거하기 불능함을 간취하고 마침내 해외로 망명하기로 책략을 정하고 두세 명 동지에게 그 뜻을 고한 후 안창호, 이종호 등과 함께 잠적하기로 하여 이갑은 신정당조직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용천 등지에 간다고 칭하고 이종호를 동반하여 경의선 열차를 타고 국경을 탈출한 후 약 일주일이 경과하여 안창호는 김지간(金志侃)을 동반하고 수로(水路)를 취하여 마포에서 일엽소선(一葉小船)을 타고 역시 국외로 도주한지라 이(李) · 안(安) 등이 망명한 지 십여 일 후 최석하, 정운복 등은 비로소 그들이 친구를 속이고 홀로 탈주함을 접하고 분개함을 이기지

254) 죽기를 작정하고 저항함을 뜻함.

못하였으나 증(贊)이 이미 파(破)한지라 돌아보아야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그리하여 그들의 신정당조직의 웅도(雄圖)는 실패에 이르고 정운복은 이토의 국장(國葬)에 참례하였다가 귀로(歸路) 오사카(大阪)에서 언어를 불근신(不勤慎)한 죄의 추구로 대한협회에서 출회(黜會)의 형을 받고, 죄석하는 혼자 힘으로 어찌할 계획이 없어 부득이 만주로 유랑하게 되었으니, 제갈량(諸葛亮)이 말한 모사(謀事)는 사람에게 있고 성사(成事)는 하늘에 있다는 탄식이 실패자의 양천통곡(仰天痛哭)하는 공통어가 아닐까.

이갑, 안창호 등의 탈주로 인하여 아카시(明石)로 하여금 배일파(排日派)의 거두를 회유하여 먼저 민심을 완화하고 뒤이어 한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꾀하고자 한 일본 정부의 계획은 실패에 이르고 다시 한국의 민간 측에 대해서는 회유를 시도하고 완화를 도모할 여지가 없게 된지라. 이제야 단연히 한국의 치안을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보전하기 위해 전혀 일본의 독력으로써 직접 강행할 정책을 수립하여 그 준비에 착수하였으니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의 사직을 허락하고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로서 한국통감을 겸임케 한 일이 그것이라. 육군대신인 데라우치 마사다케에게 통감을 겸임케 한 것은 즉 대한정책이 확정한 편린을 보인 것이요. 따라서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도 족히 추측할 것이라. 그런데 일진회의 일파는 데라우치가 통감 인수(統監印綬)²⁵⁵⁾를 허리에 두른 것에 흔희무량(欣喜無量)하여 자파가 제안한 정합방 문제로써 시국을 해결하는 동시에 정권이 자파에 돌아감을 확신하였으니 그들이 시국을 살피는 현명함이 없음은 민소(悶笑)²⁵⁶⁾할 것 외에 없도다. 그러나 동(同) 회원 중에도 시국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자가 없지 아니하여 이용구에게 충고한 바가 있었으나 이용구는 오직 송병준의 말만 신뢰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가 병합 후 한을 품고 병을 스마(須磨)²⁵⁷⁾에서 치료하다가 마침내 이역(異域)에서 불귀의 혼이 되었으니 애석하다. 이용구에게 병합 전 수개월간에 각성한 바가 있었으면 일진회는 그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따라서 그도 스마의 여백(旅魄)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 아닌가. 그러한데 다만 일진회만이 능히 시국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재야 정객은 모두 선견지명이 없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니 아카시(明石)가 서북학회를 회유하여 신정당을 조직케 하다가 실패한 후 민원식(閔元植), 고희준(高義駿)이 정우회(政友會)라는 신정당을 조직하고 이방협(李邦協)이 진보

255) 인수(印綬)는 관직에 임명될 때 임금에게서 받는 신분(身分), 벼슬의 등급(等級)을 나타내는 관인(官印)을 몸에 차기 위(爲)한 끈을 뜻함.

256) 어리석음을 비웃음을 뜻함.

257) 일본 고베시 서부에 위치한 구(區).

당(처음에는 사회당이라 칭하였다가 당국의 주의로 개명한 것)이라는 한 단체를 발기했음을 볼지라도 일본의 대한(對韓) 정책은 정당을 절대 부인할는지 알 수 없고 도리어 정당의 세력으로써 정권에 한 부분을 물들이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데라우치 통감은 부임하기 전에 먼저 훈전(訓電)으로써 한국조정(韓國朝廷)에 대하여 경찰권 위임의 의견을 제출하여 각서로써 한국의 경찰권을 일본 정부에 위임하게 하고 경찰제도를 개혁하여 현병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로써 경무총장을 겸임케 하고 현병 본위의 경찰제도를 시행하였으니 소위 현병경찰이 그것이라. 비록 빙궁하고 쇠패(衰敗)하였다 할지라도 이천만이라는 민중을 가진 한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에 있어 먼저 치안유지의 직권을 가진 경찰권을 수중에 장악하고자 함이 어찌 현명한 책략이 아니리오. 경찰권을 위임케 함은 병합의 준비라기보다 차라리 병합의 단계를 밟은 것이라 함이 낫겠다. 초기 보호정치시대에는 통감은 한국의 외교사무를 관장하고 내정에 관해서는 지도하는 권한만 있을 뿐이요, 행정기관 각 부에 단순히 고문을 둔 것으로 그치던 것을, 제2기 보호정치시대에는 통감이 시정개선에 지휘권을 가지고 중요한 정령은 모두 통감의 승인을 경과케 하고 추요(樞要)의 관리는 일본인을 임용하여 실권을 장악케 하였으나, 이 제도로써 능히 한국이 치안을 유지치 못하여 부득이 병합을 단행함에 이른 것은 소진장의(蘇秦張儀)²⁵⁸⁾가 다시 살아올지라도 보호정치의 실패가 아니라고는 변명치 못하겠도다. 일본의 대한정책을 오해하는 자와 같이 제1기의 보호정치와 제2기의 보호정치가 모두 병합을 단행할 복선(伏線)으로 한국의 실권을 승당입실적(升堂入室的)²⁵⁹⁾으로 가지게 한 것이니 일본이 대한정책은 처음부터 한국을 병탄할 영토적 야심에서 출발한 것이라 한다면 혹은 보호정치의 실패라 할 것이 없다 할지나 우리가 믿는 바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것은 부득이하게 출발한 일이라 하노니 만약 제1기 보호정치시대에 실책이 없었으면 제2기의 보호정치를 행할 필요가 없고 제2기의 보호정치를 확장함에 오산이 없었으면 병합을 단행함에 이르지 아니하고도 일한 양국은 일가(一家)와 다름이 없이 융합하고 친선하여 한국의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증진하는 동시에 동양 평화에 공헌함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이오. 따라서 중국의 일본에 대한 의구심도 발생치 아니하였을 것을 확신하여 의심치 아니하는 바로다.

제1기에 보호정치를 시행함에 있어 정책을 그르친 일은 전편에 이미 상술한 바라 다시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헤이그밀사 사건이 발생한 후 제2기 보호정치시대에 들어가고자 함에 있어 이토 통감이 또 복대실책(復對失策)을 편 것은 이를 일언치 아니치 못하겠

258) 전국시대 대표적인 변론가 소진(蘇秦)과 장의(張儀)를 뜻함.

259) 마루에 오른 다음 방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일에는 차례가 있음을 이르는 말.

으니 이는 일본의 대한정책에 영토적 야심이 있는 것을 의심하는 자로 하여금 그 의심을 눈녹듯 풀어 줌에 일조(一助)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어찌 변(辯)을 좋아하여 죽은 시신에 채찍을 가하리오.

헤이그밀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한국 황실이 일본을 신뢰치 아니하는 것을 폭로 무여(無餘)한 것이다. 일찍이 한국 황실을 중심으로 하여 시정개선의 실적을 거두지 못할 것은 명료한 사실인데 오히려 한국 황실을 중심으로 하여 단순히 한국 황실의 양위(讓位)로써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 애자(愛子)로 하여금 제위에 즉위케 하여 그 위엄 있는 명령으로 인민을 압제코자 함이 제1기 보호정치시대와 변함이 없는 것이 실책의 하나요, 헤이그밀사 사건에 대하여 비록 이완용 내각에서는 이를 알지 못한 일이고. 단, 그 발생은 비록 이완용 내각 시대이나 밀사파견의 사실은 박제순 내각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무릇 국정에 관한 일은 내각에서 모두 책임을 질 것이요 주권자로 하여금 책임을 부과 캐 함은 불가한 것이니 밀사사건 발생 당시의 내각 총리대신이요 밀사파견 당시의 각료인 이완용은 도저히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한데 여전히 이완용으로 하여금 혼들림 없이 내각의 수반에 앉아 칠조약 체결의 중책을 맡게 한 것은 실책의 둘이요, 신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본인을 관리로 임용하게 하여 차관정치를 시행한 것은 일면으로 보면 실권을 장악하여 직접 행정국에 맡기면 시정개선의 실적을 거둠에 유효할 듯 하다. 그러나 무릇 정치는 다만 사무 뿐을 표준할 것이 아니라 일반 민심이 기쁘게 복종할 것과 반항할 것을 살피는 것이 요무(要務)이나 단순히 행정사무의 능률을 증진함을 목표로 하고 일본인을 관리로 임용하여 인민의 반항심을 도발케 한 것이 실책의 셋이오. 차관정치를 시행한 후 한국 황저를 일본에 유학하게 하고 한국 황실을 각지로 순행케 하고 이에 배종(陪從)하여 이로 양국의 친선을 가하고 민심의 열종(悅從)을 구하고자 한 것이 실책의 넷이라고 우리는 단연함을 꺼리지 아니하노라.

한국 황실의 일본을 신뢰치 아니할 것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추측할 것이거늘 “한국의 시정 개선은 완전히 경(卿)의 지도를 신뢰한다” 하는 꿀과 같은 감언에 속아 헤이그밀사 사건과 같은 불의의 재앙을 당하고도 오히려 황실중심주의로써 정책을 속행코자 한 이토의 현명치 못한 것은 그 후 한국 황실의 생질 조남승(趙南升)이 해외로 도피하고자 할 때 그를 체포하여 모국과 비밀히 결약했던 외교문서 및 기타 비밀서류를 무수히 압수하고 옥새까지 발견한 일을 보면 더욱이 이를 증명함에 충분하니 제일의 실책은 이토가 천하(泉下)²⁶⁰⁾에서라도 필히 그 하명(下明)을 자괴할 것이다. 헤이그밀사 사건의 책임을

260) 황천(黃泉)의 아래라는 뜻으로, 죽어서 가는 저승을 이르는 말.

당연히 부과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완용(李完用)으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그 직무에 있게 한 것은 친일파나 망명객이나 또는 관료파 중에 정치적 수완이 이(李)와 견줄 자가 없어 정권을 출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이 원인인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 인민이 소생하여도 기수(基數)가 이천만이라 사람이 없음을 어찌 근심하리오. 오직 자기의 총명이 옹폐됨을 인함이라 할 수밖에 없으니 정치의 경신(更新)을 도모할 때에 책임을 면치 못할 이 완용(李完用) 내각을 경질하고 신진유위(新進有爲)의 인물을 등용하여 민심의 일신을 도모치 못한 것도 실책이 아님을 면치 못할 것이 아닌가. 이토의 심중에는 오직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여 동양평화의 영원한 보전을 바라는 것 뿐이요, 단단무타(斷斷無他)²⁶¹⁾하다 할지라도 한국의 상하는 보호조약 아래로 일본의 영토적 야심이 있음을 시기하고 의심하여 위구심(危懼心)이 날로 증가하는 즈음에 일본인을 관리로 임용케 하여 일반 인민으로 하여금 더한층 의구심을 품게 하고 따라서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고 배일(排日)의 운동이 격증케 한 것은 이 역시 실책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한국 황태자를 일본에 유학케 함에 있어 일반 인민은 일본에 인질로 갔다는 풍설을 망신(妄信)²⁶²⁾하고 한국 황실의 남순(南巡) 시 부산에서 군함을 오르게 함에 대하여는 순행(巡行)이라 칭하고 일본으로 도왕(渡往)케 한다는 등 황당무계한 소문이 유포된 것을 생각할지라도 이토가 한국 황실과 인민을 접근케 하여 민심의 완화를 도모하고 일한 양국의 친선을 표명코자 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를 실책이 아니라 하면 무엇을 실책이라 하리오. 다음의 이유로써 우리는 제2기 보호정치시대에 있는 이토의 실책을 네 가지로 꼽고자 하는 바이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양책(良策)이 있었을까? 현대의 정치는 다수를 표준으로 하지 아니함이 불가하니 즉 민중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전제정치로는 도저히 양책을 거두지 못할 것은 쇄론(贅論)²⁶³⁾을 필요할 바가 아니라. 그러나 정도가 유치한 민중에게 보통으로 참정의 권리를 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과 같이 위험하니 유치한 민중에게는 위정자가 선하게 조종하는 기술을 사용치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하노라. 한국의 민지(民智)는 유치하지 않다고 말하지 못할지나 정치에 참여코자 하는 욕망은 문명한 인류에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또한 살피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토로 하여금 제2 보호정치로 차관제도를 시도코자 할 즈음에 단순히 사법사무를 행정사무와 구별할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도 설립하되 상하 양원으로 의회를 건설하고 정권의 세력으로써 당파를

261) 오직 한 가지 신념으로 다른 마음이 없다는 뜻.

262) 옳지 못한 것을 그릇되게 함부로 믿음.

263)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을 뜻함.

조종하여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의회의 대다수를 점유케 하고 의회의 결의와 협찬으로써 국무를 수행케 하였으면, 차관제도로 실권을 장악하지 않았을지라도 국정을 원활히 집행하고 민심은 자연히 완화되어 시정 개선의 목적을 관철하고 일한 양국의 친밀한 관계를 증진하였을 것이 의심이 없다 하노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였으면 제도는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여 다만 한국 황실의 양위로써 만족한다 하지 않고 통치권을 위임케 한 후 연방제도를 확립하고 신진감능(新進堪能)의 인재를 택하여 내각을 조직케 하고 당파를 이용하여 의원정치의 완성을 기약하였으면 다시 그 이상의 성공을 보았을지도 또한 알 수 있었을 것이라 하노라.

그런데 계획이 여기에서 나오지 못하여 실책에 실책으로써 더하고 안중근(安重根)의 흉행과 이갑(李甲) 등의 탈주로 인하여 마침내 부득이하게 병합을 행함에 이른 일을 추억하면 과거의 일은 모두 숙명에 돌리고자 하는 생각이 스스로 생겨남을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겠도다. 독립부식의 시대로부터 병합에 이른 사이의 경로를 보면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청국과 전쟁함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선의 독립을 부식함에는 조선의 상하가 반드시 대부분 열복(悅服)하리라 함에 반하여 조선인은 ‘일본이 우리의 독립을 부식함이 어찌 진의에서 출발함이리요, 이는 우리를 병탄코자 하는 계책이라’ 하여 일본인은 신뢰를 바라나 조선인은 시기와 의심으로써 갚았도다. 일본인이 생각하되 ‘조선인이 사청부로(事清附露)코자 하여 우리를 신뢰치 아니함은 반드시 민비일파의 소행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국의 독립을 부식코자 하는 우리를 어찌 신뢰치 아니하리 오’ 하여 민비의 당우(黨羽)를 제거코자 하면 조선인은 거국(舉國)이 살모(殺母)의 원수라 하여 배척하였다. 일본인이 독립 부식의 실패를 겨울삼아 외교권을 받고 보호정치로써 자립할 힘이 없는 한국을 지도, 계발하여 부강의 국(國)과 행복의 민(民)이 되게 하고자 하니 누가 신뢰치 아니하리오 함에 대하여 조선인은 ‘이가 병탄할 계단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일청전쟁에는 독립을 부식코자 하던 것을 일러 전후에는 보호정치로 고치게 할 이유가 있을까’ 하여 의구하며 원망함으로써 답하였다. 반면 일본인이 조선인의 신뢰치 아니함을 깨닫고 실권을 받아 정치의 개혁을 행하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사실(事實)로써 열복(悅服)케 하리라 하고 차관정치를 행하면 조선인은 말하되 ‘보아라 이가 잡식(蠶食)의 계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여 암살과 소요로써 이것에 대해 갚고 일본인이 황실중심주의로 관료파에게 정권을 줘서는 도저히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겠다 하여 민간의 지사라는 자를 회유코자 하면 조선인은 생각하되 ‘이 역시 만착수단(瞞着手段)²⁶⁴⁾이라 우리에게 정권을 준들 우리의 뜻대로 어찌 능히 정치를 행하리오. 오직 응견(鷹犬)²⁶⁵⁾에 지나지 못하리라’ 하여 응대치 아니하니,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직접 한국

의 치안을 유지코자 하여 병합을 단행한 일본인의 거사가 어찌 부득이하게 출발한 일이 아니리오. 대개 강약의 입장과 주객의 관찰이 서로 다르고 믿고 의심하는 바가 서로 배치되면 마지막에는 가히 만회치 못할 형세에 이르나니 이가 어찌 일한 양국에만 국한된 일이리오. 위정자가 관찰하는 바에 그르침이 있어 국책을 수립함에 소호(小毫)라도 실패함이 있으면 호리(毫釐)²⁶⁶⁾의 차(差)에 천리(千里)의 수(殊)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니 이것이 바로 소위 위정자의 책임이 중대하다 하는 바로다.

〈이상 (5), 이하 (6) 누락〉

8. 무단정치(武斷政治)와 소요

일한병합을 단행한 후 통치의 임무에 응한 데라우치(寺内) 통감의 병합 정신을 몰각하고 시정 방침을 착오한 것은 다만 우리 조선인뿐만이 이를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중에도 그 조치의 그릇된 것을 지적한 자가 없지 아니하니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군이 저술한 「선만(鮮滿)의 경영(經營)」에서 ‘병합 당시의 3대 실착(失錯)’이란 제하의 한 구절을 뽑아 적으면 다음과 같다.

(전략) 병합 당시에 조치를 그르친 것은 셋이니 하나는 악정(惡政)의 종가(宗家)와 그 방조자인 약탈계급에 명예의 존영(尊榮)을 허락하고 악정에 시달리게 된 애처롭고 무고한 상민(常民)계급을 괴롭힌 것이요, 둘째는 서북인에게 극단의 간섭, 박해를 가하여 이를 강외(疆外)로 구축한 것이요, 셋째는 조선 사정에 어두운 무단적 관료가 당연히 자기의 이목(耳目)에 의해 사리판단이 옳고²⁶⁷⁾ 조선 사정에 정통한 수많은 지사(志士)를 추방한 것이라. 하물며 경제적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시대에 회사령(會社令)이라는 것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악령(惡令)을 만들어 사업의 생성을 방해하고 뿐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살해함이리오. 그런데 이는 모두 무단주의(武斷主義) 탐정(探偵)정책의 한 뿌리로부터 생긴 해독의 지엽(枝葉)이로다.

(전략) 특히 이조(李朝) 말엽에 있어 외척 민씨가 국병(國柄)을 장악함에 이르러 횡사

264) 만착(瞞着)은 남의 눈을 속여 넘김을 뜻함.

265) 사냥 때 부리는 매와 개. 주구(走狗).

266) 자 또는 저울 눈의 호(毫)와 이(釐). ‘조금’, ‘아주 조금 만큼’의 뜻.

267) 원문에 ‘경중(敬重)함이 가(可)한’이라 쓰여 있음.

(橫肆)²⁶⁸⁾를 극대화하여 그 일족은 매가(每家)에 법사(法司)가 있고 매인(每人)이 법관이 되어 악형(惡刑)의 도구로써 무고한 인민을 금박(擒縛)²⁶⁹⁾, 태장(笞杖), 고문(拷問)하여 거의 호랑(虎狼)²⁷⁰⁾이와 같이 전 도(全道)에 산재하였도다. (중략) 아무리 더러운 욕지거리를 생각에 두지 아니하고 굴종에 길들여진 무력한 조선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종류의 억압에 대하여 아무런 반동을 야기치 않을 도리가 없는지라. 관권의 횡포가 그 극에 달함에 누백년에 쌓인 분노가 일시에 병발(迸發), 민씨 일가 등 노론(老論)에 속한 시랑(豺狼)²⁷¹⁾이의 집단에 응징의 일권(一券)을 가하려고 혁명의 정기(旌旗)²⁷²⁾를 뒤집어 일으키게 한 자 먼저 최제우(崔濟愚)가 있고 후에 최시형(崔時亨)이 있으니 이용구(李容九), 손병희(孫秉熙)는 최시형(崔時亨)의 좌우익이었도다. (중략) 최제우, 최시형의 혁명운동 내지 대원군의 개혁행위가 간헐적으로 경련, 발작하는 이면에는 중대(重大)를 사회적 혁명의 기운이 불지불식간에 암천묵이(暗遷默移)하였다. (중략) 일청, 일러의 양역(兩役)은 자연히 연소 폭파할 혁명의 기운을 약속하지 않고 별도로 전(轉)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고로 병합 당시에 일척안(一隻眼)²⁷³⁾을 갖춘 위정자가 국면에 응하였으면 이 사회적 혁명의 기운을 조장하여 과거 수백 년간에 걸친 악정의 종가와 그 방조자를 혁명의 거화(炬火)에 던져 제거하고 이들 권간(權奸)이 늑탈(勒奪)한 전토(田土) 기백만 정보(町步)를 탈환, 몰수함으로써 억눌려 굴복하여 능히 펴지 못하던 민심이 울분을 터뜨려 쌓인 분노를 흩어지게 하였을 것이로다. 그런데 데라우치 통감(寺內統監)은 그 독단적 관료사상으로써 한둘의 속료(屬僚)에게 내명하여 부식(腐蝕)된 가보계도중(家譜系圖中)에서 문엽격식(門葉格式)이 높은 자만을 전색추탁(詮索抽擢)²⁷⁴⁾하여 악정의 종가와 그 방조자에게 명예의 존영(尊榮)을 주고 상민계급을 한각(閑却)한 것은 실로 용납치 못할 중대한 과실이로다.

(전략) 서북인의 특성인 표한지강(標悍鷙強)²⁷⁵⁾한 기상은 이완용(李完用)을 찌른 이재명(李在明), 이토 공(伊藤公)을 저격한 안중근(安重根)을 생기게 하였으나 이 두 사람을 나오게 한 고로 일률적으로 서북인을 말하되 음모의 집단이라고 속단함은 매우 부당하

268) 횡자(橫恣)와 같은 뜻. 즉 제멋대로 놀아 막되다는 뜻.

269) 사로잡아서 묶음.

270) 범과 이리라는 뜻으로, 욕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컬음.

271) 승냥이와 이리라는 뜻으로, 호랑(虎狼)과 같이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사람을 비유함.

272) 정(旌)과 기(旗)를 아울러 이르는 말. 깃발.

273) 한 눈, 외눈. 비범한 시선 · 안목을 뜻함.

274) 물어서 찾고, 추천하여 장려함을 뜻함.

275) 날래고 사납고, 강하다는 뜻.

도다. (중략) 만약 일한병합의 근본 정신이 평민의 질고(疾苦)를 구제향상(救濟向上)함과 함께 원기가 있는 청년과 제휴하여 구래에 얹매어 있는 정실(情實)을 절단배격(截斷排擊)하여 수백 년의 폐단을 숙청소탕(肅清掃蕩)하고 진개의의(眞個意義)가 있는 ‘신(新)조선’을 전개함에 있었다면 모름지기 조선인 중 원기의 중추인 서북 청년을 기용하여 조선인의 생활향상과 사상교화의 요충에 활동케 함이 가(可)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일이 여기서 나오지 아니하고 관료사상의 독단적 전권으로 상당히 가보계도(家譜系圖)를 모색하여 수작(授爵)의 표준과 선서(選敍)²⁷⁶⁾를 이에 취한 고로 서북인은 일괄 배제되어 여기에 있어 불평유맹(不平流氓)의 민(民)은 일본 정부가 심히 믿지 못할 것을 알고 눈을 흘기며 신정(新政)에 반항함을 시작하였도다. 하물며 현병경리(憲兵警吏)의 무리가 서북 청년만 보면 이재명(李在明), 안중근(安重根)과 연루시켜 의심하고 질책하고 간섭 압박이 미치지 아니한 바가 없었으므로 수백 수천의 호(虎)는 이미 블라디보스톡(浦鹽)으로 피하고 간도(間島)로 달아나고 노도(露都)로 떨어지고 샌프란시스코(桑港)로 흘러 배일화인(排日禍因)은 세계의 전토에 광포되었도다.

(전략) 데라우치 통감은 평민계급을 무심히 내버려두고 청년의 원기를 배제하고 조선의 지식을 구축하고 홀로 남산(南山)의 정변(頂邊)에서 첨두(尖頭)를 솟게 하면서 천하의 일을 오직 호령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도다. 3월 소요가 그 당일까지 아무런 첨보를 접하지 못한 이유가 모두 스스로 농아(聾啞)²⁷⁷⁾의 고립에 빠지게 한 총독정치의 당연한 숙명에 외에 아니하도다. 데라우치 총독은 이와 같이 하고 노후무위(老朽無爲)의 양반을 상대로 하여 이천만 민중에게 무슨 선정을 행하겠는가. 조선인의 다수는 미신(迷信)에 생활하나니 미신을 도외(度外)하고 조선인의 생활을 이해함은 어렵도다. 그들의 공복에 음식물을 투입함이 급무임과 같이 그들을 미신에서 구제함은 가장 긴요하고 또 곤란한 사업이라 총독부의 관리로 과연 이 점에 착목(着目)한 자가 있는가, 혹은 구관조사회(舊慣調查會)에서 혹은 각지의 공아(公衙)에서 일응(一應)의 조사는 이를 시도할 터이나. 그러나 그 조사를 기초로 하여 행정의 현직자에게 이를 이해케 하였는가. 조사보고서를 합철(合綴)하여 이를 고각(高閣)에 귀속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최초부터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아니한가. 조선을 통치하고자 하면서 조선인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태평함을 끌어오고 또 강제로 얹매는 조선인의 미신을 털끌도 이해치 못하고 무엇을 표준목적으로 하여 조선인의 생활을 향상 교화하고자 하겠는가. (중략) 만약 그 해독이 미치는 바가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일 개인에 그치면 다망(多忙)한 금일에 저자(著者)가

276) 서훈을 가려 뽑는다는 의미임.

277) 귀머거리와 병어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어찌 평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 위가 없는 마사다케(正毅) 등의 수흔족적(水痕足跡)²⁷⁸⁾을 논할 겨를이 있으리오. 그는 일본 최초의 세계적 시련(試鍊)인 ‘대일본’ 실현의 제일보에서 만회치 못할 중대한 유망(謬妄)²⁷⁹⁾을 벌족적(閥族的) 인연(夤縁)에 의한 권력으로 강행하여 일본국가로 하여금 백년에도 능히 보상치 못할 화근을 부식(扶植)한 국가를 해친 죄인이므로 후대 자손을 위하여 무량수(無量壽)인 국운을 위하여 죽은 시신이라도 편치 아니치 못함이로다. (하략)

일본인 중에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국정을 그르친 죄를 말하여 그 사체를 매질하고자 하는 자가 어찌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군 한 사람에 그치리오. 진실로 현대의 정치는 민중을 본위로 하지 아니하고 독단전제함의 불가함을 아는 자라면 누구를 불문하고 데라우치의 무단정치에 대하여 반대치 아니할 자가 없으리라 하노라. 그러나 데라우치(寺内)의 무단정치가 반드시 악의로 악정을 행한 것이 아니요 뜻은 선하나 정치는 악하였다는 함을 알 수 있으니 데라우치는 조선 민중을 무단(武斷)으로써 억압하여 반란의 예방을 유일한 주된 목표로 하였으나 조선 민중을 교육하는 근본 방침인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을 보면 제2조에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趣旨)에 기반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할 것을 본의로 함」이라 하였으니 이는 조선인을 식민지의 토인(土人)²⁸⁰⁾으로 대우치 아니하고 내지인(内地人)²⁸¹⁾과 아무런 차별이 없이 교육칙어의 취지에 기반하여 충량한 제국 신민을 육성하는 교육을 시행한다 함이라. 병합 당시에 조선인을 어떻게 교육함이 가(可)한가 함은 대문제이었으니 조선인은 식민지의 토인이라고 교육함이 불가하고 또는 교육하더라도 특종의 목적으로써 교육함이 가하고 일본인과 동일한 목적으로써 교육함은 불가하다는 논자도 결코 적지 않았는데 데라우치 총독은 대담하게 중론을 배제하고 교육 방침을 확정하여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교육칙어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한다 함을 천명하여 조선인 교육의 대목적을 규정한 것은 일본이 대만(臺灣)을 영유한 지 8년 후까지 아직 대만의 교육 방침을 확정치 못하였음에 비하면 격심한 차이가 있다 하겠다. 대만을 영유함과 조선을 병합한 것을 동일하게 논하지 못할 것은 여러 말이 필요할 바가 아니거니와 대만의 교육 방침이 대만 영유 후 8년이 경과하도록 확립되지 못한 것은 그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대만의 각 지방청 학사관계자를

278) 물자국과 발자국을 뜻함.

279) 이치나 도리에 어긋나 종잡을 수 없음.

280) 식민지 원주민을 뜻함.

281) 식민 지배국 일본인을 일본인(内地人)으로 칭함.

소집한 석상에서 “식민지의 교육 방침을 정함은 지난(至難)하도다. 타국의 예를 보고 최초부터 부동의 방침을 확립함과 같이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변화하였나니 우리나라는 아직 경험도 없는즉 충분한 조사를 경과한 후가 아니면 방침을 세우지 못하겠다. 먼저 국어를 보급케 하는 것만 방침으로 하여 실행코자 하노라” 한 연설에 비추어도 명백하도다. 그런데 데라우치는 조선의 교육 방침을 병합 후에 바로 유고(諭告)와 훈시에 유루(遺漏)가 없이 성명하고 병합 후 1년인 1911(명치 44)년 8월 23일에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상술함과 같이 조선인을 교육하는 대목적을 확정하였으니 이 한 가지 점으로써 보더라도 데라우치의 뜻은 선하다고 말하지 아니치 못하겠도다.

데라우치가 조선인을 교육함에 있어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를 삼은 것과 같이 조선인을 교육하는 방법도 역시 일본인과 아무런 차별이 없도록 하였으면 그 뜻의 선함과 같이 그 정치도 선하였을 것인데 애석하다. 조선인을 교육하는 방법은 일본인과 차별을 두어 공학(共學)을 허용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학제도 일본과 전혀 다르게 하여 양미(良美)한 본의(本義)로 하여금 악렬(惡劣)한 방법에 유린(蹂躪)케 하였으니 조선교육령 제3조에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케 할 것을 기대함이 가(可)함”이라 한 것이 명백히 일본과 차별을 두어 조선 교육의 본의에까지 누가 미치게 한 것이로다. 학제 제정 당시에 학무국장의 임무에 있는 세키야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郎)의 공립보통학교 교감 강습 회에서 이야기한 바를 보더라도 “교육칙어의 취지를 봉체(奉體)하여 충량한 국민을 양성함은 단독으로 일본인 교육의 방침이 될 뿐 아니라 조선인 교육의 방침이 되게 하지 아니함이 불가하도다. 원래 외국에서도 신령지(新領地)의 교육은 가장 곤란하다 하는 바이니 영국은 인도에서 마침내 교육의 결과에 고민하는 중이요, 우리나라의 대만에서도 역시 동도(同島) 통치 아래 고심을 경험하는 바라. 그러나 조선은 인도나 대만과 다르니 유래(由來) 우리나라와 접근하여 피아(彼我)가 서로 교통하며 그 문화의 정도와 민지의 상태가 전자의 분위기와 동일하지 아니하도다. 고로 우리는 결코 인도나 대만 등의 식민지와 동일한 생각으로써 조선에 임할 것이 아니라. 따라서 칙어의 취지는 이를 조선인 교육에 시행하여도 결코 그릇되지 아니하도다. 아니, 도리어 그들을 정말로 구제하는 까닭임을 믿는 바이나 특히 주의를 요할 것은 금일에 일본에서 칙어의 취지가 두려움 없이 복응(服膺)²⁸²⁾되는 것은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일이 아니요, 고금을 통하여 그르치지 아니하고 종외에 시행하여 거스르지 아니할 칙어의 취지는 발표 이전부터 이미 우리 국민의 권권복응(眷眷服膺)²⁸³⁾하던 바라 하노라. 그러한대 역사가 다르고 민정이 같지

282) 교훈(教訓) 같은 것을 늘 마음에 두어 잊지 아니함. 가슴 속에 품어 둠.

283)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않고 간직함.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 바로 이를 강제코자 함과 같은 일이 있으면 이는 필경 사리(事理)를 분별치 못하는 소치이니 교육에 임하는 자는 부지런히 민심의 선도에 노력하고 아동의 뇌리에 점차 이 정신을 주입하는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 하였으니 조선인을 인도인과 또는 대만인과 같이 대우치 아니하고 재래의 일본인 즉 일본인과 동양인인 일본 신민으로 교육하는 것을 조선인 교육의 구극(究極) 이상으로 함은 의심이 없으나 이민족을 동화함은 용이치 아니하니 차차 추종하여 그 효과를 거두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로써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케 할 것을 기대함이 가(可)함”이라는 교육령 제3조를 방패로 하고 교육의 방법과 학제를 일본과 동일케 하지 아니한 것을 가히 추측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에만 한정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반 시설에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 조선인을 식민지 토인(土人)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충량한 제국 신민이 되도록 하게 하고자 하여 동화정책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 병합 후 조선에 재주하는 일본인은 물론이고 일본에 있는 일본인까지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하여 조선인을 경모능멸(輕侮凌蔑)함은 물론이요 조선에 있는 이권은 당연히 일본인이 이를 전부 점유할 것이라 하여 이권획득(利權獲得)의 운동을 개시치 아니한 자가 없었고 관리 중에도 역시 그와 같은 의견을 품은 자가 없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데라우치 총독은 단연히 이를 배제하여 일본인이라고 반드시 이권을 획득케 하지 아니할 방침을 취하였으니 일본인이 데라우치를 공격하는 적이 된 회사령 같은 것도 실은 이 방침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니 데라우치 한 사람의 힘으로 능히 다수 일본인의 운동을 막지 못하여 산림, 광산, 미간지 등 이권을 여러 일본인에게 부여하고 심한 것은 민유의 산림과 토지를 국유로 모인(冒認)²⁸⁴⁾하고 그 대부(貸付)를 받아 금일까지 인민의 원성으로 하여금 하늘에 넘치게 하는 일이 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데라우치의 뜻이 악한 것은 아니나 그 정치를 행하는 수단과 방법이 졸렬하여 피치자의 이병(利病)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또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요의(要義)를 헤아리지 못한 탓이라. 군대에서 장교가 병졸을 지휘, 훈련함에 하나의 명령하에 반드시 복종케 하고 전진의 군령을 한번 내린 후에는 탄환이 비와 같이 날아들고 부월(斧鉞)²⁸⁵⁾이 앞에 닥쳤을지라도 감히 발길을 돌려 돌아서지 못함과 같이, 그 하료(下僚)와 이천만 조선 민중뿐 아니라 재주(在住) 일본인까지도 이를 반드시 하나의 명령하에 복종케 하고 시행케 하고자 하여 유고(諭告)와 훈시(訓示)를 비와 같이 내리고 법령(法令)과 규칙(規則)을 족출(簇出)하게 하여 오직 통치의 공이 급히 성공치 아니함에 홀로 초조하였으니, 이는 일개의 무변(武弁)인 데라우치라 군대식

284) 남의 것을 제 것처럼 꾸며 속임.

285) 작은 도끼와 큰 도끼.

이외에 어느 것도 알지 못하여 그려한 것이라. 그의 우치(愚痴)를 비웃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성의를 살피는 것이 가하겠도다. 그러나 그가 나라를 그르친 죄야 어찌 사함을 얻으리오.

데라우치의 관료주의로 극단의 무단정치하에서 유일의 고굉(股肱)²⁸⁶⁾으로서 경찰기관의 수뇌로 있으면서 탐정정책으로써 경찰만능주의를 발휘한 당시의 경무총장, 현병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의 조결위학(助桀爲虐)한 것은 그 죄가 데라우치보다 가볍지 아니하니 우려컨대 데라우치의 악하지 않은 뜻으로서 무상(無上)의 악정(惡政)을 행한 것은 아카시의 경찰만능주의가 그 원인을 만들지 아니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도다. 병합 전부터 현병경찰제도를 실시하고 군사경찰과 보통경찰의 권한을 한 손에 장악한 아카시는 거미줄 같은 경찰망을 늘리고 반란 예방의 경비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조선의 재래(在來) 풍속, 습관을 도외시하고 민지(民智)와 민도(民度)를 무시한 신법과 쇄규(瑣規)를 경찰의 힘으로 강행하여 조선의 민중으로 하여금 그 번거롭고 까다로움을 능히 견디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무지하여 법을 어긴 인민에게 악형을 가하고 중벌에 처하여 경찰이라 하면 인민을 사지로 빠지게 하는 곳인 줄로 오인케 하고 조선의 민중은 장래에 한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는 전과자가 되지 아니할 자가 없다는 원성을 발생케 하였다. 그 뿐 아니라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 여우와 같이 직권(職權)을 가진 경리(警吏)의 무리는 무고한 인민에게도 능학횡포(凌虐橫暴)를 저질러 경찰관리만 보면 두려워하기를 맹호(猛虎)와 같이 하고 꺼리기를 독사(毒蛇)와 같이 하여 어린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함에도 현병이 온다 순사가 온다 하였다. 이같이 하여 민심으로 하여금 전전긍긍함이 살얼음을 밟게 함과 같으며 깊은 늪에 빠진 것과 같이 하고서야 어찌 능히 동화됨을 바라며 열복(悅服)함을 구하겠는가.

하물며 아카시의 탐정정책은 다만 죄를 범한 자를 정찰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지식계급에 속한 자는 모두 이를 요시찰인이라 하여 경리로 하여금 공연히 감시케 하고 밀정으로 하여금 비밀히 관찰케 하여 일언일동(一言一動)이 혹시 시국에 저촉되거나 정치에 간섭하는 것이면 바로 검거하여 고문을 가하고 죄안을 구성하여 법사(法司)로 이송함을 사상을 단속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하였으니, 피선천사건(彼宣川事件)이라 칭하는 데라우치 총감을 암살코자 하는 음모를 마음 속에 품었다는 혐의로써 윤치호(尹致昊), 양기탁(梁起鐸), 안태국(安泰國) 등 평안남북도에 산재한 배일파를 일망타진으로 1천여 명을 검거하여 고문국신(拷問鞠訊)이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었으나 죄안을 구성하여 법사(法

286) 다리와 팔이라는 뜻으로, 다리와 팔뚝에 비길 만한 신하(臣下), 임금이 가장 신임(信任)하는 중신(重臣), 심복.

司)로 이송한 자는 백여 명에 지나지 못하였고 이송된 백여 명의 피고도 거의 전부가 무죄의 판결을 받아 방면되고 오직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임기정(林基正), 옥관빈(玉觀彬), 이승훈(李昇薰) 6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에서 해당 판결 역시 파기되어 대구복심법원에서 재심한 결과 징역을 면치 못하였도다. 그런데 법정에서 밀정을 석방하여 사실을 허구한 일과 고문을 가하여 자백을 강요한 행적이 탄로나 다만 경찰의 위신을 손상할 뿐 아니라 추태누상(醜態陋狀)을 폭로무여(暴露無餘)하고 일에 외국 선교사까지 관련된 고로 이어서 세계의 이목을 들끓게 하였으니 그가 말하는바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사건’이라는 것이 그 중에 가장 크고 분명한 것이라. 기타 한두 개인을 배제(排擠)²⁸⁷⁾ 구함(構陷)²⁸⁸⁾한 사소한 사건이야 어찌 일일이 열거할 겨를이 있으리오. 이어서 유위(有爲)의 청년으로 하여금 철창하에서 질곡의 고금(苦禁)을 받지 아니하면 해외로 숨어 방랑생활을 영위치 아니치 못할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조선의 청년은 전도의 광명을 잃어버리고 오직 겸구면종(鉗口面從)²⁸⁹⁾하여 구함(構陷)에 면(免)함으로써 수식(修飾)의 도(道)를 세움에 이르렀으니 이사(李斯)가 6국을 겸병한 후 유생(儒生)을 대항하여 입을 다물게 함과 달름이 무엇이 있으리오.

한편으로는 정당을 해산하여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감히 정치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신문, 잡지는 이를 매수치 아니하면 발행금지를 행하여 기관지 이외에는 그 존재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대하여서도 정치에 간섭하는 구어(句語)가 있는 것은 발매를 금지하여 극단으로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고 이에 더하여 탐정정책으로써 구무제함(構謊濟陷)²⁹⁰⁾하고 가법엄령(苛法嚴令)으로써 망라(網羅)하여 구속하였으니 20세기의 현대에 상양(商鞅)²⁹¹⁾과 이사(李斯)의 폭정을 다시 보는 것이야 어찌 세상 사람이 능히 미루어 생각하리오. 구한국 시대의 정치가 문란했음을 사실이지만은 그와 같은 폭정은 행한 일이 없었으니 대원군이 천주교도에 대하여 압박을 가한 것으로 말하더라도 일부 소수 민중에게 행한 것이라. 어찌 조선 민중의 전부에 대하여 행한 것이겠는가. 정신상으로 이와 같이 무단위압 아래 침복(蟄伏)²⁹²⁾한 조선 민중이 물질적으로는 어떠한 신정(新政)의 혜택을 받았는가. “인민의 생활상에 필요한 시책을 도모한다” 함은

287) 밀어내어 물리침.

288) 거짓사실을 꾸며 남을 모함함.

289)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고, 면전에서만 복종하는 체함.

290) 터무니없는 일을 꾸며 모함하거나 남을 함정에 밀어 넣어 해침.

291) 중국 진(秦)나라의 정치가.

292) 자기 처소에 들어박혀 몸을 숨긴다는 뜻.

다만 공문(空文)의 훈시에 지나지 않아 아무런 신 시설을 행한 것이 없고 산업장려의 제1요항인 춘잠(春蠶)의 부흥을 도모함과 같이 일생을 거르는 날이 없는 농민으로 하여금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기르라 하여 해마다 나눠준 기십만의 모묘(矛苗)는 태반이 연료로 변화하고 개량잠종(改良蠶種)의 장려는 민폐가 됨에 불과하였다. 재정독립과 예산팽창의 결과는 인민으로 하여금 무거운 세금의 부담(負擔)을 면치 못하게 하여 농촌의 피폐와 판매가의 쇠조(衰凋)가 구한국시대보다 심한 자가 있으니 만약 외관으로 생활의 향상된 것이 있다면 이는 교통의 편리에 의한 시대의 사물이라 함이 가할 것이오 결코 신정의 혜택이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라 하노라. 하물며 문명적 시설을 행함에 반하여 매년 증가하는 실업자는 모두 생활의 곤란을 호소하여 만주 방면으로 유리(遊離)하는 자가 해를 다투어 익증(益增)할 뿐 아니라 자살로 최후를 마치는 자 역시 적지 아니하니 취업의 도(道)를 주어 생활의 기초를 얻게 하라 한 훈시도 역시 허사에 그칠 뿐이로다.

미개한 지방을 개척하여 사업을 일으키고 산업을 번성시킴에는 자금의 수입이 제일 필요한 것이라. 그런데 병합 후 바로 회사령을 발포하여 일본의 자금이입을 방지하고 중앙정부의 보급금도 해마다 감소되다가 끝내 재정독립의 허명 하에서 한 품의 보급(補給)도 받지 못함에 이르렀으니 이와 같이 조선의 개발을 도모한다 함이 어찌 눈을 가지고 참새를 돋고자 함과 다름이 있으리오. 재정독립의 계획을 수립함은 확고히 무모한 거사임은 물론이거니와 이로써 데라우치의 공(功)을 재촉한 폭거라 칭하는 자가 있으나 우리가 들은 바로써 살피건대 반드시 공을 급히 함도 아니요 부득이한 거사에서 나온 것이니 정당을 질시하는 데라우치가 또한 정당의 증오를 받을 것은 세력이 원래부터 그러한 바이라. 그러므로 조선총독부의 예산을 제국의회에 제출할 때마다 각 정당의 협찬을 얻기 어렵고 특히 보급회(補給會) 문제에 이르러서는 다만 정당의 협찬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하여 꼬리를 흔들고 불쌍함을 구걸할지라도 항상 뜻과 같음을 얻지 못하겠으므로 강퍅한 데라우치(寺内)는 드디어 재정독립의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또는 의회의 철주(掣肘)²⁹³⁾를 받지 아니하고자 함이니 그 계획이 다한 것은 이를 비웃을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데라우치는 남산기슭 왜성대(倭城台)에서 삼각두(三角頭)를 용(聳)하고 뜻으로 말하되 탐관오리의 주구(誅求)에 요생(聊生)치 못하던 조선의 민중은 청렴결백한 선정에 열복하여 구가찬송(謳歌贊頌)치 아니할 자가 없다 하리라 하고, 마음으로 홀로 기뻐하여 하료(下僚)의 영합하는 보고에 유생이 송덕하는 문장을 펴 볼 때마다 희색이 안면에 넘

293) 곁에서 간섭하여 마음대로 못하게 막음.

쳐 “이상적 선정의 효과를 속히 받음은 오직 무단전제의 정치에 있도다. 저 요순(堯舜)이 천하를 다스린들 어찌 능력보다 나으리오” 하여 조선 민중은 모두 함포고복(含餉鼓腹)²⁹⁴⁾하고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는 줄로 확신하였으나 이에 이르러서는 그의 뜻을 악렬(惡劣)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동시에 그의 견해가 유치함을 가엾게 여길 수밖에 없도다. 만약 총일(銃鉄)과 편추(鞭箠)에 함묵(纖默)된 조선 민중의 입은 비록 불평불만을 감히 부르짖지 못하나 그가 무단위압의 반동으로 날로 온양(醞釀)²⁹⁵⁾되는 신정을 반대하는 민심과 세계사조의 격동으로 날로 팽배하는 독립사상이 십 년을 가지 못하여 만세소요를 야기할 줄을 예측하였으면 어찌 그와 같은 우극(愚劇)을 연출하였으리오. 아마도 그는 시정 5년 기념 공진회를 개최하여 병합 후 5년의 단기일에 능히 동화의 실적을 거두고 산업의 발전을 달성한 것을 세계에 과시하고 이 필법으로써 정치를 행하면 어떠한 인민이라도 열복(悅服)지 아니할 자가 없으리라 하여 중앙무대로 진출할 야심이 발발하여 대외(大隈) 내각의 후계후보자로 조선을 떠나 동경으로 갈 때가 득의의 절정에 달한 때라 하겠도다.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조선을 통치함에 독재로써 무단적 고압수단을 취하고 신부(新附) 민중에게 동화를 강요함에 탐정정책으로써 하고, 동화주의가 속히 실현되지 아니함에 훌로 초조하다가 조선인은 양과 같이 모순하다는 세평을 들음에 급하여 혼자 환희하여 조선통치는 이미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위대한 공업을 성공하였으즉 이 이상에는 별로 심력을 허비하고 수완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 그러하니 모름지기 제국재상이 지위를 영득하여 경국의 대업을 달성함이 가하겠다는 의사로써 그 때 총리대신 대외중신(大隈重信)의 초전(招電)에 응하여 동경으로 갔다가 현정회(憲政會)와 제휴한 조건의 과대함에 불비(不備)하여 후계내각 후보의 교섭이 결렬된 후에는 다시 조선으로 귀임치 아니하였다. 하루아침에 수상 후보자로 초전에 응하여 동경에 머물다가 다시 조선에 귀임할 명목이 없다 하여 반 년 동안을 중대한 계기를 기다리며 표면은 유유자적(悠悠自適)한 것으로 보이나 내심으로는 시기가 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대외후(大隈候)가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를 연달감능(練達堪能)의 선비라 하여 수상 후보자로 주천한 후 저관(沮冠)함에 이르자 원로라 칭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등의 추천에 의하여 내각조직의 대명(大命)이 데라우치에게 하달하여 소망을 이루게 된 데라우치는 바로 순관료(純官僚)의 초연(超然)내각을 조직하고 세계대전에 참가한 이유로써 거국일치를 표방

294)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말.

295) 남을 모함하기 위하여 없는 죄를 꾸며 냄, 또는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은근히 품고 있음을 뜻함.

하고 각 정당의 반대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다수를 포함한 헌정회에서는 절대반대의 의사를 표하고 의회가 열리는 벽두에 불신임안을 제출할 기세를 보였다. 이에 부득이하게 제2당인 정우회(政友會)에게 원조를 구걸함에 이르고 국민당(國民黨)의 제창으로 헌정회가 불신임안을 제출하자 마침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행하여 정우회로 하여금 다수당이 되게 하였으니 하라 다카시(原敬)인들 데라우치의 순관료의 초연내각을 어찌 충심으로 환영하였으리오. 헌정회에 정권이 돌아간 후 소수당으로 전락한 정우회의 세력을 만회함에는 다시 헌정회를 소수당으로 전락시키지 아니함이 불가하고 헌정회의 세력을 살해함에는 주의(主義)를 지키고 수단을 택할 틈이 없으므로 데라우치 내각을 원조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한 것이라. 요컨대 하라(原敬)는 데라우치 내각의 정권을 장악한 힘을 이용하여 정우회의 세력을 회복하고자 함이오. 결코 데라우치를 원조하여 관료파의 세력을 증장코자 한 것은 아니라 하겠도다.

관료파로써 초연내각을 조직하고 군국주의의 전제정치를 행하여 안으로는 국력을 충실히 하고 밖으로는 국위를 선양할 이상이 있는 데라우치로써 정우회에 대하여 저두평신(低頭平身)하고 요미걸련(搖尾乞憐)함은 반드시 달갑지 아니할 바나, 조선과 같이 정당을 해산하고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여 능히 반대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할 도리가 없음에 어찌하리오. 고로 정우회로 하여금 의회의 과반수를 점유케 한 이후에는 도로 정우회의 비식(鼻息)²⁹⁶⁾을 우러르지 아니치 못하게 되어 매사에 정우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 것이 없어 내심으로 대의정치에 불만을 말하고 일본 제국을 다스림에 조선 또한 어떻게 하지 못함을 탄식하다가 마침내 쌀소동(米騷動)을 야기하고 정우회의 반격을 만나 초연내각이 와해될 때에 데라우치의 회한이 과연 어떠하였으리오. 그러나 데라우치는 제국 재상의 인수(印綬)를 패용(佩用)하고 조선에 가게 되어 후계자를 물색할 때 무위무능(無爲無能)하고 자가(自家)의 견식(見識)을 갖추지 못한 하세가와 요시미즈(長谷川好道)로써 하여 취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권하여 조선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일령반규(一令半規)를 고치지 못하게 하여 만사를 준수(遵守)하고 답습(踏襲)케 할 뿐 아니라 간섭을 시도하고 감독을 게을리 아니하여 하세가와가 비록 총독의 자리에 있으나 그 실은 시위(尸位)²⁹⁷⁾요 실제는 데라우치가 총독으로 있음과 다름이 없었으니 데라우치가 수상의 인수(印綬)를 푸는 일에 반드시 조선을 회고하면서 “보아라, 조선의 치적을 신부민중(新附民衆)이 구환열복(謳歡悅服)하여 거사대(去思臺)를 세우고 만인산(萬人傘)을 수놓지 아니하였는가” 하고 자위함을 그치지 아니하였을

296) 콧숨을 뜻함.

297) 재능도 인덕도 없으면서 함부로 관위(官位)에 오르는 일을 뜻함.

것이로다. 데라우치가 수상의 지위에 있어 정당의 간섭과 원로의 간섭으로 능히 그 포부한 악정(惡政)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일 년이 지나지 않는 사이에 나라를 그르친 것이 적지 아니하니 침략적 군국주의로써 시베리아(西伯利亞)의 출병을 행하여 다만 노농러시아의 반감을 사서 니코라에프스크 학살사건(尼港虐殺事件)²⁹⁸⁾과 같은 비참사를 야기 할 뿐 아니라 열국의 시기와 의심을 초래하고, 금일까지 대로교섭의 난관이 되어 그 시말을 곤란케 하였다. 대중국 외교는 간섭주의로써 단치루이(段祺瑞)²⁹⁹⁾ 일파의 군벌을 원조하는 정책을 취하여 중국 국민의 악감을 도발하고 열국의 감정을 해하여 배일하는 기풍이 내외에 충만케 할 뿐 아니라, 니시하라차관(西原借款)과 같은 것은 회수의 가망이 없어 막대한 손해가 생기게 하고, 연이어 일중 친선을 원만하게 하기 불가능함은 고사하고 동양평화에까지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게 한 것이 모두 데라우치의 죄라 할 수밖에 없도다.

공을 탐하고 이름을 좋아하는 정치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으니 공을 탐하는 자는 깊은 계략이 없고 이름을 좋아하는 자는 앞일까지 미리 잘 헤아리는 생각이 없어 일시의 공적을 세우는 데 급하고 백년의 대계를 돌아보지 아니하니 자고로 병(兵)을 좋아하고 무(武)를 더럽힌 자가 나라를 부수지 아니하고 몸을 망치지 아니함이 드문 것은 아마도 공을 탐하고 이름을 좋아하여 불세(不世)의 공을 세우고 이름을 죽백(竹帛)에 떨치고자 하는 야심이 혜두(慧竇)³⁰⁰⁾를 지키고 성패를 살피고 이둔(利鈍)³⁰¹⁾을 계획할 현명함을 잃어버리게 함에 있음이라. 가쓰라 타로(桂太郎)가 일영동맹(日英同盟)을 체결하고 일러전쟁을 감행한 것과 일한병합을 단행한 것이 어찌 모두 부득이하게 나온 일이리오. 공전(空前)의 공업을 이뤄 청사(青史)에 방명(芳名)을 흐르게 하고 대훈위(大勳位), 공1급(功一級), 공작(公爵)의 영예를 향유코자 함이 생각건대 최대의 원인이 아닐까 하노라. 데라우치도 마찬가지로 조선을 통치함에 무단주의로써 동화를 강요하되 백성의 입을 방어함으로써 하고 수상의 지위를 의지한 후에는 대중의 간섭으로 양국의 친선을 저해하고 시베리아의 출병으로 대로국교(對露國交)의 회복을 곤란케

298) 러시아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 내 반혁명세력의 원조와 혁명정권 타도를 목표로 16개국이 공동군사 행동을 취했는데, 일본의 이른바 ‘시베리아 출병’도 그 일환이었다. 이때 혁명군에게 1920년 영사 이하 일본 거류민이 몰살당했는데, 이를 ‘니코라에프스크(尼港) 학살사건’이라고 한다.

299)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군벌의 수령이다.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심복이었으며, 1916~26년 몇 차례 중국을 지배한 군벌이다.

300) 슬기가 생겨나는 원천, 구멍을 뜻함.

301) 날카로움과 무덤.

한 것이 어찌 당초부터 모두 실패에 끝날 것을 예기함이리오. 적어도 그 공으로써 후작과 공작을 영득할 줄로 자신하고 그와 같은 무모의 거사를 일으켰으니 그들과 같이 공을 터하고 이름을 좋아하는 자에게 정권을 주고 값비싼 관람료를 지불치 않을 수 없는 국민도 역시 그 책임을 나누지 아니치 못하겠도다.

지위가 인신(人臣)의 최고에 이르고 기운이 일세(一世)를 뒤덮은 가쓰라 타로도 정국 양당의 현정 옹호와 번벌 타파(藩閥打破)의 깃발을 든 것에는 벽역(辟易)³⁰²⁾지 아니치 못하여 제국의회를 두 번이나 정회(停會)하고 사이온지 킨모치(西圓寺公望)에게 정국을 조정하라는 칙유(勅諭)까지 주청하였으나 제3차 내각을 조직한 반재(半載)를 지나지 못하여 도괴(倒壞)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정당을 조직한 것도 역시 뜻과 같지 못하여 실망한 탓에 병마가 내습하게 되어 에사(憲死)로써 마치고 데라우치 또한 정우회의 반격을 받아 수상의 인수를 끈 후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병으로 누웠다가 조선에 독립만세의 소요가 발발한 보도를 접하고 분노괴한(忿怒愧恨)이 일시에 병발하여 마침내 수명을 재촉함에 이르렀도다. 현대의 정치를 해결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로 자부하여 관존 민비의 신조로써 공을 세우고자 한 그들이 국민에게 버림받게 되어 분사(憤死)한 것은 적면(覲面)³⁰³⁾의 보응(報應)이라 다시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리오. 그러나 그들이 능히 수령(首領)을 지키고 자리에 누워 일신을 마치게 된 것은 이 또한 문명한 현대정치가 하사(下賜)한 바라 하겠도다. 그런데 데라우치가 죽기 전에 데라우치를 도와 조선 민중을 억압한 공으로써 대만 총독의 임명에 발탁되었던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가 조선에 독립운동이 일어난 보도를 전한 지 오래되지 않아 일부 인사에게 전도유망하다는 평을 받는 장령(壯齡)으로써 요절한 것은 조선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비보에 심계기세(心悸氣塞)하여 병세가 위독케 된 것 때문이니 사람의 명이 반드시 하늘에 있음이 아니요 자작(自作)의 재앙은 가히 피하지 못함과 같도다.

하세가와(長谷川)가 데라우치를 대신하여 조선총독이 된 후 데라우치의 정책을 준수하여 하나도 변개(變改)함이 없고 최고 정책을 좌우하는 권세는 의연히 군벌의 손에 있어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와 같은 이름은 정무총감이지만 아무런 정무를 총람함이 없고 오직 난(蘭)을 그림으로써 유일한 사무를 삼았으며 내무부장 관우좌미승부(官宇佐美勝夫) 이하의 각 부 장관은 다만 관장하고 있는 사무를 처리함에 몰두할 뿐이오. 통치상 최고문제에 이르러서는 입(喙)을 용납치 못하고 만능의 권세를 독립아문(獨立衙門)인 경무총감부에 일임하여 조선 민중에 대한 생사여탈을 임의로 처단케 하였으니 그

302) 상대의 기세에 압도되어 뒤로 물러섬을 뜻함.

303) 효과나 반응이 즉각 나타남, 즉효를 뜻함.

들인들 어찌 개인의 견식이 없으리오만은 군벌이 권력을 집행하고 무단주의로 고압정책을 행하는 때에는 문관된 자는 오직 직수(職守)를 근심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음에 연유함이로다. 그러나 무단정치의 위압에 습복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조선 민중을 봄에 정말로 신정(新政)에 열복(悅服)함으로써 하고, 말하되 조선인은 유순함이 양과 같다 하고 뜻에 개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즉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소요가 발발하기까지 그 온양(醞釀)³⁰⁴⁾되는 기분과 격동되는 암류를 능히 예감치 못한 까닭이다. 요컨대 조선의 산하를 진동시킬 만세소요의 징후를 능히 살피지 못하고 독립만세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기에 이르러 비로소 경겁(驚懼)하여 조치할 바를 알지 못한 것은 고압위억(高壓威抑)으로써 백성의 입을 막은 위에 탐정정책의 구함(構陷)³⁰⁵⁾을 가하여 스스로 이목을 옹폐(壅閉)하고 천하가 태평하다 하여 요순의 치세를 몽상한 무단정치의 당연한 귀납이라 하겠도다.

만세소요의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이 병합의 대정신을 몰각한 무단정치에 있다는 단안(斷案)을 내림에 주저치 아니하노라. 하라(原敬)가 수상으로 있을 때 중의원에게 질문에 답변하되, “조선의 소요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감염된 것이라” 함과 같이 단순히 소요가 발발한 책임을 세계사조의 격변에 전가코자 함이요, 정곡(正鵠)을 얻은 관찰은 아니라 하노라. ‘윌슨’ 민족자결주의가 만세소요에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나 민족자결주의라는 것은 시기가 도래함을 기다리는 조선 민중에게 깃발을 들게 할 구실을 준 것에 지나지 않고 일체 민족자결주의라는 소리에 경각하여 소요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요컨대 무단정치에 불평불만하여 어느 날이라도 웰기하여 반항치 아니하고는 그만두지 않을 결심이 있는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민족자결주의에 의하여 국권회복의 소리를 부르짖을 절호의 기회를 얻게 함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치 아니하였을지라도 조선 민족은 수십 년과 수백 년을 무단정치하에 굴복하여 정말로 양순함이 양과 같이 골육을 끌라내고 모피를 벗겨 팽포침처(烹炮寢處)함을 그 소위(所爲)에 맡기지 아니하였을지니 무단정치를 반항코자 하여 날로 악화되는 조선인의 사상이 세계사조의 충동에 폭발된 것이라 함이 가하도다.

조선에 재주하는 자나, 해외에 방랑하는 자, 동경에 유학하는 자를 불문하고 이미 지식이 있는 조선인은 구주전란(歐洲戰亂)³⁰⁶⁾이 발발한 후 침략주의의 본존(本尊)인 러시아가 붕괴되고 노농정부가 수립됨에 자극받지 아니한 자가 없고 윌슨의 강화기초조건

304)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은근히 품고 있음.

305)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모략하여 죄에 빠지게 함.

306) 1914년부터 4년간 지속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을 뜻함.

14개조 중에 비병합, 비배상,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함에 이르러서는 좋은 기회를 가히 잃지 못할 것이니 마침내 이 기회를 틈타 독립운동을 계획함이 가하다 하여 각각 비밀리에 각종의 운동을 기도하였다. 1918년 여름 가을 이래로 미국과 하와이(布蛙) 및 상하이(上海) 방면에 산재한 조선인과 또는 남북 만주와 노령 방면에 있는 조선인이 각기 국권 회복의 운동을 개시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 일이고, 동경에 있는 유학생과 조선에 있는 예수교도와 학생 측에도 불온한 공기가 널리 가득하여 밀물(密勿)³⁰⁷⁾한 귓속말은 음모를 양성하고 시호(市虎)³⁰⁸⁾의 유언(流言)은 의혹을 조장하여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동기에 어떻게 돌발할지는 예측하지 못하나 여하간 사단을 야기치 아니하고는 그치지 않을 화기(禍機)가 무르익은 것은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음에 이르렀도다. 그러나 당국자는 전혀 이를 감지치 못하였으니 조선인이 과연 신정에 열복한 줄로 오신(誤信)할 뿐 아니라 항상 밀정배의 구허과장(構虛誇長)한 보고에 그르친 경험을 쌓은 경찰당국자는 간혹 그 낌새를 감지한 밀고를 접할지라도 이에 믿음을 두지 아니하고 설사 어떤 사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온 문서를 산포하는 등의 못된 장난 외에 없으리라 하여 베개(枕)를 높게 하고 텔끝만큼도 경계치 아니한 것이 즉 소요가 일어나는 당시까지 이를 깨닫지 못하게 한 원인이라 하겠도다.

해외에 있는 조선인과 조선 내에 있는 무단정치에 반항코자 하는 자가 나란히 독립운동을 계획한 바는 있었으나 처음에는 피차에 연로(連路)를 갖지 못하고 운동방법도 역시 정한 바가 없다 하였도다. 그러나 모두 파리에서 열리는 강화회의를 기회로 하여 거사하고자 한 것은 모의하지 않고 다 같이 하여 동경에 있는 유학생 측에서는 1919(대정 8)년 1월 하순에 조선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제국의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영문은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광수(李光洙)가 이를 휴대하고 상하이로 잠행하였고 조선문(朝鮮文)은 조선 내에 배포하여 장덕수(張德秀)가 이를 휴대하고 경성에 잠입하여 조선호텔에 머물면서 이를 우편으로 각지에 발송하였으니 이가 즉 독립운동의 소리를 일으킨 효시라. 경성에서는 2월 상순부터 학생 측에서는 중앙기독교청년회 간사 박희도(朴熙道)를 수령으로 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포하여 운동을 개시할 계획을 정하였었는데 이보다 먼저 1월 하순에 선우혁(鮮于赫)이 상하이로부터 오고 이승훈(李昇薰) 및 기타 예수교 유력자들을 두루 방문하고 미국에 있는 조선인은 이승만(李承晚)을, 상하이에 있는 조선인은 김규식(金奎植)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파리로 파견하여 강화회의에 조선독

307) 부지런히 힘씀.

308) 세 사람이 짜면 시내에 호랑이가 나왔다는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에서 나온 말.

립의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즉 조선 내에서도 독립운동을 실행함이 가하다 함에 이승훈은 마침내 평양으로 와서 예수교도 및 학생 층에 대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킬 모의를 하고 경성으로 와서 박희도와 합동하여 운동하기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운동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고심 중이더니 마침 보성고등보통학교장 최린(崔麟)이 본디 신정에 불평을 품고 손병희(孫秉熙)와 친밀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천도교 단체를 이용하여 독립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여 1월 하순부터 손병희 저택에서 몰래 만나 오세창(吳世昌), 권동진(權東鎮) 등과 더불어 밀의를 하고 최남선(崔南善)과 함께 독립운동방법에 관하여 상의한 바가 있었다. 이때 최남선이 이승훈을 최린에게 소개함에 양자 간에 밀약이 성립되어 천도교와 예수교가 합동하여 거사를 일으키기로 하고 운동자금은 전부 천도교에서 지출하였으며 다시 불교단의 한용운(韓龍雲)을 가입케 하여 천도교주 손병희를 필두로 하고 예수교도 및 불교도를 합하여 33인의 이름으로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최남선으로 하여금 이를 기초케 하여 2만여 매를 인쇄하고 조선독립의견서는 임규(林圭)로 하여금 휴대하고 동경에 다다르고 제국 정부와 귀족원·중의원 양원에 제출케 하고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독립청원서 및 미국 대통령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삼국 위원에게 보낼 독립원조청원서는 현순(玄樞)과 김지환(金智煥)으로 하여금 휴대하고 상하이로, 파리로 보내게 하였으니 때는 2월 말이었도다.

이와 같이 대규모이고 조직적이고 철저한 독립운동을 공공연하게 행함과 다름이 없고 조선 귀족과 또 조선인 고관에게까지 서명을 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탐지치 못한 경찰의 무능, 아니, 무신경에 이르러서는 할 말이 없으니 의심컨대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현병경찰의 신경이 과민해져 무고한 인민까지 구함(構陷)할 정도로 마비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태조(李太祖)의 국장 당일인 3월 3일을 기하여 거사하려는 독립운동이 이틀을 앞당겨 3월 1일에 돌발한 것은 발각의 염려가 있다는 밀고가 있었기 때문이요, 밀고한 자는 탐정의 임무를 띤 경리였으니 경찰에서도 전혀 감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 듯하도다.

3월 1일 오후 2시에 수천의 학생이 파고다 공원으로부터 대오를 편성하여 4렬 종대로 써 종로로 향하여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구보로 전진하여 시위운동을 개시함에 이태왕의 국장을 참관하기 위하여 회집한 군중이 이에 뒤따라 무려 수만의 집단이 종로 경찰서 앞으로 통과하니 종로경찰서에서는 주장(周章) 낭패하여 조치할 바를 알지 못하고 경무총감부와 어떻게 처치할까를 문답하는 동안에 학생단은 대한문(大漢門) 앞을 지나 총독부 앞으로 향하고, 경관대(警官隊)는 명월관 지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앉아 결박하고자 하는 손병희(孫秉熙) 이하 선언서에 서명한 자 일부를 검거하고 다수 불

온문서를 압수하였는데 그 중에는 손병희 이하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종로경찰서에 압수된 독립신문도 있었으니 이미 그들은 종로경찰서에 검거될 것을 예기하고 미리 이를 인쇄한 것이나 그들은 종로경찰서에서 검거한 것이 아니오 경무총감부에서 체포하였으니 이는 대활극 중 하나의 삽화라 할만 하겠도다. 그리하여 손병희 이하 주모자를 검거하는 동시에 경찰의 힘으로 학생단의 시위도 해산하고 참가한 학생의 검거를 개시하여 오후 7시경에 소요는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경찰의 경계는 아연엄중(俄然嚴重)을 다하여 경성 시내는 완연히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같았다. 같은 날에 평안남도(平安南道)의 평양(平壤), 진남포(鎮南浦), 안주(安州)와 평안북도의 의천(宜川), 신의주(新義州)와 함경남도(咸鏡南道)의 원산(元山)에도 만세의 소요가 발발하였으니 이는 성기(聲氣)를 상통하여 하루로써 거사할 것을 약속함에서 연유함이라. 이로 인하여 연일 봉기하는 각지의 만세소요는 조선 전도에 만연하여 거의 저지할 바를 알지 못함에 이르렀으니 손병희, 최린, 이승훈인들 어찌 그들의 독립선언에 부응하여 소요와 폭동을 일으키지 않은 지방이 없을 줄을 능히 예견하였으리오. 독립만세의 소리가 한번 일어남에 그 사실의 여하를 고할 겨를도 없이 앞 다투어 창궐한 것을 보더라도 조선 민중이 얼마나 애써 무단정치의 압박에 살고자 하여도 살지 못하고 전념하고자 하여도 하지 못해 쌓인 울분의 기운이 새어 나온 것임을 알아채지 못하겠는가. 병합 후 10년이 지나지 못하여 조선의 산하로 하여금 소요의 거리로 변하게 한 것은 무단정치의 당연한 귀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도다.

〈이상 (7)〉

9. 소요와 무력진압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만세의 소리로써 폭발된 조선 독립소요의 불길은 요원(燎原)한 기세로써 각지를 연소하여 거의 막을 바를 알지 못하였으니 3월 2일에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에서 소요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해서 5월에 이르기까지 거의 휴일이 없이 만세의 소리로써 200여 군(郡)을 훤요(喧擾)³⁰⁹⁾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도다. 그런즉 최린(崔麟), 최남선(崔南善) 등이 기획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를 고창하는 시위운동을 행할 시에 과연 200여 군의 민중이 거의 다 향응(響應)하게 하도록

309) 시끄럽게 떠들.

선동의 연결을 취하였던가. 우리가 본 바로써 도모컨대 최린 등도 결코 소요가 이와 같이 확대될 것은 예측한 것이 아니요 또는 두 세 개의 도회지(都會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결을 취하지 못한 것도 역시 사실이니 선동의 연락도 없고 하등 맥락의 상통한 것이 없이 만세의 소리가 일발(一發)함에 이구동음으로 궁향벽촌에서까지 선두를 다투어 향응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십 년에 가까운 긴 시일을 무단주의 탐정(探偵)정책 하에 있어서 굴신(屈伸)의 자유를 얻지 못한 조선민중의 쌓인 울분의 기가 흘러나오게 함이 급함에 연유함은 물론이거니와 소요로 하여금 이와 같이 자만케 한 것은 그 원인이 관헌의 진압이 철저치 못한 것과 불령배의 선동이 교묘한 것과 조선 민중의 민도가 유치한 점에 있다 하노라.

조선의 민중은 유순함이 양과 같다고 과신하였던 당국의 관헌은 3월 1일에 발발한 일대 시위운동에 주장 낭패하여 조치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한때 이를 방임하는 상태에 두어 경성 전체를 횡행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해산을 명하고 검거를 시작하여 오후 2시에 개시한 시위운동을 오후 7시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유언비어는 민심을 선혹(煽惑)³¹⁰⁾하여 불온한 공기가 상하에 널리 퍼지게 하였으니 관헌의 소요진압이 준엄치 못한 것으로써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 독립을 승인하였다는 선혹한 유언(流言)에 믿음을 불러일으킨 감이 있었도다. 소요가 발발함에 깜짝 놀란 당국에서는 하세가와(長谷川) 총독의 이름으로써 유고(諭告)를 발표하되 고(故) 이태왕(李太王)의 국장(國葬)에 조선 민중은 근신의 뜻을 다함이 바람직하고 소요를 일으킴이 불가함을 유시(諭示)하였으니,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유언에 열광한 민중에게 이태왕의 국장에 근신함이 바람직하다 한들 누가 이에 귀를 기울이리오. 소요가 마침 이태왕 국장의 시기를 기하여 일어난 것은 다중의 세력으로써 시위의 힘을 보태고자 한 음모에 기초한 것이니 말하자면 이태왕의 국장의 시기를 이용한 것이라. 이태왕의 국장을 이용한 자에게 근신하고 소요치 말라 하면 어떤 효력이 있다 하겠는가. 제1회의 유고가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소요는 갈수록 크게 번짐에 다시 제2회의 유고를 발함에 또 다시 이태왕의 국장에 근신을 표하지 아니한 일을 거듭 말하였음은 본말을 전도하였다 함보다도 차라리 몰연식이라 함이 가(可)하니 국가에 대하여 반역적 행동이라고 밀할 조선 독립운동을 행하는 자에게 즉 민주공화의 대한민국을 건설코자 하는 자에게 이태왕의 국장이 무슨 관계가 있다 하리오.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유언에 선혹되어 소요에 가맹(加盟)하는 민중에 대해서는 그들을 사리(事理)로써 깨닫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추상열일(秋霜烈日)³¹¹⁾과

310) 부추겨 혼혹하게 함.

311) 가을에 내리는 찬 서리와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라는 뜻. 형벌이 엄하고 권위가 있음을 비유하

같은 일도양단의 처치를 취하는 것이 옳았으리라 하노니 대세를 해석치 못하고 이해를 살피지 못하는 판단력이 없는 민중에 대해서는 이를 은혜로써 품지 못하면 위협으로써 누르는 것밖에 방책이 없다 하노라.

반란 예방을 유일한 주장으로 삼은 데라우치(寺内)의 조선통치방침을 답습한 하세가와 총독은 한번 소요가 발발함에 이를 벌할 법규가 없으므로 급히 제령(制令)을 발포하여 친히 처벌할 조항을 세우고 국경에 출입함에 경찰관서의 여행증명을 요하는 규칙을 제정하였으나, 반란 예방을 주안으로 하였으나 이를 처벌한 법규가 없다 하였음은 얼마나 데라우치의 조선통치에 소루(疎漏)³¹²⁾가 많은가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도다. 그리하여 소요를 야기한 주모자 등은 삼 년 이하의 가벼운 형에 처하고 부화뇌동한 자는 반대로 삽 년의 중벌에 처해지는 기이한 관경이 벌어지게 된 것은 어찌되었건 법령의 불비 때문이라 할지라도 형벌의 위신을 더럽히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도다. 그리하여 제령 제7호로써 소요법을 엄중히 처벌할 조항을 명백히 함에도 불구하고 소요는 여전히 각지에 만연하여 조선인 된 자는 항상 독립만세를 고창할 의무가 있음과 같이 사료(思料)하고 이것이 범죄인 줄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당국의 진압이 철저치 못함에 연유함이라 할 수밖에 없도다. 무리를 이루고 당을 만들어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소요를 감행하는 군중에게 해산을 명하는 당국 관헌의 언사와 태도는 마땅히 위무적(慰撫的), 미온적(微溫的)으로 나와 군중으로 하여금 조선 독립의 진위를 반신반의케 하고 심한 자는 경찰서장이나 군수가 군중과 함께 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중(市中)을 주행하였으며, 혹은 회집하여 만세를 부를 장소를 지정하여 소란을 야기치 아니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가운데 해산됨을 도모한 자도 있었으니 관헌의 태도가 이와 같음을 보고 조선 독립됨을 믿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으리오.

어제까지 정치만 담론할지라도 가혹한 단속을 가하던 경찰관리가 조선 독립을 축하하는 만세를 동창함을 보는 민중이 어찌 조선의 독립을 믿지 아니하겠는가. 하물며 현병 경찰의 압억(壓抑) 횡포에 분을 쌓고 원망을 축적한 민중이 조선 독립의 말을 듣고 어찌 작약(雀躍)³¹³⁾치 아니하리오. 그러한대 관헌된 자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불문하고 군중이나 개인에게 설유담유(說諭談諭)³¹⁴⁾할 때에 먼저 조선 독립을 희망함은 조선인의 당행(當行)할 일과 같이 말하여 만공(滿空)의 동정을 표하고 그 후에 조선 독립의 불가능

는 말.

312)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꼼꼼하지 않고 거칠을 뜻함.

313) 너무 좋아서 날뛰며 기뻐함.

314) 말로 타일러 주의를 준다는 뜻.

할 것을 말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향배에 미혹케 할 뿐 아니라, 그 사이에 불령배(不逞輩)의 유언비어가 침윤하여 한 달 반 이상에 걸쳐 소요가 각지에 봉기하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민심이 점차 악화하여 경찰서, 현병주재소, 군청, 우편소, 기타 관공서를 습격, 파괴하고 공문서류를 소각하며 현병, 순사를 참살하는 등 폭동을 저지르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아마도 관징(官懲)이 진무(鎮撫)하는 방법이 주도치 못하고 철저치 못함에 연유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도다.

만약 소요가 발발한 당시에 진압과 검거가 준엄하여 소요에 참가한 자를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하고 경찰의 힘으로 해산키 어려운 집단에 대하여는 군대의 힘을 빌려서라도 신속히 진압할 방도를 취하고 바로 각 지방에 엄중히 경계를 가하였다면 혹 소요는 크게 번지지 아니하고 종식되었을지 알지 못하겠으니, 미봉의 책과 고식의 계획에서 나온 당국의 조치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부득이 군대의 증파를 청하고 무력으로 진압을 행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요가 진정되었다. 이것을 보면 소요가 일어나는 당시에 바로 무력으로써 진압하고 각지에 군대를 배치하여 경계를 가하였으면 소요는 열흘 이 지나지 않아서 진정되었을 것을 족히 증명치 아니하겠는가. 생각건대 당시 당국이 취한 진무책은 소요는 두세 개 도회지에 그치리라 하고 각 지방의 향촌에까지 파급될 것은 헤아리지 못하였다가 점차 각지로 만연되고 계속하여 저지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됨에 비로소 낭패하여 무력을 사용함에 이른 것이니 당국자가 용의주도치 못하고 사려가 치밀치 못한 것을 딱하고 가엽게 여길 수밖에 없도다. 이민족(異民族)을 통치하는 자가 그 민중의 정도와 심성을 도외시하고 다만 억측으로써 겨우 편안함을 도모하고 태평을 얻음이 어찌 가능하리오. 생각해 볼지어다. 평소에 맹호와 같이 폭위(暴威)를 다하는 현병경찰이 소요가 일어난 날로부터 돌연히 길든 고양이와 같이 온순하게 나옴을 보고 정도(程度)가 유치한 민중이 어찌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유언을 믿지 아니하겠는가. 강화회의가 무엇인지, 국제신의가 무엇인지, 내정간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유언에 미혹되어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이 조선인의 유일한 의무인 줄로 인식하고 이것이 범죄인 줄을 자각하지 못하는 다수의 민중으로 하여금 소요의 범인이 되게 하고, 나아가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어 양 민족의 동화공존할 대정신에까지 악영향을 주게 한 것은 당국자가 소요진압을 잘못한 죄를 능히 피하지 못할 것이라 하겠도다.

소요가 일어나기까지는 음모의 계통이 있어서 연락을 취한 일이 있었으나 소요가 일어난 후 주모자 등이 검거된 이래로는 아무런 계통과 연락은 없으나 유언비어는 시호(市虎)를 삼전(三傳)³¹⁵⁾하여 인심이 흉흉한 사이에 불량의 도는 각자의 의사로 불온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배포하고 협박선동이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어 크게 소요를 증장하였

다. 불온문서와 유언비어는 나란히 황당무계하여 상식으로써 판단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 많으나 민도가 낮은 조선인의 민심을 혼란함에는 위대한 효력이 있었으니 이태왕의 흥거(薨去)³¹⁶⁾는 독살에 의한 것이라는 불경한 설(設)을 전함과, 파리강화회의에서 열국이 이미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였는데 오직 일본이 홀로 승인하지 않으니 이때에 조선인이 일제히 독립운동을 일으키면 일본도 승인치 않을 수 없으리라는 무계한 말을 유포함과, 각지의 소요를 침소봉대로 전함과, 손병희(孫秉熙)를 대통령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조직한 것과, 조선인의 관리, 부호, 상인에게 협박하는 수많은 불온문서의 인쇄물을 배포하는 동시에 시장을 철폐하도록 하는 등의 폭거가 있었다. 민심의 양탈(昂奪)은 극도에 달하고 소요의 확대는 날로 심해지는 즈음에 이승만(李承晚)을 대통령으로 받드는 상하이 가정부(假政府)가 성립되고 소위 대한민국 임시현장이라는 것이 선포되어, 지상의 공문(空文)에 지나지 않지만은, 가정부 각 기관의 형식을 갖춘 보도가 전해지자 무직계급의 민중은 더욱이 조선이 과연 독립된 것같이 믿어 일본인에게 그 귀환할 때를 묻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일본인 관리가 돌아가면 다시 고관대작을 얻겠다 하여 마음으로 홀로 기뻐한 자도 있었다. 이와 같이 민심을 선동하여 소요를 확대시킨 것은 실로 상식에서 벗어난 불온무계의 선전의 효과가 컸던 것이 그 원인이나 불량한 무리의 허망한 선전으로써 교묘히 몽매한 민중을 기만, 선혹함이 완만(緩慢)한 당국의 취체(取締)보다 얼마나 더 힘이 큰가를 살피고도 남음이 있다.

하물며 무력으로 진압하여 소요가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전은 점점 더 크게 발호하였다. 그들은 틈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하여 처음에는 조선이 독립된 줄로 오신하고 단지 부화뇌동하여 만세를 부른 민중도 점차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민심이 점차 악화함을 쫓아 군자금 모집에 이름 난 강도가 성촌(城村)에 횡행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관공서를 폭파하고자 하는 음모와 무력으로 조선내 침입을 도모하는 계획이 잇따라 일어나 조선 내의 치안은 거의 편안한 날이 없었다. 파리강화회의가 종료되어 열국이 조선 독립을 승인하였다는 설의 혀보(虛報)가 진적(眞的)³¹⁷⁾케 된 후에는 국제연맹에 소청하여 조선을 국제 관리하에서 미국에 위임, 통치케 한다는 설을 유포하고, 동양을 시찰하기 위하여 도래한 미국의원단이 조선 내를 통과케 됨에 의원단

315) 시호(市虎)는 세 사람이 짜면 시내에 호랑이가 나왔다는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에서 나온 말. 근거 없는 말이 세 번 전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의미.

316) 흥서(薨逝). 왕이나 왕족, 귀족 등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

317) 참되고 틀림없다는 뜻.

이 조선에 오는 것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시찰하고자 함이라 하여 민심을 선호한 것은 불량한 무리가 매우 기만적인 방법으로써 교묘히 유언을 주출(做出)한 일례를 증명해 보임에 충분하다.

그러나 불량한 무리의 선전이 아무리 교묘하다 할지라도 조선 민중이 정도가 유치하지 않아 능히 이해를 판단하고 시비를 가릴 지식이 있었으면 어찌 골계(滑稽)³¹⁸⁾에 가깝다 할 허망무실한 유언비어에 혹하여 만세소요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경거망동을 감행하였으리오. 만세소요의 자만(滋蔓)이 식자의 의표(意表)에 나온 것은 그 원인이 조선인의 정도가 유치함에 있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겠도다. 최린(崔麟), 최남선(崔南善) 등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은 그 진의가 조선의 독립을 요구함에 있었다 함보다도 차라리 조선인은 정말로 양과 같이 유순한 민족이 아니요 반 만 년의 역사를 가져 정치의 욕망도 다른 인류와 같고 자유를 요구함도 다른 민족과 다름이 없어 비록 실력은 미치지 못할지라도 영구히 이민족의 무단정치하에서 압박과 굴욕을 받고 개, 돼지와 같이 비강(糓糠)³¹⁹⁾의 사육에 만족할 리가 없다는 의미로써 무단정치에 대한 조선인의 불편을 새어 나오게 하여 통치방침의 변혁을 열망함에 있었다 함이 정곡이 아닐까 하노라. 33인 중에 한 사람인 길선주(吉善宙)는 재판소 심문에서 “독립선언이라 함은 내심에 감춘 사상을 밖으로 표현한 것에 그치니 다소 정부의 기탄(忌憚)에 저촉될지라도 각별히 법률상의 죄인이 됨과 같은 대사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고 일체 서류에 연명함을 승낙한 바이오. 일한병합은 물론 조선 민족의 일분자(一分子)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 바인데 대세를 이를 쫓으라는 성경의 교리를 지켜 종래에 별로 불평은 없었으나 그 후 총독의 시정을 본즉 다만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여 극단의 전제정치를 일삼았으니 이러한 정치하에 매우 애석하고 즐겁지 아니하여 어떤 개혁을 열망하였노라”고 답변하였고 결국 무죄의 판결을 받았으니 생각건대 그의 진정하고 솔직한 진술이 그들의 독립운동의 진상을 말함과 같다.

독립선언의 수괴인 손병희가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는 민족자결주의로 강화의 기초 조건을 삼은 파리강화회의에 일본이 참가하여 이미 민족자결주의를 시인한 이상에는 조선 민족의 독립을 자결함도 승인할 줄로 알았다는 의미였으니 이 진술이 진정한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의 무지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도다. 월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라는 것은 전패국(戰敗國)의 영토를 병합치 아니하는 주의로써 종속할 국가를 정하지 못한 토지를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의 표결에 의하여 정한다 함이니, 즉 러

318) 익살스러운 일을 뜻함.

319) 쭉정이와 겨, 변변치 못한 음식(飲食)을 형용(形容)한 말.

시아와 폴란드 사이에 있는 빌나³²⁰⁾ 또는 폴란드와 프로이센(普魯西) 사이에 있는 시레시아를 인민의 투표에 의하여 귀속을 정한 것이 그 일례라. 파리강화회의는 전승국과 전패국 간에 평화를 극복할 조건을 의정(議政)하고자 함이니 전승국의 일원인 일본이 강화회담에서 전리품의 이익분배를 받거나 배상금의 균점을 얻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어찌 자국의 영토를 나눌 일이 있으리오. 조선은 일한병합에 의하여 일본의 영토가 되었으므로 조선 문제는 즉 일본의 내정에 속한 것이니 열국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할 이유가 어찌 있겠는가. 하물며 같이 전쟁에 참가하여 존망을 함께한 연합국에서 간섭하리오. 그러한대 천도교도에게는 성인이라고 승양을 받는 손명희로서 이를 이해치 못하여 조선이 민족자결주의에 의하여 독립될 줄로 믿었다 하면 너무 기지(基智)가 얕음에 놀랄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아니하여 손(孫)의 진의도 길선주와 달름이 없었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니 종교단체의 교주로써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함이야 누가 다시 이를 믿는다 하겠는가.

소위 독립선언서를 보더라도 내용은 조선인의 독립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독립운동을 행함을 선동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자가 법정에서 한 답변을 듣더라도 역시 총독정치에 대한 불평으로 독립을 요구함에 그쳤음이 명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를 배부받고 소요를 일으킨 천도교 무리가 현병 분대에게 사무인계를 강청(強請)하는 등의 폭행을 합과 또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피고 등이 법정에서 한 답변을 이를 게재한 신문지를 열독하였을 터인데,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유언을 믿고 만세를 고창할 뿐 아니라 경찰관서를 향하여 만세의 고창을 허락함을 청원한 민중도 있었으니 이는 유언비어의 선전이 선동력을 가졌다 함보다 차라리 조선 민중 자체가 지식이 유치하고 판단력이 멀여(蔑如)³²¹⁾하여 만세소요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 줄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풍성학려(風聲鶴唳)³²²⁾로 소요를 확대케 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도다. 이는 소요에 부화뇌동한 민중의 수가 수십만을 넘어도 구속치 아니하고 법의 제재를 받은 자는 수백이 되지 않아 대다수는 겁거에도 누락되고 소수가 태형의 즉결을 받은 것에 그친 것을 보더라도,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 얼마나 작량(酌量)³²³⁾할 점이 많은가를 가히 추측할 수 있지 아니하겠는가.

320)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의 옛 이름.

321)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

322) 겁을 먹은 사람이 하찮은 일에도 놀람을 이르는 말. 중국 전진 때 진왕 부견(堅)이 비수(淝水)에서 크게 패하고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적군이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놀랐다는 데서 유래함.

323) 짐작하여 헤아림.